

| SRI-기본-2019-17 |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심의선정과정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Local Grant Deliberative System in Suwon City

황소하

연구진

연구책임자 황소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강혜연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이현경 (수원시정연구원 위촉연구원)

© 2019 수원시정연구원

발행인 최병대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우편번호) 16429
전화 031-220-8001 팩스 031-220-8000
<http://www.suwon.re.kr>
인쇄 2019년 10월 31일
발행 2019년 10월 31일
ISBN 979-11-90343-26-8 (9335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황소하. 2019.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심의·선정과정 개선방안」. 수원시정연구원.

비매품

국문요약

지방보조금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혹은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이다. 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을 통해 민간부문과의 자율적 협력과 연계를 구축하여 지역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은 자의적인 예산편성과 선심성 보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보조금 규모는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보조사업으로 대부분 구성된 지방보조금의 규모 또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고보조사업의 대폭 이양방안 또한 논의되고 있어 향후 지방보조금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지방보조금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지방보조금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 마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지방보조금이 체계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인 2015년으로 논의의 시기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전까지는 민간이전경비, 사회복지보조금 등 일부 보조금에 대해 제한적으로 논의되어왔으며,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지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은 비효율적인 사업과 부적절한 사업자를 제외하여 자치단체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중요한 시작점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 검토나 집행 및 성과평가 체계구축과 비교하여 소홀히 다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원시를 중심으로 지방보조금의 관리제도 및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안과 쟁점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의 제도적 흐름을 파악하고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방보조금 특징 및 현황을 검토하였다. 또한 심의선정과 관련하여 수원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및 쟁점, 개선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를 민간 등의 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자원 중에 하나로 인식된다. 지방보조금은 정부활동의 비효율성을 보완하고 민간부문의 독창성을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무엇보다 지방분권적 성격이 높은

재원으로 지역 환경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내 상호협력과 거버넌스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때 선정된 개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반대급부 없이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수혜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보조금을 받고 이를 지속하려는 경직성을 보인다. 또한 지역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역 내 특정집단에게 한정적으로 지급되어 사회적 편익이 제한되고 서비스공급에 대한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운영과 밀접한 정책적 재원이 되므로 정치적 결정에 의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선정될 수 있어 선심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의 지방보조금 체계를 갖추기까지 정부는 지방보조금 지출통제와 세출관리를 강화해 왔다. 현재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의해 이해관계가 없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임의의 사업추진으로 인해 보조금이 특정 이익집단에 지급되지 않도록 하고, 공평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보조사업 집행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지향한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은 여전히 지방재정의 대표적인 낭비요인으로 인식되며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에 놓여있다. 지방보조금은 규모와 비중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검토와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며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내에서도 그 편차가 심하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 편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내 지방보조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중 수원시의 지방보조금 규모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게 나타나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에서는 보조금 배분의 역선택을 최소화하고 선심성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을 위한 환경 조성, 구체적인 선정기준 마련, 체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통한 성과정보 구축을 통해 적격한 보조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한다.

한편, 실무자 입장에서는 실제 지원대상 선정 시 객관적인 기준이 미비하고, 많은 사업수와 복잡한 정산과정에 비해 관리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능률적인 심의운영체계를 갖추는 것이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하였다. 지방보조금 담당자는 주로 인력의 부족, 소액의 수많은 사업, 다양한 사업성격으로 인해 실질적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수익 사업이 별로 없는 단체가 많아 보조사업자의 사업역량에 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기 어렵고, 삭감이나 일몰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환경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법적으로 심의 위원수가 정해져있을 뿐만 아니라 심의안건과 시기가 촉박하여 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였다.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는 정산과정이 복잡하고 증빙자료가 과다하여

정산과 집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제도의 간소화와 충실한 사전 교육, 보조금 매뉴얼과 관리지침 구체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예산편성 기준이 미비하여 유사사업 간에도 사업비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존재하였다. 특히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보조사업이 일부 존재하고 있어 정치적이고 관행적인 분배가 되지 않도록 지방보조금 취지를 명확히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연구와 실무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할 때 지방보조금의 심의선정과정에 관한 주요논의들은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업의지와 역량을 갖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심의선정 체계를 효율화하고 능률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심의선정과정 현황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크게 지방보조사업자의 적격성, 지방보조사업의 적정성, 심의선정과정의 효율성 관점에서 쟁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우선 수원시는 지방보조금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 사업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작은 규모의 사업이 많아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자체재원 사업 비율이 낮게 나타나 국도비 보조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신규사업의 비율이 낮아 기존 보조사업에 관행적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심의선정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조사업자의 적격성 측면에서 모집규모에 비해 신청사업자가 많지 않아 경쟁률이 낮고, 신청사업자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자로 결정되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사업규모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자부담비율이 낮은 특성이 있고, 자부담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한계를 보였다. 지방보조사업의 적정성 측면에서는 대부분 조례보다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독창성이 반영된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는 사업이 많아 사업 평가의 결과가 적절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심의선정과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심의안건수가 많고 시간이 촉박하여 보조사업자의 역량이나 평가결과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심의선정 평가항목이 정성적 기준에 치중되어 있어 사업자 선정기준이 모호하여 많은 안전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기도 내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교부비율을 분석한 결과 수원시는 지방보조금 규모와 비중 측면에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수원시보다 낮은 지방보조금 비중을 보이고 있고, 고양시는 수원시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거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용인시의 지방보조금 비중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의 감소에 따라 2018년 전년 대비 큰 감소폭을 보이며 타 자치단체와 유사한 수준의 지방보조금 비중을 보였다. 자부담

비율 측면에서는 용인시의 평균 자부담비율이 16.6%로 수원시(14.9%)보다 높았으며, 화성시가 14.0%로 수원시보다 낮지만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수원시보다 낮은 평균 자부담비율을 보였으며 지방보조금 자부담비율 강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심의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보조사업자 적격성 확보를 위하여 자부담비율을 강화하고 보조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및 전라북도와 같은 광역단체 뿐만 아니라 안동시, 청주시, 원주시 등 기초단체에서도 자부담비율을 10%~20%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업에 따라서는 50%의 자부담을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또한 용인시, 창원시, 울산광역시에서는 자부담비율을 의무화하지는 않더라도 10%로 각 부서에 권고하여 부서-단체 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자부담비율은 신규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자체지침에 예산편성원칙으로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나 성남시와 같이 체납여부 등 구체적인 부적격 보조사업자에 대해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사례가 존재하였으며, 화성시에서는 예산편성 및 사업자선정 심의 시 심사조서에 구체적인 의견을 적시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로 적절한 보조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 시 활용될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해당 결과가 환류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근거를 구체화하고 있다. 용인시는 평가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분류하여 평가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성남시는 외부전문가의 사전 성과평가를 고려하고 있다. 부천시는 성과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정량화된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성과평가 환류와 관련하여 안동시와 부산광역시는 '미흡' 이하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하위사업에 대한 삭감 및 지원중단에 대한 원칙을 강화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미흡'사업의 비중을 확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과평가시기를 기존보다 앞당겨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보조사업들의 법령근거를 재검토하고 법령근거가 없는 경우 예산을 삭감하거나 근거규정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세 번째로 심의위원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확대하고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집중심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일정이나 심의준비에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는 분과위원회 규모 확대와 동시에 외부 전문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심의위원회가 주요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는 사전심사를 위한 수당지급기준을 개선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면심의대상을 확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평가체계를 2회로 나누어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2차 평가 시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울산광역시는 예산안 결재일을 앞두고 심의위원회가 촉박하게 개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횟수를 실국별로 나누어 2회로 확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심의일정을 사전예고하고 공개하여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심의건수와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과 관련된 주요 개선방안을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지방보조사업자의 적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①구체적인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②사업역량을 갖춘 보조사업자를 확보하기 위한 적정 자부담비율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③보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자치단체의 정책목표에 맞는 적절한 지방보조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①사업 지속성에 대한 재검토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미흡'이하 등급의 사업에 대해 세분화하여 하위 사업에 대한 삭감 및 지원중단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하위사업 기준을 확대하거나 주기적으로 특정분야의 사업을 집중 검토함으로써 검토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②성과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기준의 정량화·구체화, 성과평가완료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며, ③지방보조사업의 사업근거를 재검토하고 근거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 심의환경을 합리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먼저 ①집중심사를 위한 심의대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전심의와 서면심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②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성과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외부 전문위원의 확보와 운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분과위원회의 경우 분야 및 위원 수와 개최횟수 등을 검토하고 성과평가나 사전심사 등에도 분과위원회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③합리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종예산안 확정시기 혹은 사업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촉박한 심의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자료의 조기 배포와 심의일정의 사전 공개 등 지원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6
 제2장. 지방보조금에 관한 논의	 7
제1절 지방보조금의 의의 및 특성	9
1. 지방보조금의 개요	9
2. 지방보조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	13
제2절 지방보조금 제도의 개요	19
1.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19
2.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21
제3절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에 대한 쟁점과 논의	25
1.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의 특성과 쟁점	25
2.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에 관한 주요논의	27
 제3장. 수원시 지방보조금 현황 분석	 31
제1절 지방보조금 일반 현황	33
1. 전국 지방보조금 현황	33
2. 시도별 지방보조금 현황	35
3. 경기도 지방보조금 현황	40
제2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현황	45
1. 수원시 지방보조금 일반 현황	45
2.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의 집행현황	59
3.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60
4. 유사자치단체와의 비교	62
제3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70
1. 지방보조사업자의 심의선정	70

2.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	75
3.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76
제4장.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 현황	79
제1절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자 현황	81
1.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자 지원 현황	81
2. 수원시 지방보조금 자부담 현황	82
제2절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현황	93
1. 수원시 지방보조금 사업근거	93
2. 수원시 지방보조금 계속사업 등에 관한 평가 현황	95
제3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체계 현황	100
1.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100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건 및 내용	101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일정 및 시기	102
제4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 과정의 쟁점	104
1. 수원시 지방보조금 현황과 심의선정과정의 쟁점	104
2.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상 쟁점	106
제5장. 타 자치단체 사례분석	109
제1절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111
1. 용인시 지방보조금 현황	113
2. 성남시 지방보조금 현황	116
3. 부천시 지방보조금 현황	119
4. 화성시 지방보조금 현황	122
제2절 타 자치단체 심의선정과정 개선사례	126
1. 지방보조사업자 사업수행역량 확보	126
2. 지방보조사업 적정성 검토 및 관리체계 강화	132
3. 지방보조금 심의체계 효율성 강화	137
제3절 타 자치단체 사례 쟁점분석	141
1.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현황 및 쟁점	141
2. 타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쟁점과 개선방향	142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47
제1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의 쟁점과 한계	149
1. 지방보조사업자 적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제도 미흡	149
2. 지방보조사업 적정성 검토의 실효성 부족	150
3. 심의선정과정의 합리적 운영체계 및 지원환경 미비	151
제2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 개선방안	152
1. 지방보조사업자 적격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152
2. 지방보조사업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57
3.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심의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160
참고문헌	164
Abstract	168

표 차 례

〈표 2-1〉 지방보조금 분류	10
〈표 2-2〉 지방보조금 유형별 정의	11
〈표 2-3〉 지방보조사업 평가기준	24
〈표 3-1〉 지방보조금 예산규모 (2015-2019)	33
〈표 3-2〉 지방보조금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2015-2019)	34
〈표 3-3〉 2019년 지방보조금 단채유형별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34
〈표 3-4〉 2019년 지방보조금 시도별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36
〈표 3-5〉 2019년 지방보조금 상위 10개 시 지역 예산규모	37
〈표 3-6〉 2019년 세출예산 대비 지방보조금 상위 10개 시 지역 예산규모	38
〈표 3-7〉 2019년 세출예산 상위 10개 시 지역 지방보조금 예산규모	38
〈표 3-8〉 2019년 세출예산 상위 10개 시 지역 예산과목별 지방보조금 예산규모	39
〈표 3-9〉 경기도 예산과목별 지방보조금 예산규모 (2015-2019)	40
〈표 3-10〉 2019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군별 예산규모	41
〈표 3-11〉 2019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군별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42
〈표 3-12〉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총 사업수 및 예산규모 (2015-2019)	45
〈표 3-13〉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예산과목별 사업수 및 예산규모 (2015-2019)	45
〈표 3-14〉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재원별 예산규모 (2015-2019)	46
〈표 3-15〉 2018년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재원별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47
〈표 3-16〉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분야별 사업수 및 예산규모 (2015-2019)	48
〈표 3-17〉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재원별 사업수 및 예산규모 (2015-2019)	49
〈표 3-18〉 외부보조금비율에 따른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사업수 및 예산규모 (2015-2019)	51
〈표 3-19〉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전체사업) 예산규모별 사업수 및 사업비율 (2015-2019)	51
〈표 3-20〉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자체사업) 예산규모별 사업수 및 사업비율 (2015-2019)	52
〈표 3-21〉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예산과목별 편성액 규모별 사업수 현황 (2016-2018)	52
〈표 3-22〉 2018년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부서별 사업수 및 예산규모	54
〈표 3-23〉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신규·계속사업 현황 (2015-2019)	56
〈표 3-24〉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예산과목별 신규·계속사업 현황 (2015-2019)	56
〈표 3-25〉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분야별 신규·계속사업 현황 (2015-2019)	58

〈표 3-26〉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 현황 (2016-2018)	60
〈표 3-27〉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 (2016-2018)	60
〈표 3-28〉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연도별 예산과목별 성과평가 결과 (2016-2018)	61
〈표 3-29〉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예산규모 (2015-2019)	62
〈표 3-30〉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2015-2019)	64
〈표 3-31〉 2019년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회계구분별 예산규모	68
〈표 3-32〉 2019년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회계구분별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69
〈표 3-33〉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절차	71
〈표 3-34〉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공모사업 기본 심사항목 (2019년 기준)	72
〈표 3-35〉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공모사업 사업 심사항목 (2019년 기준)	73
〈표 3-36〉 수원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근절 활동 (2019년 기준)	75
〈표 3-37〉 수원시 지방보조금 평가기준 및 항목 (2019년 기준)	76
〈표 3-38〉 수원시 지방보조금 평가결과 반영계획 (2019년 기준)	78
〈표 3-39〉 수원시 지방보조금 일몰제 적용 검토기준 (2019년 기준)	78
〈표 4-1〉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단체결정 현황(모집제한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2017-2019) ..	81
〈표 4-2〉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단체결정 현황(모집제한이 없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2017-2019) ..	81
〈표 4-3〉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경쟁률 현황 (신청단체 : 결정단체) (2017-2019)	82
〈표 4-4〉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자부담 현황 (2016-2018)	82
〈표 4-5〉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예산과목별 사업수 및 평균 자부담비율 현황 (2016-2018)	83
〈표 4-6〉 전체사업 및 예산과목별 편성액 및 자부담액 현황 (2016-2018)	83
〈표 4-7〉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연도별 평균 자부담비율 (2016-2018)	84
〈표 4-8〉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자부담비율 구간별 사업수 현황 (2016-2018)	84
〈표 4-9〉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예산과목별 평균 자부담비율 (2016-2018)	85
〈표 4-10〉 2018년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자부담비율 구간별 예산과목별 사업수 현황	86
〈표 4-11〉 수원시 '우수' 등급이상 지방보조사업 예산과목별 평균 자부담비율 (2016-2018)	87
〈표 4-12〉 2018년 수원시 '우수' 등급이상 지방보조사업 자부담비율 구간별 예산과목별 사업수 현황 ..	88
〈표 4-13〉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편성액 규모별 사업수 및 자부담비율 현황 (2016-2018)	89
〈표 4-14〉 2018년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편성액 규모별 평균 자부담비율 구간별 사업수 현황	90
〈표 4-15〉 2018년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예산과목별 편성액 규모별 사업수 및 평균 자부담비율	91
〈표 4-16〉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지원근거현황 (2016-2018)	93

〈표 4-17〉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연도별 예산과목별 지원근거현황 (2016-2018)	94
〈표 4-18〉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일몰제 적용 현황 (2017-2018)	95
〈표 4-19〉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별 일몰제 적용 현황 (2017-2018)	96
〈표 4-20〉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별 예산과목별 일몰제 적용 현황 (2017-2018)	96
〈표 4-21〉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별 일몰제 적용 유무 현황 (2017-2018)	97
〈표 4-22〉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별 일몰제 적용 사업 목록 (2017-2018)	98
〈표 4-23〉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차년도 예산 현황 (2017-2018)	99
〈표 4-24〉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2018년 기준)	100
〈표 4-25〉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안건 현황 (2017-2019)	101
〈표 4-26〉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내용별 안건수 현황 (2017-2019)	101
〈표 4-27〉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사업 심의 검토시기 (2017-2019)	102
〈표 5-1〉 2018년 유사자차단체 지방보조금 교부금액 및 세출대비교부비율	111
〈표 5-2〉 2018년 유사자차단체 지방보조금 예산과목별 교부금액 및 세출대비교부비율	111
〈표 5-3〉 용인시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2014-2018)	113
〈표 5-4〉 2018년 용인시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114
〈표 5-5〉 2018년 용인시 지방보조금(순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	114
〈표 5-6〉 2018년 용인시 지방보조금(순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자부담 유/무)	115
〈표 5-7〉 2018년 용인시 지방보조금(순시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	115
〈표 5-8〉 2018년 용인시 지방보조금(순시비) 성과평가 및 자부담유무에 따른 보조금 및 사업수 현황	116
〈표 5-9〉 성남시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2014-2018)	116
〈표 5-10〉 2018년 성남시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117
〈표 5-11〉 2018년 성남시 지방보조금(순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	117
〈표 5-12〉 2018년 성남시 지방보조금(순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자부담 유/무)	118
〈표 5-13〉 2018년 성남시 지방보조금(순시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	118
〈표 5-14〉 2018년 성남시 지방보조금(순시비) 성과평가 및 자부담유무에 따른 보조금 및 사업수 현황	119
〈표 5-15〉 부천시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2014-2018)	119
〈표 5-16〉 2018년 부천시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120
〈표 5-17〉 2018년 부천시 지방보조금(순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	120
〈표 5-18〉 2018년 부천시 지방보조금(순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자부담 유/무)	121
〈표 5-19〉 2018년 부천시 지방보조금(순시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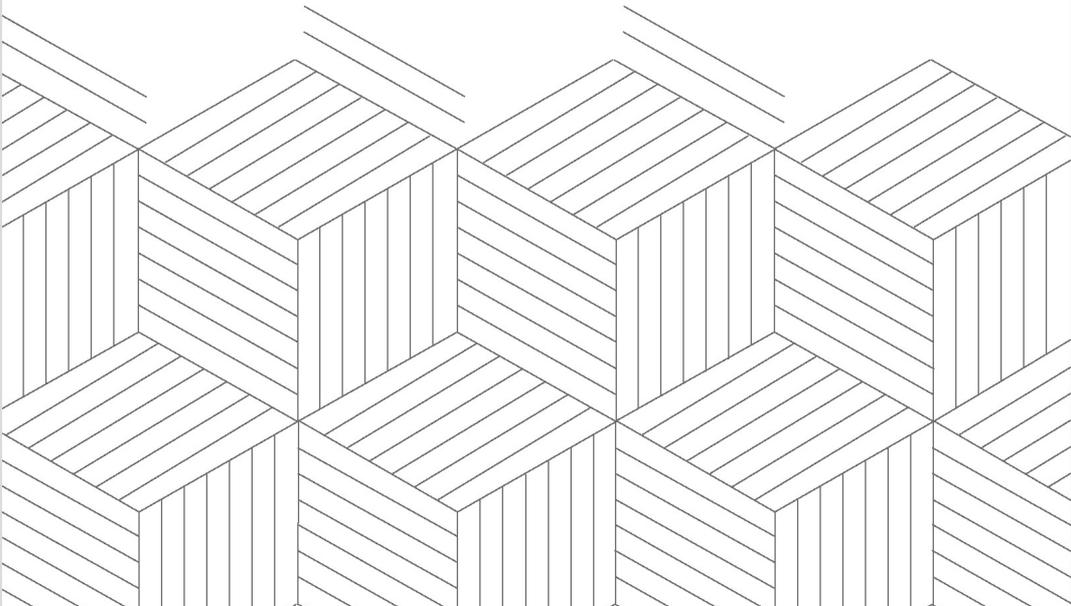
〈표 5-20〉 2018년 부천시 지방보조금(순시비) 성과평가 및 자부담유무에 따른 보조금 및 사업수 현황	122
〈표 5-21〉 화성시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2014-2018)	122
〈표 5-22〉 2018년 화성시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123
〈표 5-23〉 2018년 화성시 지방보조금(순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	123
〈표 5-24〉 2018년 화성시 지방보조금(순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자부담 유/무)	124
〈표 5-25〉 2018년 화성시 지방보조금(순시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	124
〈표 5-26〉 2018년 화성시 지방보조금(순시비) 성과평가 및 자부담유무에 따른 보조금 및 사업수 현황	125
〈표 5-27〉 용인시 지방보조금 사업비 편성 기본원칙 (2020년 기준)	128
〈표 5-28〉 화성시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심사항목 및 검토결과 (2018년 기준)	130
〈표 5-29〉 화성시 보조금 교부 검토의견서 작성요령 (2018년 기준)	131
〈표 5-30〉 성남시 외부전문가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2019년 기준)	134
〈표 5-31〉 부천시 성과평가 지표 (2019년 기준)	134
〈표 5-32〉 안동시 지방보조금 평가결과 반영계획 (2018년 기준)	136
〈표 5-33〉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등급 및 비율 (2018년 기준)	136
〈표 5-34〉 부산광역시 심의안건 수당지급기준 (2018년 기준)	138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6
〈그림 2-1〉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과정	23
〈그림 2-2〉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 쟁점에 따른 연구분석방향	30
〈그림 3-1〉 2019년 지방보조금 시도별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비교	37
〈그림 3-2〉 2019년 경기도 유사자차단체 지방보조금 예산규모 추이 (2015-2019)	62
〈그림 3-3〉 2019년 경기도 유사자차단체 세출예산 대비 지방보조금비율 추이 (2015-2019)	63
〈그림 3-4〉 경기도 유사자차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규모 추이 (2015-2019)	65
〈그림 3-5〉 경기도 유사자차단체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규모 추이 (2015-2019)	66
〈그림 3-6〉 경기도 유사자차단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예산규모 추이 (2015-2019)	66
〈그림 3-7〉 경기도 유사자차단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예산규모 추이 (2015-2019)	67
〈그림 3-8〉 경기도 유사자차단체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규모 추이 (2015-2019)	67
〈그림 3-9〉 경기도 유사자차단체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규모 추이 (2015-2019)	68
〈그림 3-10〉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선정 및 집행 (2019년 기준)	72
〈그림 3-11〉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공모사업 심사총괄표 (예시) (2019년 기준)	73
〈그림 3-12〉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심사조서 (2019년 기준)	74
〈그림 3-13〉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체크리스트	77
〈그림 5-1〉 유사자차단체 세출대비 지방보조금 교부비율(결산기준) (2014-2018)	112
〈그림 5-2〉 화성시 지방보조사업 교부 검토결과서 (2018년 기준)	131
〈그림 5-3〉 용인시 지방보조사업 성과 및 일몰평가서 (2018년 기준)	13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오늘날 지방분권은 국가운영에 있어서 많은 구성원들에 의해 지지되는 중요한 가치이자 시대적 과제로서, 지방자치제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량 확보가 중시되고 있다(최정열, 2014).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지방정부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재정운용수준과 제도적 뒷받침은 지방분권의 중요한 기반이 되며(고승희 외, 2016),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다. 이 중 지방보조금은 예산수립과정과 사업선정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크고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재원으로서 지방분권적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이삼주 외, 2016; 이지은, 2019a).

지방보조금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상 혹은 재정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 또는 단체에게 지원하는 것¹⁾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자율적 협력과 연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을 통해 민간부문의 공공 서비스 공급을 독려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킬 수 있어 정책을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민간조직의 독창적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서비스를 차별화하여 공급할 수 있다. 즉, 지방보조금은 지역주민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재정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홍종현, 2015).

그러나 최근 지방보조금이 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의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고 선심성 보조로 활용될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고승희 외, 2015; 윤태섭 외, 2016; 김애진, 2018). 또한 매칭보조로 인해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지방보조금이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지방분권의 기초 하에서 일부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방안이 논의되어온 바 지방보조금의 규모는 향후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1)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자원의 손실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이지은, 2019a).

이러한 인식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각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기반이 마련된 이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의무화하였으며, 2018년에는 부정수급 근절의 일환으로 ‘(가칭)지방보조금관리법’ 제정을 위한 분법 추진을 시도한 바 있다. 각 자치단체 또한 외부용역을 통한 성과평가를 시도하고, 부정수급 근절대책과 지방보조금 관리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간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여러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사업자를 선정하거나 보조금을 횡령한 사례가 감사에서 다수 적발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은 여전히 ‘눈먼 돈’이라는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수와 사업성격이 너무 다양하고 정산과정이 복잡하여 사업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의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기에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처럼 지방보조금의 관리적 취약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됨에 따라 최근 보조사업 선정과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지방보조금에 대한 문제의식과 논의는 주로 보조금의 적정규모와 한계를 설정하고 성과평가체계를 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심의·선정과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진한 실정이다. 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는 것은 정부가 보조금을 통하여 궁극적인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조민경 외, 2007). 특히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역 내 영향력과 규모가 큰 단체에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집중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한번 결정된 보조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독점하는 경향이 있어 공정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꾸준히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을 가지고 지역 내 특정단체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므로,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자치단체의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의 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심의선정과정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제2장에서는 지방보조금 제도의 흐름과 특징, 이론적 논의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재원적·관리적 특성을 확인한다. 제3장에서는 예산편성액을 중심으로 수원시 지방보조금의 구체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수원시 심의선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쟁점을 파악한다.

제5장에서 타 자치단체의 현황과 개선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지방보조사업 심의선정 체계를 모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제6장에서 정책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지방보조금 특징 및 현황을 검토하고, 심의선정과 관련하여 수원시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및 쟁점, 개선점을 파악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을 범위로 한다.

이 과정에서 먼저 문헌조사, 언론보도자료, 행정안전부 관리기준과 통합지방재정공시의 예·결산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지방보조금의 제도적 배경과 주요 담론 및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후 수원시의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결산 데이터, 지방보조금 평가 및 심의자료, 지방보조금 운영 편람 등을 분석하였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분석을 위해 각 자치단체별 결산기준 재정공시 자료,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지방보조금 관리(운영)개선안, 언론보도 자료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무적인 쟁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수원시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전문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지방보조금이 일반적으로 민간부문을 활용하여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단체보조는 비교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제한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민간보조²⁾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통계자료 범위는 2015년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의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범위가 정립된 2015년 이후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한다. 단,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각 지역 간 격차가 높아 자치단체 간 비교 시에는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연구의 흐름		주요내용	연구방법
2장	지방보조금에 관한 논의	- 지방보조금의 의의와 유형 및 특징 - 지방보조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 - 지방보조금 제도의 개요와 흐름	문헌조사
3장	수원시 지방보조금 현황분석	- 지방보조금 일반 현황분석 - 수원시 지방보조금 현황 및 특징 분석	문헌조사 담당자 인터뷰
4장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 현황	-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자 현황 및 특징 -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현황 및 특징 -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체계 및 과정	문헌조사 담당자 인터뷰
5장	타 자치단체 사례분석	- 유사자치단체 현황분석 - 타 자치단체 개선사례 분석	홈페이지 및 문헌조사 담당자 인터뷰
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 현안도출 - 정책적 제언	분석결과의 종합 및 대안의 모색

〈그림 1-1〉 연구 흐름도

2)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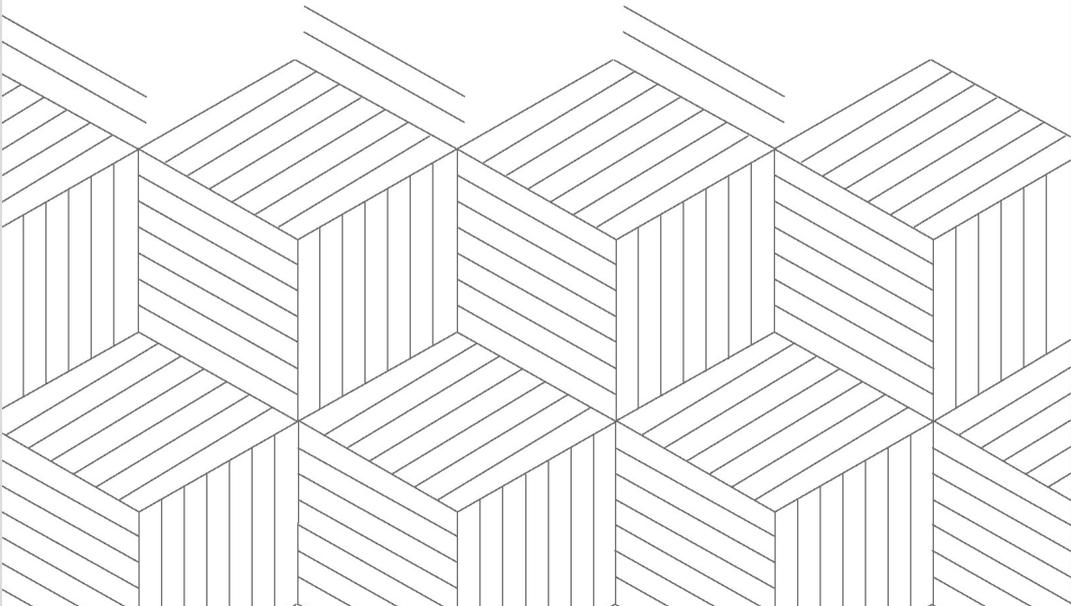
제2장

지방보조금에 관한 논의

제1절 지방보조금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지방보조금 제도의 개요

제3절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에서 대한 쟁점과 논의



제2장 지방보조금에 관한 논의

제1절 지방보조금의 의의 및 특성

1. 지방보조금의 개요

1) 지방보조금의 정의

지방보조금은 학문적·이론적 개념이 아닌 지방재정법 제32조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상의 용어로 과거 민간이전경비에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에 대한 보조금이 합쳐진 개념이다(김성주 외, 2018b).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의미한다.³⁾ 여기서 자치단체가 인정하고 권장하는 사업은 공익성, 시책 연관성, 효과성, 사회 파급성 등이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고승희, 2017).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시설이나 민간에게 부담하게 할 때 사실상 어렵게 되는 사업에 지방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즉,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지역 내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공서비스를 민간 등의 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김성주 외, 2018a).

2) 지방보조금의 유형

지방보조금은 크게 교부대상 및 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교부대상에 따라 공공단체보조와 민간보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공공단체보조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해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지방자치단체보조·

3) 행정안전부, 2017,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해당된다. 한편, 민간보조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경상보조는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금이며, 자본보조는 보조사업자의 자본 형성을 위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표 2-1〉 지방보조금 분류

구분		정의
대상별	공공단체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 지방자치단체보조·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민간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자료: 행정안전부, 2017,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다시 말해 지방보조금은 민간 및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중 공공단체보조는 일반적으로 법령에 의거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율성이 제한되어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 문헌에서는 공공단체보조의 경우 엄격한 의미에서 지방보조금에서 제외하고 있다(이삼주, 2016).

민간보조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거나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 및 단체운영비를 제외한 사업비 보조금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단, 영리행위의 허용범위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교부조건에 규정하고 투자사업의 성격이 아닌 경비에 대한 예산 편성을 금지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자체재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자체재원 보조금과 국비 및 시·도비를 바탕으로 지급하는 이전재원 보조금으로 재원의 출처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한다. 관련 근거법령에 따른 지원기준과 당해 단체의 비용부담 능력 등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지원범위를 편성할 수 있으나 운영비 외 경상사업비와 자본사업비는 편성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보조 및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사회복지관련 민간단체의 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세출예산 기능별분류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080)에 한정하여 운영한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주민복지를 위하여 법령 등의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거나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운영비와 자본적 경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며, 지원대상 및 범위는 앞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의 기준에 따른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는 주민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교부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표 2-2〉 지방보조금 유형별 정의

구분		정의
공공단체 보조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시도에서 관할 시군자치구에 지급하거나, 관할 시군자치구를 통하여 민간에 교부하는 교부금 중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적 보조금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의 지원·육성에 소요되는 경비 혹은 해당자치단체의 지역 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시·도 및 시·군·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수산·농과생 등의 지원비 ·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 도서관법 제29조에 의한 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보조하는 경비 · 교육정보화지원사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교육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경비 ※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조금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예비군부대 육성·지원을 위한 시설비 등 자본형성적 보조금 ※ 군부대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경비는 제외
	민간경상사업 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민간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민간자본사업 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자치단체 자체재원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국비 또는 시도비를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사회복지사업 보조	·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원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보조금 또는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 주민 복지를 위해 법령의 명시적 근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편성하는 보조금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예산의 편성기준에 따른다

자료: 2019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3) 지방보조금의 기능 및 특성

지방보조금은 주로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기 용이하지 않거나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민간 부문의 역량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제공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서비스에 대응하거나, 정보 비대칭성으로 민간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유리한 분야(문화, 복지, 예술, 체육 등)에서 외부효과 창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지방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민간부문의 독창성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전영욱, 2009). 다시 말해 지방보조금은 정부 활동의 비효율성을 보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로 외부효과에 대한 내재화 기능을 갖는다(강태구, 2007).

또한 지방보조금은 지방분권적 성격을 가장 많이 포함하는 재원으로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행정서비스 공급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도구로 활용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 민간조직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통해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의 기능을 수행하며 정부와 지역사회 조직 간 상호 협력관계와 거버넌스를 촉진한다. 지방보조금을 매개체로 하여 지역사회와 자치단체의 자발적 협력을 도모하여 지역 내 사회자본 축적에 기여하고 지역의 자생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이삼주, 2016; 윤태섭, 2017). 즉, 지방보조금은 정부와 지역사회 조직 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중심으로 정부활동의 비효율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게 대가 없이 지원하는 재원으로서 민간위탁금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로서의 재원과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은 지급된 재원에 대한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수혜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으며(이삼주 외, 2016), 수급단체가 이를 지속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직성을 지니고 있다(고승희 외, 2016). 그러나 자치단체장과 담당공무원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사업수행역량을 충분히 파악하기에 용이하지 않으므로 보조금의 효율적인 배분에 있어서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은 매년 동일 내용의 공급권이 한 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자동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낭비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안영환, 2005).

또한 지방보조금은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재원 중에 하나로 민간의 개인과 단체가

속한 지역의 특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김성주, 2018b). 따라서 지방보조금은 지역 내 특정집단에게 한정적으로 지급되어 사회적 편익이 한정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서로 유사한 상황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집단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서비스공급을 위임받은 개인 및 단체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를 행사할 수 있어 서비스공급에 대한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안영환, 2005).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운영과 밀접한 정책적 재원이라는 특성을 지닌다(고승희 외, 2016). 이로 인해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 대신 정치적 결정에 의해 보조금 지원대상이 선정될 수 있어 선심성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2. 지방보조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지방보조금의 재정책임성 논의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논의되어 온 한편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행위가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재정책임성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였다(김성주, 2018).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지방보조금은 정부가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민간이 공급할 때 더 효율적인 경우 민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이론을 기반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해당지역의 민간조직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보조금은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심성으로 남용될 수 있으며, 반대급부가 없는 재원의 성격상 민간단체는 가능한 많은 재원을 받으려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의 규모가 증대되고 방만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존연구들은 지방보조금이 효율성을 목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재정책임성(accountability)의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재원, 2012; 홍종현, 2015).

지방보조금을 둘러싼 재정책임성에 관한 논의는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 즉,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및 관료 간에 형성되는 관계와 재정운영과정에서의 그들의 행위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한다(이지은, 2018; 김성주, 2018). 정부예산은 편익의 수혜자, 비용의 부담자, 의사결정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지니며(von Hagen, 2007), 이러한 과정에서 사업수행역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특정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 보조금의 남용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처음 사업예산규모와 보조사업자를 결정하는 심의과정은 비효율적인 사업을 제외하고 부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제거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예측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의 심의선정과정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작단계이며 (이지은, 2018), 재정책임성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박형준 외, 2013)

(1) 주인-대리인 이론

일반적으로 예산심의 행태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정치인의 선심성 예산정치행태가 예산을 둘러싼 주인-대리인 문제와 공유자원의 문제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신가희 외, 2015). 주인(principal)-대리인(agent) 관계는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결정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자신들을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맺는 계약”을 의미한다(Jensen & Meckling, 1976). 재정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이 정치인에게 예산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편익의 수혜자와 비용의 부담자 간의 불일치를 가져오며(von Hagen, 2007), 선심성예산정치 현상은 투표자와 정치인의 관계가 주인-대리인 관계로 전환되면서 심화된다.

지방보조사업에서는 보조사업 관리 담당자를 통해 보조사업자와의 위임계약이 성립되고, 관리·감독의 역할이 형성됨에 따라 국민과 정부 간 주인-대리인 관계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을 위임한 사업담당자와 실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간의 주인-대리인 관계가 다중적으로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방보조금의 관리적 특성은 위임자와 대리인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황소하, 2016), 지방보조금을 둘러싼 재정책임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는 주로 주인-대리인 이론으로부터 발전되어왔다.

주인-대리인 관계에서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주인이 대리인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어 적합한 대리인을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대리인이 주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권한과 자원을 사용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가진다. 먼저, 지방보조사업 선정 과정에 있어서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충분한 역량을 갖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대리인인 보조사업자는 유리한 정보를 위주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되므로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사업자의 특성과 사업수행역량을 전부 파악할 수 없다(오윤섭 외, 2015). 이로 인해 부적절한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예산이 과다편성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모든 사업수행과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모니터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나타나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대리인인 보조사업자가 법령과 계약 내용에 따라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담당자가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핵심 문제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대리인을 선택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는 것과 선택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권순만 외, 1995).

(2) 포획이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기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과정으로, 특정집단에 의한 관료의 포획 및 지대추구가 발생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저해한다는 견해가 있다(구균철 외, 2018). 정치인은 자신의 재선을 목표로 하는 존재로서(Mayhew, 1974) 득표극대화를 위해서 유권자의 기반이 되는 특정지역이나 집단의 이익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 자신들의 사적지대를 추구하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비스 공급권과 관련하여 사적 지대추구, 특정집단의 포획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역정치인과 이익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되며(손희준 외, 2012), 정책결정자에 대한 로비를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이 만들어지게 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Downs, 1957), 자치단체 내의 이익집단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며, 경쟁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지역정치와의 연계강화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음으로써 이윤을 획득하고자 한다(이지은, 2018). 선출직 관료인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익집단의 로비에 포획(capture)되어 지역주민이 아닌 이익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다(남황우, 2015; 홍종현, 2015; 신봉호 외, 2016).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장의 철학이 담긴 재원으로(윤태섭, 2017; 조주복 외, 2017), 지방보조사업의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자치단체장의 주관적 판단이 중요요소로 작용한다(이지은, 2019a). 지방자치단체 내의 이익집단은 자신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약속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와 같은 이익집단은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는 주요 구성원 중 하나이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선택권이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좌우되며, 보조사업자 선택과정에서 단체장의 선심성 권한 사용이 나타날 수 있다(이삼주 외, 2016). 이러한 점에서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의도에 의한 지출결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정치적 의도에 의한 지출유인이 높아 책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큰 재원이기도 하다(이지은, 2019a).

2) 지방보조금에 관한 선행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에 의한 공익의 달성을 위해 지방보조금이 상당수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과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성태규, 2016; 고승희, 2017). 지방보조금의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부터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존 민간이전경비, 사회단체보조금, 특정단체에 대한 민간보조금 등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지속되어 왔다. 이들 논의는 주로 보조금 제도에 관한 법제도적 분석과 지방보조금의 지출효과 및 지출요인에 대한 연구들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방보조금의 개념이 정립된 이후 운영 및 성과 관리에 대하여 집중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먼저 지방보조금 제도에 관하여 김지영(2013)은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문제를 검토하였다. 그는 프랑스의 보조금제도를 검토한 후 지방보조금의 부당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관리조례에 제정하여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제도적 규정과 보조사업 및 사업자에 대한 정보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민간위탁사업과는 차별화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홍종현(2018)은 지방보조금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의 합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에 대하여 공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에 대한 규율내용을 각 운영단계별로 검토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과 권한 등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심의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여 심의과정을 내실화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내부적 역량의 강화와 더불어 감사 및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감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지방보조사업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이용식(2012)의 연구에서는 사회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는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시 내실 있고 객관적인 심의가 불가능하고, 예산집행단계에서 지원 형태나 금액 삭감이 형식적이고 관행적이며, 지원사업 기준이나 지원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을 쟁점으로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김시형 외(2014)는 지방보조금이 선심성 지출과 중복투자와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여부가 결정되기보다 정치적인 요인이 지원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지방보조금 지출요인에 관한 논의는 지방보조금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건전성에 관한 우려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결정모형과 정치적 결정모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안국찬 외(2008)는 지방보조사업의 자부담비율과 국고보조비율이 보조금규모를 증가시키며,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득권과 독점규모가 지원규모에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사전평가와 집행에 대한 중간평가를 강화하고, 예산운영기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상현(2012)은 사회경제적 요인을 포함하여 조직 변수를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정치적 견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지방보조금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경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한편, 윤태섭 외(2016)와 김애진(2017)의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위원회 수와 조례 유형이 지방보조금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보조금의 운영에 대한 시민의 역할 또한 중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지방보조금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특성을 바탕으로 최근 연구들은 지방보조사업의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성과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정성호(2015)는 지방보조사업의 예산규모와 사업단위를 고려한 평가, 독립적인 외부평가기구, 운영과 성과의 분리평가 등을 통하여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성과평가에 대한 기준이 법제화되었고 평가 결과를 2016년 예산편성부터 반영하도록 하였으나,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정성지표 위주로 구성되어(윤태섭 외, 2016)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측면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지방보조금의 성과평가에 대한 논의들은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기준의 모호성과 정성지표 위주로 구성된 평가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윤태섭 외, 2016). 또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분과별 운영 및 전문성 확보, 보조금 심의절차의 효율화, 철저한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가치중립적 성과평가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고 보았다(김성주, 2018b).

한편,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⁴⁾을 발표함에 따라 집행과정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였다. 김성주 외(2018a)는 지방보조금 유형별로 차별화된 심의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사전심의절차 도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사업유지 재검토를 통해 성과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지은(2019a)은 감사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방보조금 운영과정에서 재정 책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적절한 자부담비율의 확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모니터링 체계 및 성과평가의 강화와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지방보조금의 심의선정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며, 최근 지방보조금의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요구에 따라 지방보조금 운영과정의

4)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입체적 감시를 통해 근절-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02.14

일환으로 일부 다루어진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심의선정과정과 관련된 재정책임성에 관한 논의는 지방보조사업의 선정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 간의 관계와 이를 둘러싼 행태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방보조사업의 부적절한 선정으로 인한 문제점은 정부가 기대하는 기준과 실제 지원단체의 선정과정 간 부적합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조민경 외, 2007). 따라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사업수행역량을 보유한 사업자를 선별해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책임성 저해 행위는 보조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격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지은, 2018). 주인-대리인의 관계에서 보조사업자는 자신이 적합한 사업자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보조사업자로부터 정보가 과대포장되어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내는 과대 정보에 따른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걸러내기(screening)과정을 거쳐야 한다(이삼주, 2016; 이지은, 2018).

또한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재선을 목표로 선심성 지출로 남용될 우려가 있다(구균철 외, 2018). 선심성 예산정치현상은 국가 전체적으로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에서 책임성 있는 예산과정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하연섭, 2014). 따라서 적절한 보조사업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의선정 시에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이지은, 2018).

제2절 지방보조금 제도의 개요

1.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지방보조금 규모의 지속적인 증대와 방만한 운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중앙정부는 지방보조금의 운영과정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통제방안을 마련해왔다. 이에 따라 기존 사회단체보조, 민간자본보조 등에 대하여 예산편성 한도제, 보조금 일몰제,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제와 같은 법적 규율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다. 이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존 ‘민간이전경비’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편성, 심의위원회 구성, 사업자 선정, 성과평가, 보조사업자 관리와 같은 지방보조금의 운영기준이 본격적으로 명확화되었다.

먼저 2004년 사회단체보조에 예산편성 한도제를 도입하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방보조금이 적정규모 내에서 편성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2009년에는 보조금 지원이 3년을 경과할 경우 성과평가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보조금 일몰제를 시행함으로써, 보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여 다양한 협력체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후 2011년에는 기존 사회단체보조에 한정되어 있던 보조금 예산한도액을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로 확대하고, 보조금 성과관리카드제를 도입하여 보조금 일몰제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2012년에는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도 성과평가와 일몰제를 도입함에 따라 성과평가 대상이 확대되었다. 또한 지방보조금 한도액 산정 시 자체수입 기준을 예산액에서 결산액으로 변경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이 과소·과대 추정되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에서는 기존 예산과목⁵⁾을 폐지하고 6개 과목⁶⁾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 범위로 규정하고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보조금 운영과정을 본격적으로 체계화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2017년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으로 구분하며 현재의 지방보조금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외부 전문가 및 민간위원이 포함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2019년 심의에서 제척되는 심의위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지방보조사업 선정 및 평가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규정을 법제화·체계화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

5)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 민간자본보조

6)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이지은, 2019a). 이 중 자치단체가 선정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 수행단체의 구체성을 낮추고, 지방보조금의 부서별 한도액을 폐지하고 총액한도제를 도입한 것이 대표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정부는 지방보조사업 수행단체에서 지원제외대상에 대한 규정을 비영리민간단체로 구체성을 낮추어 개정하였다. 이로 인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자율성이 증가하였다(김성주, 2018b). 또한 총액한도제 시행에 따라 부서별 한도액 규정이 폐지되고, 총한도액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을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되었다(행정안전부, 2017). 한편, 지역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일자리사업으로 분류한 일자리와 직접 연계된 사업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산정 시 제외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민들의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차별화하여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지방보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 단,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을 보조사업자에게 제시하여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는 지급단가를 통일하며,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 예외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었다. 또한 법령에 구체적·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으며,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과 관련한 포괄적인 보조금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편성하는데, 위원회는 예산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기준 등에 대해서 심사가 가능하다.⁷⁾

2)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민간보조 지원대상과 공공보조 지원대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서정섭 외, 2015). 민간보조 지원대상에는 ①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④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7)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3항 제1호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한편, 공공보조 지원대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⁸⁾에 지원하는 경우, 시·도가 정책상 또는 시·군·구의 재정사정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에 지원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단,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단체의 성격 및 사업의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유사중복사업 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지원 제외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방보조금 운영체계

현재 지방보조금은 크게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하여 계획·운영되고 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 보조의 제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 성과평가, 교부결정 취소 및 처벌, 중요재산처분의 제한, 보조금관련 사항 공시 등을 명시하고 있다.⁹⁾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성과평가 및 관리, 처분이 제한되는 중요재산의 범위 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2~제37조의6, 제68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보조금 예산편성,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1) 보조사업자의 선정

지방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원 사업신청서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¹⁰⁾ 따라서 일부

8)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9)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제32조의2~제32조의10, 제60조, 제60조의2, 제97조, 제98조

예외를 제외하고 지방보조금 관리는 보조금지원 사업에 대한 각 부서의 공고로부터 시작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15명 이내로(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의 1/4 이내) 구성되며, 임기 3년 이내로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심의 위원은 ①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②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위원에게 공정할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심의위원은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방보조사업 담당자가 신청단체의 적격성과 보조사업의 효과, 지원금액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부서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담당공무원은 민간단체의 적격성, 전문성, 사업의 공익성·독창성, 실현가능성과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절성 및 이중지원 여부, 전년도 성과평가 등을 검토하여 종합의견과 보조금지원 검토금액을 기입한다. 이후 검토책임자와 부서(과)장의 확인을 거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예산부서로 자료를 제출하며, 신청된 보조금지원 사업의 보조금지원 검토금액은 지원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거치게 된다. 예산부서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받은 보조금심의 자료를 취합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각 부서(과)장들로부터 지원 대상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여 사업을 결정한다.

2) 지방보조금 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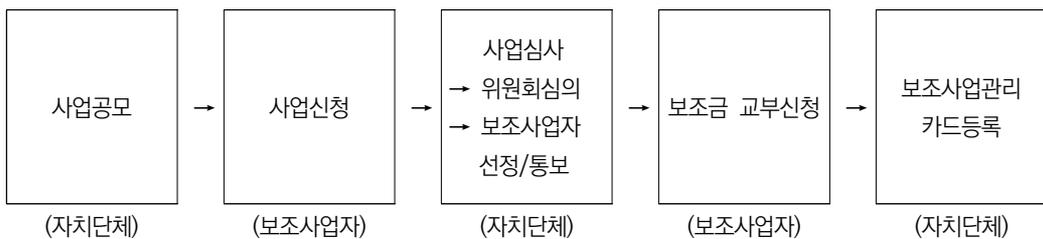
선정된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하면, 담당부서는 최종적으로 교부결정을 통지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게 된다. 교부신청 시 자부담이 있는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자부담금 예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조금 교부 전 통장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통장은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계좌)을 별도 개설하되,

10) 단,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함 (법 제 32조의2 제4항)

단체 보조사업자의 경우 자부담 및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 통장과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이렇게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3년 간 관리하며, 성과평가와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교부결정 시 자치단체는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을 제시할 수 있으며,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즉,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자치단체에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된 지방보조금은 사업집행지침 및 사업비 회계처리에 대한 개별교육을 실시한 후 교부결정통지서와 함께 보조금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교부된다.



자료: 행정안전부, 2017,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림 2-1〉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과정

3) 지방보조금 집행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보조사업비를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하여야 한다.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하도록 조치한다. 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지점검 등을 통해 감독할 수 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한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야 하며,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 장부에 기재·비치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지출 시에는 개인을 제외하고 지출결의서 등의 결재를 통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사후정산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교부결정의 내용은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4) 지방보조금 정산 및 사후관리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 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토대로 사업이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이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3년 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한다. 지방보조사업은 사업완료 후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하며, 각 분야의 운영내용과 배점은 총 배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¹¹⁾ 또한 자치단체장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이와 같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의 중요 처분내용에 대하여 공시할 의무를 지닌다.

〈표 2-3〉 지방보조사업 평가기준

분야	운영 내용	배점
사업계획	1-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0
	1-2.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5
사업관리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2-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예산집행율, 기타 집행실적 등을 감안	15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사업성과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40
	3-2. 계속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20

자료: 행정안전부, 2017,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1) 행정안전부 관리기준에는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의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예산삭감 및 사업중단 기준은 '미흡' 등급 이하의 사업이나 이는 예시안이며, 기본적으로 등급의 구분과 등급별 기준점, 예산삭감·사업중단 기준은 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제3절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의 쟁점과 논의

1.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의 특성과 쟁점

현재의 지방보조금 체계를 갖추기까지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지출통제와 세출관리를 강화하여왔다. 지방보조금은 임의의 사업추진을 통해 특정 이익집단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고 공평한 절차를 통해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의해 추진한다. 한편, 사업자 선정 시 이해관계가 없는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공정성을 추구하였다. 또한 보조사업 집행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의 심의선정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가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 보조사업을 공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보조사업자는 공모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을 신청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는 사업자의 역량과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이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전년도의 사업실적을 반영하여 계속사업 여부를 결정하고, 실적이 미흡한 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은 여전히 선심성지원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재원이자 지방재정의 대표적인 낭비요인으로 인식되며 구조조정에 대한 압력에 놓여있다. 지방보조금이 기대와 달리 비효율성 논의에 직면하는 이유는 실제 지원대상 선정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하고(조민경 외, 2007), 복잡한 정산과정과 많은 사업 수에 비해 관리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능률적인 심의 운영체계를 갖추는 데 어렵다는 데 있다(김성주 외, 2018a). 실제 지방보조금은 많은 사업수와 다양한 성격에 비하여 관리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여 현실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며, 복잡한 정산과정에 대한 명확한 고지와 사업목적 및 기준의 구체성 확보가 요구되었다,

1) 부적절한 사업선정 및 선심성 지원의 문제

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지방보조금이 불공평하게 활용될 수 있다. 지방보조금은 편익의 수혜자, 비용의 부담자, 의사결정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선정과정에서 사업자의 사업수행역량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닌다. 이와 같이 정보비대칭성에 따른 역선택의 문제로 인해 부적절한 사업과 사업자에 재원이 불공평하게 분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은 사업의 필요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매우

높은 재원 중에 하나이다. 자치단체장은 지역 내 이익집단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의도에 의해 사업의 선택과정에서 선심성 사용이 나타날 수 있어 책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심성 지출을 방지하고 적격한 보조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재정책임성을 담보하고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자치단체의 역량 확보를 위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인력과 자원 부족에 따른 관리적 한계

지방보조금 관계자의 인터뷰 결과, 지방보조사업 담당자와 예산부서는 주로 인력의 부족, 소액의 수많은 사업, 다양한 사업성격으로 인해 실질적 관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보조사업자의 특성 상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등 수익사업이 별로 없는 단체가 많아 보조사업자의 사업역량에 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수혜단체에게 있어 지방보조금이 권리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삭감이나 일몰이 어렵고, 이를 엄정하게 검토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다는 한계도 존재하였다.

한편으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층심사가 어려운 환경 또한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법적으로 심의위원수가 정해져있어 근본적으로 외부위원 위촉이 어렵고, 심의위원 간 일정 조정에도 어려움이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심의안건과 시기가 촉박하여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내실있는 심층심사를 진행하는 데 한계가 존재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작은 규모의 사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외부전문가 참여와 사전심사를 통해 심층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3) 복잡한 정산·집행과정과 명확한 지원기준의 미비

지방보조사업자의 경우 정산과정이 복잡하고 증빙자료가 과다하여 정산과 집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에 따라 정산에 대한 경험부족과 낮은 이해도가 원인이 되어 수급단체가 의도치 않게 부정수급 사업자가 되지 않도록 제도의 간소화와 충실한 사전 교육을 요구하였다. 또한 사업자를 위한 보조금 매뉴얼과 관리지침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예산편성 기준의 구체성이 미비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유사중복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유사사업 간에도 사업비 차이가 존재하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업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하고,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특히 행정업무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지방보조사업이 일부 존재하고 있어, 지방보조금 취지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치적이고 관행적인 분배가 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평가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담당 공무원 인터뷰 결과와 마찬가지로 현실에 맞게 보조금 일몰제에 대한 검토를 강화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었다. 시대를 반영하여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관례적이고 반복적인 수혜, 복수수혜, 나눠주기식 지급을 지양할 것이 요구되었다.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자부담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에 참여하는 단체가 없어 자부담이 없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존재하였다. 다만, 자부담비율이 증가할 경우 증가한 자부담비율만큼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영세한 단체에 진입장벽을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사업진행의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자부담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보조금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에 대해 지출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자부담제도의 운용이 요구되었다.

2.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의 주요논의

앞서 살펴본 기존 연구와 실무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할 때, 지방보조금의 심의선정과정의 주요논의들은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

1) 사업역량과 책임성을 갖춘 보조사업자의 선정

사업수행 역량이 부족한 단체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사업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보조사업을 계획대로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하거나 자금운영역량이 미숙하여 보조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횡령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이지은, 2018).

먼저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적격성을 갖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는 보조사업 후보자 간 경쟁(multiple agents)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대리인을 선택하는 방안이 있다. 즉,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자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보조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지원과 선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업에 대하여 수행역량을 갖춘 사업자의 규모가 많지 않으며, 모집사업자수와 비교하여 사업지원 경쟁률이 높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한편, 보조사업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스스로 조달하는 자기부담금의 규모와 충당 여부는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자의 역량과 의지를 검토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이다. 주인-대리인 관계에서 자부담은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인의 자기 선택적 장치(self-selection device)로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김성수, 2018). 따라서 자부담비율은 사업수행역량이 있는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수단이자,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사업을 구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삼주 외(2016)는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자가 별도의 변제나 부담을 지지 않으므로 보조사업자가 많은 비중의 재원을 지방보조금으로 충당하고자 하기 때문에 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업신청을 자제하도록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재 민간보조에 대한 자부담제도는 기관마다 자부담비율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자부담 예산편성과 정산에 대한 실무지침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출가능항목이 제한되어있고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와 더불어 자부담 업무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2012년 국회예산정책처 예산결산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예술분야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담당자가 임의대로 분담비율을 정하고 있고, 동일사업 간에도 자부담 비율이 상이하어 공연단체 간 형평성과 재정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이은미, 2015).

한편,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 체계가 요구된다(고승희 외, 2016). 역선택은 당사자 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정보공유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으며, 따라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업자의 선택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이지은, 2019a). 특히 최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체계가 강조되고 있는데¹²⁾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주민단체 등이 보조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익에 기여한 정도가 높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수 있다.

2) 지역주민 수요를 반영한 적절한 지방보조사업 선정

자치단체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특성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보조사업이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홍보성·일회성 사업을 증시할 경우, 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지원단체 또한 보조금 수령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조민경 외, 2007).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 및 보조사업자의 적격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유사한 사업에 대하여 중복으로 보조금을 편성하거나 특정 단체에게 보조금을 관행적으로 지급하게 될 수 있다(이지은, 2018).

무엇보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형식적으로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으로 연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자 선정 단계까지 연결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12)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입체적 감시를 통해 근절-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8.02.14.

있다. 실제 지방보조금은 사업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담당 관료의 전문성 부족, 업무과다 등으로 인해 정산 및 결과보고에 대한 사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놓여있다.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보조사업자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원중단을 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기준 10% 삭감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다.¹³⁾ 지방보조사업 사후관리에서의 핵심과제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와 결과보고 및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정보를 축적하여, 이를 다음 해 보조사업 심의선정에 활용함으로써 역선택을 극복하는 것이다(이지은, 2018). 또한 이를 위해서는 성과평가 내용의 구체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성과평가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편성 기준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유사사업 간 사업비에 차이를 보이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사업계획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서 작성이 요구되며 지방보조금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사업근거의 구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근거가 부재하거나 모호할 경우, 서로 다른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범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사실상 유사한 사업에 대해 예산이 편성되어 지방보조금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체계 효율화 및 능률적인 심의환경 조성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효율적인 사업과 부적격 사업자에 대한 걸러내기(screening)를 위한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홍종현, 2015; 윤태섭 외 2016; 김성주, 2017). 그러나 지방보조사업의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사업수가 증가함에 따라 담당 공무원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모두 엄격하게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개별적으로 보조사업자의 신청 서류를 검토해야 하며, 서류업무에 대한 부담이 높아 성과평가 등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에 대하여 위원 구성 규정 등에 대한 적절성, 민간위원의 자격조건, 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심사방식, 사업별 심사 일정 등 보조금 심의절차의 한계, 보조금 심의위원회 전문성 부족, 성과평가의 형식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김성주, 2017).

먼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심의위원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지역에 따라 심의위원 위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고승희 외(2016)는 심의에 있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13) 광주광역시 2017특정감사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고 양적·질적으로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심의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심의안건 증대, 사업시행시기 촉박 등의 문제로 인해 심의시간이 부족하고,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분과위원회의 심층심의가 미진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지방보조사업은 대부분이 공모형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각 사업별로 추진일정이 서로 달라 효과적인 심의가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부담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심의를 위한 지원 기능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

4)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 연구 분석틀

종합하여 볼 때, 지방보조금의 재정책임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의지와 역량을 갖춘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심의선정 체계를 효율화하고 능률화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 현황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 크게 지방보조사업자의 적격성, 지방보조사업의 적정성, 심의선정과정의 효율성 관점에서 쟁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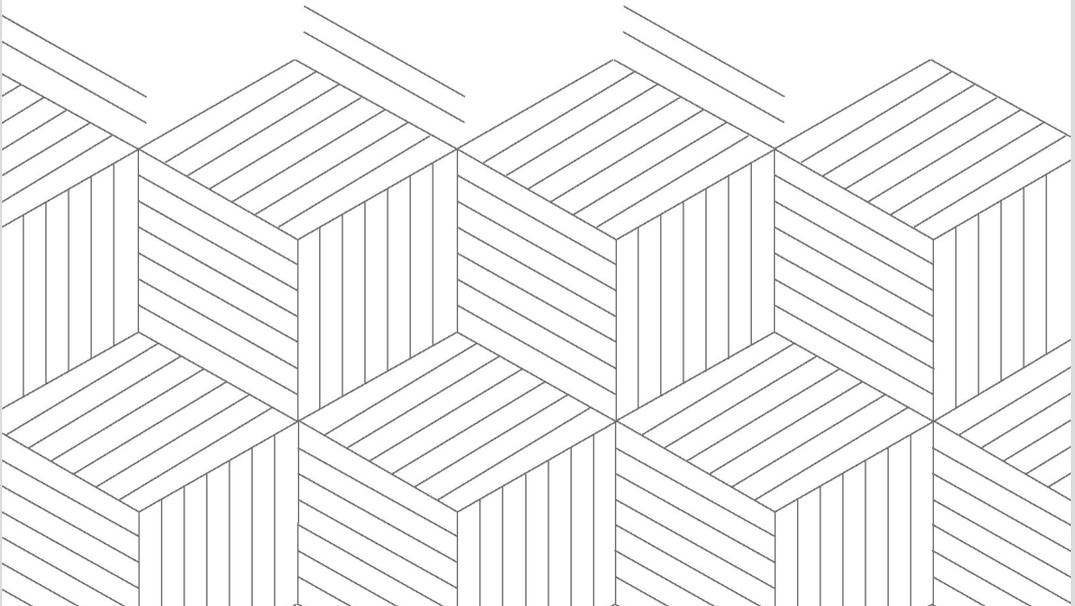


〈그림 2-2〉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 쟁점에 따른 연구분석방향

제3장

수원시 지방보조금 현황 분석

- 제1절 지방보조금 일반 현황
- 제2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현황
- 제3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제3장 수원시 지방보조금 현황 분석

제1절 지방보조금 일반 현황

1. 전국 지방보조금 현황

지난 5년 간 통합재정공시에 따르면, 세출예산총계 대비 지방보조금비율은 약 7% 수준이며, 지방보조금 총액은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표 3-1〉 지방보조금 예산규모 (2015-2019)

(단위: 백만 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 총계	270,408,484	290,742,031	304,472,387	324,504,106	313,056,955
지방보조금 총계	19,262,490	19,675,230	20,717,433	22,433,395	22,040,449
세출예산 대비 지방보조금비율	7.1	6.8	6.8	6.9	7.0

주1: 지방보조금 총액=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

주2: 지방보조금비율=(지방보조금총액/세출예산액)*100

자료: 2015-2019 통합지방재정공시(최종예산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예산과목별 지방보조금 총액을 살펴보면, 매년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전체 지방보조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2019년 당초예산 기준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전체 지방보조금 중 26.1%로,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27.6%)가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23.4%)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보조의 경우 2018년에는 전년대비 10.2% 증가율을 보이며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복지법정운영비보조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전체 지방보조금 총액 대비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매년 가장 높은 증가율(지난 5년 간 평균 증가율 17.9%)을 보이고 있어 사회복지법정운영비보조와 더불어 운영비 보조금의 증가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2〉 지방보조금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2015-2019)

(단위: 백만 원)

예산과목	2015	2016	2017	2018	2019
민간경상사업보조	3,248,671	3,233,188	3,604,970	3,946,864	3,934,803
민간행사사업보조	621,794	620,401	640,761	687,250	636,013
사회복지사업보조	4,800,274	4,901,334	4,967,659	5,473,015	5,754,58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48,034	320,481	366,918	430,565	476,069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5,083,533	5,212,669	5,464,972	5,743,247	6,091,455
민간자본사업보조	5,260,184	5,387,157	5,672,153	6,152,454	5,147,527
총계	19,262,490	19,675,230	20,717,433	22,433,395	22,040,449

자료: 2015-2019 통합지방재정공시(최종예산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목별 현황을 단체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보조금 총액은 시 지역이 7,675,382백만 원으로 가장 높고, 도 지역이 1,165,487백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난다¹⁴⁾. 한편, 광역단위의 자치단체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금액이 높은 편이며, 기초단위 자치단체 중 시 지역과 구 지역에서는 사회복지사업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 2019년 지방보조금 단체유형별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

예산과목	특별·광역시	도	시	군	구
민간경상사업보조	972,154 (28.3)	637,063 (54.7)	1,204,724 (15.7)	902,807 (22.6)	218,055 (3.8)
민간행사사업보조	65,532 (1.9)	38,284 (3.3)	292,364 (3.8)	202,682 (5.1)	37,151 (0.6)
사회복지사업보조	525,981 (15.3)	102,030 (8.8)	1,887,195 (24.6)	577,664 (14.4)	2,661,712 (46.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22,353 (3.6)	65,166 (5.6)	174,338 (2.3)	81,706 (2.0)	32,506 (0.6)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98,903 (11.6)	82,640 (7.1)	2,189,631 (28.5)	695,453 (17.4)	2,724,828 (47.2)
민간자본사업보조	1,345,816 (39.2)	240,304 (20.6)	1,927,130 (25.1)	1,539,131 (38.5)	95,146 (1.6)
총계	3,430,739 (100.0)	1,165,487 (100.0)	7,675,382 (100.0)	3,999,443 (100.0)	5,769,398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9 통합지방재정공시(당초예산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14) 기초단위 단체들이 광역단위 단체들과 비교하여 민간보조의 총액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특별·광역시도 및 도 지역에서 하위 자치단체로 지급하는 자치단체경상보조와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예산과 비중이 높다(김성주 외, 2018)는 사실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군 지역에서는 광역시도와 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902,807백만 원, 22.6%)와 민간 자본사업보조(1,539,131백만 원, 38.6%)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예산과목에 시 지역의 총액이 높게 나타나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의 경우 구 지역이 가장 높은 규모의 예산액(2,724,828백만 원, 구 지역 전체 지방보조금 중 47.2%)을 보이고 있다.

2. 시도별 지방보조금 현황

2019년 당초 예산기준 지역별 지방보조금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 및 경기 지역이 전체 지방보조금 총액 22,040,449백만 원 중 각각 3,891,898백만 원(17.7%), 3,440,816백만 원(15.6%)로 다른 시도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지방보조금 총액 51,497,258 백만 원 중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업이 1,580,154백만 원(40.6%) 수준으로 가장 높은 반면, 경기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총액 3,440,816백만 원 중 사회복지사업보조(1,065,321백만 원, 31.0%)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별·광역시도에 속한 지역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예산과목 간 가장 편중이 높은 지역은 인천광역시로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시 전체 보조금 중 55.8%(731,487백만 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는 인천광역시보다 사회복지사업보조의 비중은 낮으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를 포함한 사회복지분야 지방보조금이 전체 지방보조금 중 78.1%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도 지역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보조(1,065,321백만 원)가 경기도 전체 지방보조금(3,440,816백만 원) 중 31.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1,065,321백만 원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보조금이 경기도 총 지방보조금 3,440,816백만 원 중 60.3%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광역시도와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의 지방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지방보조금 다음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615,734백만 원, 17.9%), 민간경상사업보조(545,817백만 원, 15.9%),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108,113백만 원, 3.1%) 순으로 높은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3-4〉 2019년 지방보조금 시도별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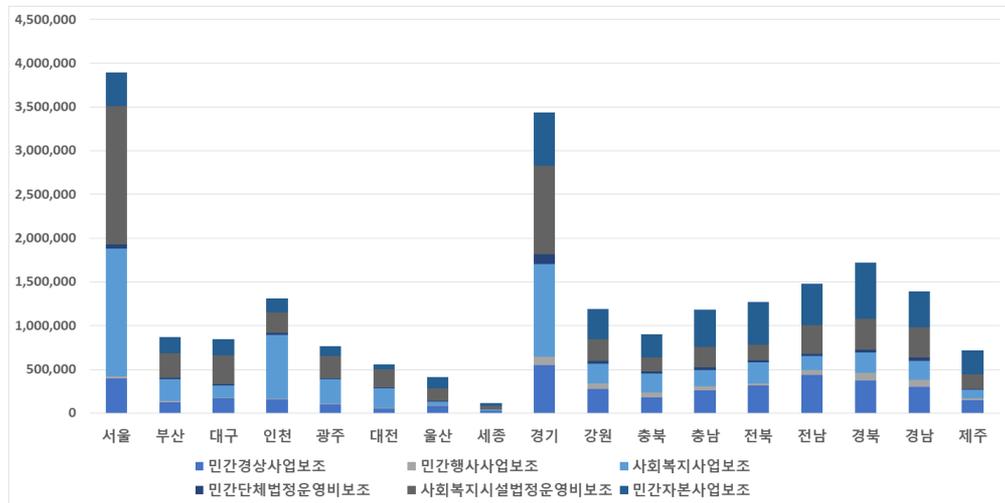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

단체명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총합
서울	394,289 (10.1)	24,912 (0.6)	1,458,145 (37.5)	54,321 (1.4)	1,580,154 (40.6)	380,077 (9.8)	3,891,898 (100.0)
부산	123,705 (14.3)	19,129 (2.2)	245,766 (28.3)	13,659 (1.6)	279,547 (32.2)	185,581 (21.4)	867,387 (100.0)
대구	169,323 (20.1)	12,937 (1.5)	133,576 (15.9)	17,896 (2.1)	329,552 (39.1)	178,934 (21.2)	842,218 (100.0)
인천	157,358 (12.0)	8,617 (0.7)	731,487 (55.8)	18,732 (1.4)	235,774 (18.0)	159,427 (12.2)	1,311,395 (100.0)
광주	101,916 (13.3)	2,635 (0.3)	280,817 (36.6)	13,700 (1.8)	251,449 (32.8)	115,987 (15.1)	766,504 (100.0)
대전	52,571 (9.4)	7,202 (1.3)	221,103 (39.6)	14,313 (2.6)	208,472 (37.3)	54,600 (9.8)	558,261 (100.0)
울산	82,329 (20.1)	10,302 (2.5)	35,484 (8.7)	8,167 (2.0)	145,990 (35.7)	126,338 (30.9)	408,610 (100.0)
세종	23,741 (20.8)	4,341 (3.8)	12,443 (10.9)	3,682 (3.2)	41,921 (36.7)	28,145 (24.6)	114,273 (100.0)
경기	545,817 (15.9)	96,167 (2.8)	1,065,321 (31.0)	108,113 (3.1)	1,009,664 (29.3)	615,734 (17.9)	3,440,816 (100.0)
강원	273,863 (23.1)	68,037 (5.7)	224,990 (18.9)	32,188 (2.7)	248,670 (20.9)	340,337 (28.6)	1,188,085 (100.0)
충북	183,188 (20.4)	50,963 (5.7)	217,253 (24.1)	24,946 (2.8)	159,031 (17.7)	264,226 (29.4)	899,607 (100.0)
충남	256,570 (21.7)	53,372 (4.5)	183,155 (15.5)	29,279 (2.5)	236,354 (20.0)	420,974 (35.7)	1,179,704 (100.0)
전북	312,039 (24.6)	28,931 (2.3)	240,558 (18.9)	24,238 (1.9)	175,556 (13.8)	489,700 (38.5)	1,271,022 (100.0)
전남	434,672 (29.4)	58,572 (4.0)	162,818 (11.0)	20,694 (1.4)	331,112 (22.4)	468,594 (31.7)	1,476,462 (100.0)
경북	375,619 (21.8)	81,965 (4.8)	232,233 (13.5)	37,079 (2.2)	353,583 (20.6)	638,940 (37.2)	1,719,419 (100.0)
경남	297,482 (21.4)	84,659 (6.1)	218,242 (15.7)	40,420 (2.9)	343,533 (24.8)	403,481 (29.1)	1,387,817 (100.0)
제주	150,321 (21.0)	23,272 (3.2)	91,191 (12.7)	14,642 (2.0)	161,093 (22.5)	276,452 (38.6)	716,971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9 통합지방재정공시(당초예산)(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백만 원)



자료: 2019 통합지방재정공시(당초예산)(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재구성

〈그림 3-1〉 2019년 지방보조금 시도별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비교

시 지역 중 청주시가 지방보조금 총액 266,439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총 세출 예산 대비 지방보조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안동시(17.6%)이다. 수원시 지방보조금 총액은 246,783백만 원으로 청주시 다음으로 높은 지방보조금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평택시(233,166백만 원), 고양시(220,400백만 원), 창원시(220,182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표 3-5〉 2019년 지방보조금 상위 10개 시 지역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

단체명	세출예산 총계(A)	지방보조금 총계(B)	지방보조금비율(A/B)
청주시	2,336,045	266,439	11.4
수원시	2,776,758	246,783	8.9
평택시	1,662,330	233,166	14.0
고양시	2,290,983	220,400	9.6
창원시	2,987,187	220,182	7.4
화성시	2,516,916	199,327	7.9
안동시	1,070,000	188,278	17.6
포항시	1,834,500	166,740	9.1
전주시	1,658,788	164,158	9.9
부천시	1,902,512	163,874	8.6

주1: 지방보조금 총액=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

주2: 지방보조금비율=(지방보조금총액/세출예산액)*100

자료: 2019 통합지방재정공시(당초예산)(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안동시는 전체 세출예산 1,070,000백만 원 대비 지방보조금 총액 188,278백만 원으로 17.6%의 지방보조금비율을 보이고 있고, 수원시의 지방보조금비율(8.9%)과 비교하여 약 2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보조금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지역은 수원시와 비교하여 세출규모가 낮은 지역에 해당한다.

〈표 3-6〉 2019년 세출예산 대비 지방보조금 상위 10개 시 지역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

단체명	세출예산 총계(A)	지방보조금 총계(B)	지방보조금비율(A/B)
안동시	1,070,000	188,278	17.6
오산시	645,001	108,308	16.8
동두천시	466,870	65,605	14.1
평택시	1,662,330	233,166	14.0
김제시	782,757	109,326	14.0
동해시	374,475	49,917	13.3
나주시	680,870	90,732	13.3
남원시	731,175	97,250	13.3
의정부시	1,080,371	139,345	12.9
익산시	1,196,424	153,900	12.9

주1: 지방보조금 총액=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

주2: 지방보조금비율=(지방보조금총액/세출예산액)*100

자료: 2019 통합지방재정공시(당초예산)(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상위 10개 시 지역 중 청주시는 지방보조금 총 예산액과 지방보조금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규모가 가장 낮은 지역은 안산시(124,963백만 원), 지방보조금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성남시(5.0%)로 나타났다.

〈표 3-7〉 2019년 세출예산 상위 10개 시 지역 지방보조금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

단체명	세출예산 총계(A)	지방보조금 총계(B)	지방보조금비율(A/B)
성남시	3,012,903	152,067	5.0
창원시	2,987,187	220,182	7.4
수원시	2,776,758	246,783	8.9
화성시	2,516,916	199,327	7.9
청주시	2,336,045	266,439	11.4
고양시	2,290,983	220,400	9.6
용인시	2,265,483	155,282	6.9
안산시	2,216,464	124,963	5.6
부천시	1,902,512	163,874	8.6
포항시	1,834,500	166,740	9.1

주1: 지방보조금 총액=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

주2: 지방보조금비율=(지방보조금총액/세출예산액)*100

자료: 2019 통합지방재정공시(당초예산)(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상위 10개 시 지역은 대부분 사회복지사업보조 및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예산규모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중 지방보조금 예산규모가 가장 높은 청주시와 수원시는 사회복지사업보조의 비중이 각 지방보조금 총액 대비 40.1%, 3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성남시의 비중이 31.8%로 높게 나타난다. 그 외 창원시와 경기도 내 지역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포항시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포항시 총 지방보조금 중 41.1%(69,562백만 원)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고양시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110,400백만 원(50.1%)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48,388백만 원(22.0%)의 2배 이상의 규모를 보이며 예산과목 간 가장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청주시 또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많은 비중의 보조금을 편성하고 있다.

〈표 3-8〉 2019년 세출예산 상위 10개 시 지역 예산과목별 지방보조금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

단체명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총합
성남시	20,453 (13.4)	5,393 (3.5)	48,326 (31.8)	16,144 (10.6)	36,959 (24.3)	24,792 (16.3)	152,067 (100.0)
창원시	21,071 (9.6)	13,517 (6.1)	51,908 (23.6)	7,550 (3.4)	78,217 (35.5)	47,919 (21.8)	220,182 (100.0)
수원시	27,850 (11.3)	5,575 (2.3)	95,439 (38.7)	6,293 (2.6)	80,202 (32.5)	31,424 (12.7)	246,783 (100.0)
화성시	45,735 (22.9)	7,293 (3.7)	20,047 (10.1)	4,096 (2.1)	61,313 (30.8)	60,843 (30.5)	199,327 (100.0)
청주시	47,333 (17.8)	10,478 (3.9)	106,857 (40.1)	4,955 (1.9)	50,463 (18.9)	46,353 (17.4)	266,439 (100.0)
고양시	20,639 (9.4)	5,198 (2.4)	48,388 (22.0)	6,279 (2.8)	110,400 (50.1)	29,496 (13.4)	220,400 (100.0)
용인시	22,918 (14.8)	3,862 (2.5)	28,833 (18.6)	3,645 (2.3)	55,908 (36.0)	40,116 (25.8)	155,282 (100.0)
안산시	19,303 (15.4)	3,885 (3.1)	26,823 (21.5)	6,586 (5.3)	48,129 (38.5)	20,237 (16.2)	124,963 (100.0)
부천시	18,204 (11.1)	7,180 (4.4)	41,769 (25.5)	8,408 (5.1)	70,421 (43.0)	17,892 (10.9)	163,874 (100.0)
포항시	23,886 (14.3)	5,016 (3.0)	18,319 (11.0)	4,106 (2.5)	45,851 (27.5)	69,562 (41.7)	166,740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9 통합지방재정공시(당초예산)(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3. 경기도 지방보조금 현황

경기도 지방보조금 예산규모는 지난 5년 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예산과목별로 살펴볼 때, 민간단체법정보조금은 전체 지방보조금총액 중 가장 적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또한 2016년 감소 이후 지속적으로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보조 및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전체 지방보조금 대비 30% 전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후 2019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3-9〉 경기도 예산과목별 지방보조금 예산규모 (2015-2019)

(단위: 백만 원, %)

예산과목	2015	2016	2017	2018	2019
민간경상사업보조	512,327 (16.6)	427,754 (13.5)	472,142 (14.1)	520,974 (15.1)	545,817 (15.9)
민간행사사업보조	104,806 (3.4)	104,350 (3.3)	101,243 (3.0)	108,220 (3.1)	96,167 (2.8)
사회복지사업보조	992,608 (32.1)	1,030,638 (32.6)	972,578 (29.1)	1,029,088 (29.8)	1,065,321 (31.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9,889 (1.6)	61,165 (1.9)	74,333 (2.2)	95,575 (2.8)	108,113 (3.1)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864,576 (28.0)	912,774 (28.9)	1,005,891 (30.1)	924,844 (26.8)	1,009,664 (29.3)
민간자본사업보조	566,179 (18.3)	621,212 (19.7)	712,092 (21.3)	774,771 (22.4)	615,734 (17.9)
총계	3,090,385 (100.0)	3,157,893 (100.0)	3,338,279 (100.0)	3,453,472 (100.0)	3,440,816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9 통합지방재정공시(당초예산)(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2019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볼 때, 지방보조금 전체 예산규모는 수원시가 246,783백만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평택시(233,166백만 원), 고양시(220,400백만 원), 화성시(199,327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세출예산 대비 지방보조금비율은 오산시가 1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성남시는 5.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의 총 세출예산 대비 지방보조금비율은 8.9%로 도내 유자지방자치단체¹⁵⁾ 대비 남양주시(9.8%), 고양시(9.6%)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5) 성남(5.0%), 고양(9.6%), 용인(6.9%), 부천(8.6%), 안산(5.6%), 안양(6.7%), 남양주(9.8%), 화성(7.9%)

〈표 3-10〉 2019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군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

자치단체	세출예산 총계(A)	지방보조금 총계(B)	지방보조금비율(A/B)
수원시	2,776,758	246,783	8.9
평택시	1,662,330	233,166	14.0
고양시	2,290,983	220,400	9.6
화성시	2,516,916	199,327	7.9
부천시	1,902,512	163,874	8.6
용인시	2,265,483	155,282	6.9
남양주시	1,550,579	152,704	9.8
성남시	3,012,903	152,067	5.0
의정부시	1,080,371	139,345	12.9
안산시	2,216,464	124,963	5.6
시흥시	1,600,953	113,264	7.1
오산시	645,001	108,308	16.8
파주시	1,283,592	108,039	8.4
이천시	1,018,377	100,743	9.9
안양시	1,450,701	97,665	6.7
안성시	822,000	88,717	10.8
여주시	690,809	81,791	11.8
양평군	636,935	75,958	11.9
광주시	1,023,133	75,627	7.4
포천시	600,731	73,151	12.2
김포시	1,189,293	68,422	5.8
양주시	771,815	67,217	8.7
동두천시	466,870	65,605	14.1
가평군	435,835	62,367	14.3
군포시	744,122	51,145	6.9
광명시	821,149	51,004	6.2
하남시	673,601	40,586	6.0
의왕시	464,230	39,265	8.5
구리시	580,917	37,742	6.5
연천군	408,858	34,310	8.4
과천시	384,357	27,354	7.1

주1: 지방보조금 총액=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

주2: 지방보조금비율=(지방보조금총액/세출예산액)*100

자료: 2019 통합지방재정공시(당초예산)(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각 예산과목별로 살펴볼 때, 특히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수원시(27,850백만 원), 용인시(22,918백만 원), 고양시(20,639백만 원)와 비교하여 화성시가 45,735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도 화성시가 7,293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부천시(7,180백만 원), 평택시(6,493백만 원), 수원시(5,575백만 원) 순으로 높은 규모를 보였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평택시가 132,283백만 원으로 의정부시(99,224백만 원), 수원시(95,439백만 원), 오산시(81,174백만 원) 등 다른 시군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성남시가 16,144백만 원으로 다음으로 높은 규모를 보이는 부천시(8,408백만 원)보다 약 2배 높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고양시가 110,400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원시(80,202백만 원), 부천시(70,421백만 원), 남양주시(69,713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화성시가 60,843백만 원으로 예산규모가 가장 높으며, 평택시(45,376백만 원), 용인시(40,116백만 원), 안성시(35,440백만 원) 순으로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3-11〉 2019년 경기도 지방보조금 시군별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

자치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총합
수원시	27,850 (11.3)	5,575 (2.3)	95,439 (38.7)	6,293 (2.6)	80,202 (32.5)	31,424 (12.7)	246,783 (100.0)
평택시	17,548 (7.5)	6,493 (2.8)	132,283 (56.7)	2,439 (1.0)	29,027 (12.4)	45,376 (19.5)	233,166 (100.0)
고양시	20,639 (9.4)	5,198 (2.4)	48,388 (22.0)	6,279 (2.8)	110,400 (50.1)	29,496 (13.4)	220,400 (100.0)
화성시	45,735 (22.9)	7,293 (3.7)	20,047 (10.1)	4,096 (2.1)	61,313 (30.8)	60,843 (30.5)	199,327 (100.0)
부천시	18,204 (11.1)	7,180 (4.4)	41,769 (25.5)	8,408 (5.1)	70,421 (43.0)	17,892 (10.9)	163,874 (100.0)
용인시	22,918 (14.8)	3,862 (2.5)	28,833 (18.6)	3,645 (2.3)	55,908 (36.0)	40,116 (25.8)	155,282 (100.0)
남양주시	9,178 (6.0)	1,714 (1.1)	38,355 (25.1)	2,010 (1.3)	69,713 (45.7)	31,734 (20.8)	152,704 (100.0)
성남시	20,453 (13.4)	5,393 (3.5)	48,326 (31.8)	16,144 (10.6)	36,959 (24.3)	24,792 (16.3)	152,067 (100.0)
의정부시	12,944 (9.3)	2,402 (1.7)	99,224 (71.2)	3,133 (2.2)	11,978 (8.6)	9,664 (6.9)	139,345 (100.0)

자치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총합
안산시	19,303 (15.4)	3,885 (3.1)	26,823 (21.5)	6,586 (5.3)	48,129 (38.5)	20,237 (16.2)	124,963 (100.0)
시흥시	19,653 (17.4)	3,462 (3.1)	21,884 (19.3)	2,997 (2.6)	49,365 (43.6)	15,903 (14.0)	113,264 (100.0)
오산시	7,493 (6.9)	1,687 (1.6)	81,174 (74.9)	2,487 (2.3)	9,591 (8.9)	5,876 (5.4)	108,308 (100.0)
파주시	12,230 (11.3)	3,335 (3.1)	41,429 (38.3)	1,734 (1.6)	30,513 (28.2)	18,798 (17.4)	108,039 (100.0)
이천시	19,655 (19.5)	4,971 (4.9)	28,952 (28.7)	1,866 (1.9)	21,154 (21.0)	24,145 (24.0)	100,743 (100.0)
안양시	13,833 (14.2)	1,781 (1.8)	25,450 (26.1)	2,576 (2.6)	41,696 (42.7)	12,329 (12.6)	97,665 (100.0)
안성시	9,499 (10.7)	2,712 (3.1)	25,992 (29.3)	1,622 (1.8)	13,452 (15.2)	35,440 (39.9)	88,717 (100.0)
여주시	13,000 (15.9)	1,348 (1.6)	23,710 (29.0)	1,091 (1.3)	11,071 (13.5)	31,571 (38.6)	81,791 (100.0)
양평군	17,844 (23.5)	1,288 (1.7)	16,940 (22.3)	2,381 (3.1)	19,669 (25.9)	17,836 (23.5)	75,958 (100.0)
광주시	16,949 (22.4)	3,287 (4.3)	12,118 (16.0)	1,291 (1.7)	29,534 (39.1)	12,448 (16.5)	75,627 (100.0)
포천시	15,900 (21.7)	1,816 (2.5)	16,673 (22.8)	2,264 (3.1)	19,944 (27.3)	16,554 (22.6)	73,151 (100.0)
김포시	10,222 (14.9)	1,283 (1.9)	6,714 (9.8)	2,012 (2.9)	31,707 (46.3)	16,484 (24.1)	68,422 (100.0)
양주시	9,489 (14.1)	1,973 (2.9)	9,284 (13.8)	1,812 (2.7)	24,352 (36.2)	20,307 (30.2)	67,217 (100.0)
동두천시	2,314 (3.5)	1,180 (1.8)	46,028 (70.2)	1,385 (2.1)	12,573 (19.2)	2,125 (3.2)	65,605 (100.0)
가평군	6,442 (10.3)	1,864 (3.0)	29,541 (47.4)	1,558 (2.5)	5,408 (8.7)	17,554 (28.1)	62,367 (100.0)
군포시	5,122 (10.0)	2,341 (4.6)	12,288 (24.0)	1,066 (2.1)	20,901 (40.9)	9,427 (18.4)	51,145 (100.0)
광명시	7,266 (14.2)	2,270 (4.5)	11,737 (23.0)	791 (1.6)	23,544 (46.2)	5,396 (10.6)	51,004 (100.0)
하남시	5,948 (14.7)	2,024 (5.0)	9,352 (23.0)	1,879 (4.6)	15,147 (37.3)	6,236 (15.4)	40,586 (100.0)
의왕시	6,532 (16.6)	452 (1.2)	7,471 (19.0)	1,184 (3.0)	21,088 (53.7)	2,538 (6.5)	39,265 (100.0)

자치단체	민간경상사업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	총합
구리시	4,484 (11.9)	870 (2.3)	10,890 (28.9)	1,205 (3.2)	17,753 (47.0)	2,540 (6.7)	37,742 (100.0)
연천군	4,056 (11.8)	1,329 (3.9)	13,559 (39.5)	950 (2.8)	2,002 (5.8)	12,414 (36.2)	34,310 (100.0)
과천시	2,308 (8.4)	2,190 (8.0)	17,934 (65.6)	998 (3.6)	1,986 (7.3)	1,938 (7.1)	27,354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9 통합지방재정공시(당초예산)(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이와 같은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지방보조금은 그 규모와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분야 지방보조금 비중이 높고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회복지 수요와 대응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와 서울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3배 이상의 높은 예산규모를 보여 지역 간 격차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제2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현황

1. 수원시 지방보조금 일반 현황

1) 수원시 지방보조금 총규모 및 예산과목별 현황

지난 5년간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016년 이후 증가추세에 있다.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수는 2015년 859개 사업에서 2018년 737개 사업으로 약 14.2%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예산규모는 2015년 196,454백만 원에서 2018년 229,200백만 원으로 약 16.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업수 대비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12〉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총 사업수 및 예산규모 (2015-2019)

(단위: 개, 천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수	859	739	737	737	705
총계	196,453,812	191,205,198	210,577,452	229,200,024	277,324,576

주: 지방보조금 총액=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

자료: 2015-2019 수원시 최종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1차추경예산 기준)

예산과목별로 살펴볼 때, 지난 5년 간 매년 민간경상사업보조(2018년 기준 259개, 전체 사업수 중 35.1%)가 가장 많이 수행되고 있는 반면, 예산규모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보조의 예산액(2018년 기준 91,577백만 원, 전체 지방보조금 예산 중 40.0%)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사업수의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사업수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의 사업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예산규모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의 예산규모는 5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3-13〉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예산과목별 사업수 및 예산규모 (2015-2019)

(단위: 개, 천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수	예산액								
민간경상사업 보조	329 (38.3)	24,948,450 (12.7)	258 (34.9)	20,830,383 (10.9)	257 (34.9)	21,035,958 (10.0)	259 (35.1)	25,714,019 (11.2)	261 (37.0)	31,012,368 (11.2)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수	예산액								
민간행사사업 보조	185 (21.5)	9,995,517 (5.1)	158 (21.4)	9,046,581 (4.7)	141 (19.1)	6,741,003 (3.2)	152 (20.6)	7,639,443 (3.3)	120 (17.0)	5,493,650 (2.0)
사회복지사업 보조	117 (13.6)	81,448,850 (41.5)	108 (14.6)	81,542,923 (42.6)	124 (16.8)	88,107,528 (41.8)	113 (15.3)	91,577,225 (40.0)	110 (15.6)	96,801,642 (34.9)
민간자본사업 보조	97 (11.3)	30,698,564 (15.6)	92 (12.4)	23,763,655 (12.4)	84 (11.4)	28,382,610 (13.5)	84 (11.4)	28,196,485 (12.3)	80 (11.3)	57,900,096 (20.9)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41 (4.8)	4,081,177 (2.1)	37 (5.0)	4,774,243 (2.5)	37 (5.0)	5,482,484 (2.6)	37 (5.0)	5,690,035 (2.5)	38 (5.4)	6,369,400 (2.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90 (10.5)	45,281,254 (23.0)	86 (11.6)	51,247,413 (26.8)	94 (12.8)	60,827,869 (28.9)	92 (12.5)	70,382,817 (30.7)	96 (13.6)	79,747,420 (28.8)
총계	859 (100.0)	196,453,812 (100.0)	739 (100.0)	191,205,198 (100.0)	737 (100.0)	210,577,452 (100.0)	737 (100.0)	229,200,024 (100.0)	705 (100.0)	277,324,576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5-2019 수원시 최종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1차추경예산 기준)

재원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시비가 약 50% 수준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고 있으며, 도비, 국비 순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기준 총 229,200백만 원 중 시비(113,801만 원, 49.7%)가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비(50,600백만 원, 22.1%), 도비(63,738백만 원, 27.8%), 균특보조(1,059백만 원, 0.5%) 순으로 높은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3-14〉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재원별 예산규모 (2015-2019)

(단위: 천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국비	35,675,178 (18.2)	34,419,916 (18.0)	42,712,295 (20.3)	50,600,479 (22.1)	77,348,976 (27.9)
도비	57,806,450 (29.4)	59,835,241 (31.3)	62,944,696 (29.9)	63,738,234 (27.8)	71,423,213 (25.8)
시비	100,327,429 (51.1)	95,535,041 (50.0)	104,128,605 (49.4)	113,801,986 (49.7)	127,369,347 (45.9)
균특	1,344,755 (0.7)	1,415,000 (0.7)	791,856 (0.4)	1,059,325 (0.5)	1,183,040 (0.4)
조정교부	1,300,000 (0.7)	- (0.0)	- (0.0)	- (0.0)	- (0.0)
총계	196,453,812 (100.0)	191,205,198 (100.0)	210,577,452 (100.0)	229,200,024 (100.0)	277,324,576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5-2019 수원시 최종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1차추경예산 기준)

한편, 각 예산과목별로 재원별 규모를 살펴볼 때, 사회복지사업보조를 제외한 대부분 사업의 경우 대부분 시비가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2018년 최종예산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 17,597백만 원(68.4%), 민간행사사업보조 7,142백만 원(93.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623백만 원(98.8%), 민간자본사업보조 15,392백만 원(54.6%)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총 70,383백만 원 중 시비가 38,941백만 원(55.3%)으로 가장 많고, 국비 20,810백만 원(29.6%), 도비 10,632백만 원(15.1%)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총 91,577백만 원 중 도비가 48,362백만 원(52.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비 29,108백만 원(31.8%), 국비 14,107백만 원(15.4%)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균형특별회계에 따른 보조금의 경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1,023백만 원)와 민간자본사업보조(36백만 원)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국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5〉 2018년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재원별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단위: 천원, %)

	계	국비	도비	시비	균특
민간경상사업보조	25,714,019 (100.0)	4,558,632 (17.7)	2,535,251 (9.9)	17,596,811 (68.4)	1,023,325 (4.0)
민간행사사업보조	7,639,443 (100.0)	120,000 (1.6)	377,296 (4.9)	7,142,147 (93.5)	0 (0.0)
사회복지사업보조	91,577,225 (100.0)	14,106,943 (15.4)	48,362,076 (52.8)	29,108,206 (31.8)	0 (0.0)
민간자본사업보조	28,196,485 (100.0)	11,004,791 (39.0)	1,764,134 (6.3)	15,391,560 (54.6)	36,000 (0.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690,035 (100.0)	0 (0.0)	67,500 (1.2)	5,622,535 (98.8)	0 (0.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0,382,817 (100.0)	20,810,113 (29.6)	10,631,977 (15.1)	38,940,727 (55.3)	0 (0.0)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8 수원시 최종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 수원시 지방보조금 분야별 현황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업수 및 예산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사업수 및 예산액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분야와 환경보호분야,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반적으로 예산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분야별 사업개수는 총 737개 사업 중 사회복지분야가 328개 사업(75.2%)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124개, 일반공공행정 100개, 농림해양수산 57개, 산업중소기업분야 40개, 환경보호 분야 28개 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예산액 229,200백만 원 중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이 172,328백만 원(75.2%)으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환경보호 분야의 예산액이 17,617백만 원(7.7%), 문화 및 관광 분야의 예산액이 17,584백만 원(7.7%)으로 다음 순서로 높은 규모를 보인다.

〈표 3-16〉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분야별 사업수 및 예산규모 (2015-2019)

(단위: 개, 천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수	예산액								
일반 공공행정	120 (14.0)	2,561,523 (1.3)	103 (13.9)	2,385,988 (1.3)	100 (13.6)	2,425,041 (1.2)	100 (13.6)	2,535,448 (1.1)	94 (13.3)	2,391,819 (0.9)
공공질서 및 안전	5 (0.6)	63,085 (0.0)	2 (0.3)	7,400 (0.0)	2 (0.3)	40,000 (0.0)	2 (0.3)	34,400 (0.0)	- -	- -
교육	18 (2.1)	1,321,257 (0.7)	14 (1.9)	541,225 (0.3)	18 (2.4)	641,935 (0.3)	15 (2.1)	681,567 (0.3)	14 (2.0)	648,946 (0.2)
문화 및 관광	157 (18.3)	17,229,042 (8.8)	132 (17.8)	19,397,809 (10.2)	121 (16.4)	17,331,949 (8.2)	124 (16.8)	17,584,211 (7.7)	116 (16.4)	18,088,633 (6.5)
환경보호	33 (3.8)	8,564,534 (4.4)	30 (4.1)	8,680,081 (4.5)	27 (3.7)	12,851,762 (6.1)	28 (3.8)	17,616,732 (7.7)	26 (3.7)	44,909,035 (16.2)
사회복지	367 (42.7)	139,797,905 (71.1)	322 (43.6)	142,262,452 (74.4)	348 (47.2)	157,907,486 (75.0)	328 (44.5)	172,328,308 (75.2)	324 (46.0)	188,913,712 (68.1)
보건	20 (2.3)	2,710,014 (1.4)	11 (1.5)	3,080,768 (1.6)	11 (1.5)	2,510,020 (1.2)	8 (1.1)	2,496,657 (1.1)	11 (1.6)	2,766,682 (1.0)
농림 해양수산	49 (5.7)	1,131,393 (0.6)	52 (7.0)	1,286,411 (0.7)	42 (5.7)	1,196,163 (0.6)	57 (7.7)	2,391,047 (1.0)	58 (8.2)	4,257,456 (1.6)
산업 중소기업	47 (5.5)	3,801,340 (1.9)	40 (5.4)	4,429,166 (2.3)	34 (4.6)	2,328,140 (1.1)	40 (5.4)	3,402,789 (1.5)	29 (4.1)	1,880,684 (0.7)
수송 및 교통	27 (3.1)	14,320,349 (7.3)	17 (2.3)	4,660,986 (2.4)	18 (2.4)	8,863,576 (4.2)	18 (2.4)	5,220,090 (2.3)	15 (2.1)	7,274,019 (2.6)
국도 및 지역개발	16 (1.9)	4,953,370 (2.5)	16 (2.2)	4,472,912 (2.3)	16 (2.2)	4,481,380 (2.1)	17 (2.3)	4,908,775 (2.1)	18 (2.6)	6,193,590 (2.2)
총합계	859 (100.0)	196,453,812 (100.0)	739 (100.0)	191,205,198 (100.0)	737 (100.0)	210,577,452 (100.0)	737 (100.0)	229,200,024 (100.0)	705 (100.0)	277,324,576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5-2019 수원시 최종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1차추경예산 기준)

3) 수원시 지방보조금 자원별 현황

자체재원 사업 및 외부 보조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체 사업 대비 자체사업의 사업수 및 예산비중은 2018년도를 제외하고 모두 전년대비 감소추세에 있다. 먼저 매년 시 자체재원(순시비)만으로 지원된 사업은 총 사업개수의 약 60% 내외, 총 예산액의 약 20%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 자체재원 사업수는 2015년에 전체 사업수 859개 중 574개(66.8%)로 가장 높고, 2019년이 전체 사업 수 705개 중 390개(55.3%)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총 737개의 사업 중 자체사업이 446개(60.5%), 보조사업이 291개(39.5%)이며, 자체사업의 예산액은 44,146백만 원으로 2018년 총 예산액의 19.3%, 보조사업의 예산액은 185,054백만 원으로 총 예산액의 80.7%에 해당된다.

자체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 중에서는 지난 5년 간 모두 도비+시비 사업의 사업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규모 측면에서는 국비+도비+시비 사업이 전체 예산대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도비+시비 사업은 143개(전체 사업수의 19.4%), 예산액 54,905백만 원(총 예산의 24.0%), 국비+도비+시비 사업은 85개(전체 사업수의 11.5%), 예산액 73,452백만 원(총 예산의 32.0%)로 나타났다. 한편, 국비+시비 사업은 23개로 2018년 전체 사업수의 3.1%이며 예산규모는 11,514백만 원(총 예산의 18.2%)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시비를 포함하지 않은 국비 100%, 도비 100%, 국비+도비 사업은 34개로 2018년 전체 사업수의 4.7%를 차지하며, 예산규모는 43,554백만 원으로 2018년 총 지방보조금 예산 중 19.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17〉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자원별 사업수 및 예산규모 (2015-2019)

(단위: 개, 천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수	예산액								
자체재원	574 (66.8)	42,530,262 (21.6)	458 (62.0)	39,521,201 (20.7)	434 (58.9)	38,403,847 (18.2)	446 (60.5)	44,146,094 (19.3)	390 (55.3)	41,976,268 (15.1)
보조재원	285 (33.2)	153,923,550 (78.4)	281 (38.0)	151,683,997 (79.3)	303 (41.1)	172,173,605 (81.8)	291 (39.5)	185,053,930 (80.7)	315 (44.7)	235,348,308 (84.9)
국비 100%	20 (2.3)	1,273,487 (0.6)	14 (1.9)	1,322,609 (0.7)	13 (1.8)	841,070 (0.4)	10 (1.4)	879,211 (0.4)	16 (2.3)	2,006,004 (0.7)
도비 100%	7 (0.8)	41,151,863 (20.9)	18 (2.4)	41,977,002 (21.9)	28 (3.8)	41,701,649 (19.8)	17 (2.3)	41,712,374 (18.2)	11 (1.6)	41,838,905 (15.1)
국비+시비	30 (3.5)	5,834,224 (3.0)	34 (4.6)	5,737,408 (3.0)	29 (3.9)	9,390,280 (4.5)	23 (3.1)	11,513,506 (5.0)	31 (4.4)	7,431,725 (2.7)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수	예산액								
도비+사비	141 (16.4)	46,116,279 (23.5)	130 (17.6)	45,739,891 (23.9)	135 (18.3)	55,984,106 (26.6)	143 (19.4)	54,905,026 (24.0)	152 (21.5)	59,499,879 (21.5)
국비+도비	6 (0.7)	828,378 (0.4)	8 (1.1)	597,887 (0.3)	12 (1.6)	1,160,280 (0.5)	7 (1.0)	962,379 (0.4)	5 (0.7)	1,856,105 (0.7)
국비+도비+사비	76 (8.9)	55,506,979 (28.3)	72 (9.7)	54,102,200 (28.3)	80 (10.9)	61,845,864 (29.4)	85 (11.5)	73,451,991 (32.0)	94 (13.3)	120,962,702 (43.6)
균특보조	3 (0.4)	1,912,340 (1.0)	5 (0.7)	2,207,000 (1.2)	6 (0.8)	1,250,356 (0.6)	6 (0.8)	1,629,443 (0.7)	6 (0.9)	1,752,988 (0.6)
조정교부 100%	2 (0.2)	1,300,000 (0.7)	-	-	-	-	-	-	-	-
합계	859 (100.0)	196,453,812 (100.0)	739 (100.0)	191,205,198 (100.0)	737 (100.0)	210,577,452 (100.0)	737 (100.0)	229,200,024 (100.0)	705 (100.0)	277,324,576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5~2019 수원시 최종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1차추경예산 기준)

자체재원(순사비) 사업을 제외하고 국비나 도비 등의 보조금이 포함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보조금이 70%이상인 사업이 전체 예산액의 약 5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업수는 2015년에는 보조금비율이 10%이상 30%미만인 사업에서 가장 높은 규모를 보였으나, 보조금비율 30%이상 50%미만인 사업이 2018년 기준 78개(국도비 보조사업의 26.8%), 2019년 82개(국도비 보조사업의 26.0%)로 사업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종예산 기준으로 할 때, 다음으로 보조금비율 70%이상 90%미만 사업이 68개(국도비 보조사업의 23.4%), 10%이상 30%미만이 52개(국도비 보조사업의 17.9%), 50%이상 70%미만이 51개(국도비 보조사업의 17.5%)의 순서로 많은 사업수를 보이고 있다. 보조금비율이 10% 미만인 사업은 지난 5년 간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며 2018년 이후 7개 사업(국도비 보조사업의 2.4%)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예산규모 측면에서는 보조금비율이 70%이상 90%미만인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기준 55,220백만 원으로 보조사업 예산의 29.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예산규모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보조금비율이 90%이상인 사업이 43,641백만 원(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23.6%), 10%이상 30%미만 사업 33,706백만 원(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18.2%), 50%이상 70%미만 사업 33,288백만 원(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18.0%)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8〉 외부보조금비율에 따른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사업수 및 예산규모 (2015-2019)

(단위: 개, 천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수	예산액								
10%미만	20 (7.0)	8,554,782 (5.6)	16 (5.7)	14,180,476 (9.3)	11 (3.6)	11,009,003 (6.4)	7 (2.4)	9,181,013 (5.0)	7 (2.2)	3,675,522 (1.6)
10%이상 30%미만	77 (27.0)	28,705,729 (18.6)	56 (19.9)	22,373,989 (14.8)	62 (20.4)	32,056,110 (18.6)	52 (17.9)	33,705,808 (18.2)	58 (18.4)	44,229,292 (18.8)
30%이상 50%미만	47 (16.5)	9,043,105 (5.9)	58 (20.6)	7,659,014 (5.0)	55 (18.2)	7,046,150 (4.1)	78 (26.8)	10,018,195 (5.4)	82 (26.0)	8,424,389 (3.6)
50%이상 70%미만	38 (13.3)	26,012,416 (16.9)	49 (17.4)	23,176,308 (15.3)	55 (18.2)	30,199,472 (17.5)	51 (17.5)	33,288,357 (18.0)	60 (19.1)	53,103,498 (22.5)
70%이상 90%미만	66 (23.2)	36,966,790 (24.0)	60 (21.4)	40,312,712 (26.6)	63 (20.8)	48,020,811 (27.9)	68 (23.4)	55,219,593 (29.8)	69 (21.9)	78,791,881 (33.5)
90%이상	37 (13.0)	44,640,728 (29.0)	42 (15.0)	43,981,498 (29.0)	57 (18.8)	43,842,059 (25.5)	35 (12.0)	43,640,964 (23.6)	39 (12.4)	47,123,726 (20.0)
합계	285 (100.0)	153,923,550 (100.0)	281 (100.0)	151,683,997 (100.0)	303 (100.0)	172,173,605 (100.0)	291 (100.0)	185,053,930 (100.0)	315 (100.0)	235,348,308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5-2019 수원시 최종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1차추경예산 기준)

4) 수원시 지방보조금 사업규모별 현황

사업규모별 사업수를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예산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의 사업수가 매년 약 40% 수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액이 5억원 이상인 사업의 사업수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2018년을 기준으로, 예산액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이 311개로 2018년 총 사업 737개의 4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업이 153개(20.8%), 1천만 원 미만 사업 109개(14.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사업 102개(43.8%)의 순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2016년 이후 예산액 1천만 원 이하의 사업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5억 원 이상의 큰 규모의 사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3-19〉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전체사업) 예산규모별 사업수 및 사업비율 (2015-2019)

(단위: 개,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수	비율								
천만원 미만	188	21.9	125	16.9	123	16.7	109	14.8	106	15.0
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46	40.3	294	39.8	310	42.1	311	42.2	286	40.6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0	11.6	113	15.3	100	13.6	102	13.8	94	13.3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164	19.1	153	20.7	144	19.5	153	20.8	148	21.0
5억원 이상	61	7.1	54	7.3	60	8.1	62	8.4	71	10.1
합계	859	100.0	739	100.0	737	100.0	737	100.0	705	100.0

자료: 2015-2019 수원시 최종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1차추경예산 기준)

자체사업(순시비 사업)의 사업규모별 사업수 또한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의 사업개수가 가장 많고, 예산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의 사업개수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최종예산을 기준, 예산액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자체사업이 229개로 2018년 총 446개 자체사업 중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1천만 원 미만 사업 78개(17.5%),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업 70개(15.7%),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사업 57개(자체사업의 12.8%), 5억 원 이상 사업 12개(2.7%)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0〉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자체사업) 예산규모별 사업수 및 사업비율 (2015-2019)

(단위: 개,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수	비율								
천만원 미만	147	25.6	84	18.3	84	19.4	78	17.5	74	19.0
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257	44.8	210	45.9	213	49.1	229	51.3	192	49.2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1	12.4	76	16.6	63	14.5	57	12.8	48	12.3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88	15.3	76	16.6	63	14.5	70	15.7	63	16.2
5억원 이상	11	1.9	12	2.6	11	2.5	12	2.7	13	3.3
합계	574	100	458	100	434	100	446	100	390	100

자료: 2015-2019 수원시 최종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1차추경예산 기준)

순시비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편성액에 따른 예산과목별 사업수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예산과목에서 편성액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사업의 사업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2018년 기준 21개 사업 중 11개 사업(52.4%)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사업에 해당되어 타 예산과목과는 분포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21〉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예산과목별 편성액 규모별 사업수 현황 (2016-2018)

(단위: 개, %)

예산과목	편성액 규모	2016		2017		2018	
		사업수	사업수 비율	사업수	사업수 비율	사업수	사업수 비율
민간경상 사업보조	천만 원 미만	45	26.5	43	26.1	59	33.1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79	46.5	75	45.5	74	41.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4	14.1	22	13.3	21	11.8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0	11.8	22	13.3	21	11.8
	5억 원 이상	2	1.2	3	1.8	3	1.7
민간행사 사업보조	천만 원 미만	29	19.3	26	19.4	26	17.4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9	46.0	74	55.2	91	61.1
민간행사 사업보조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30	20.0	21	15.7	20	13.4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1	14.0	13	9.7	12	8.1
	5억 원 이상	1	0.7	0	-	0	-

예산과목	편성액 규모	2016		2017		2018	
		사업수	사업수 비율	사업수	사업수 비율	사업수	사업수 비율
사회복지 사업보조	천만 원 미만	2	7.1	6	23.1	4	17.4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14	50.0	11	42.3	10	43.5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9	32.1	5	19.2	5	21.7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	10.7	4	15.4	3	13.0
	5억 원 이상	0	-	0	-	1	4.3
민간자본 사업보조	천만 원 미만	7	15.2	6	14.0	10	22.2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0	43.5	20	46.5	17	37.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0	21.7	11	25.6	9	20.0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6	13.0	4	9.3	6	13.3
	5억 원 이상	3	6.5	2	4.7	3	6.7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천만 원 미만	3	8.8	2	5.7	1	2.8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1	61.8	23	65.7	26	72.2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	2.9	0	-	0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8	23.5	9	25.7	8	22.2
	5억 원 이상	1	2.9	1	2.9	1	2.8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천만 원 미만	1	5.0	0	-	0	-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2	10.0	2	9.5	3	14.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	10.0	3	14.3	3	14.3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1	55.0	11	52.4	11	52.4
	5억 원 이상	4	20.0	5	23.8	4	19.0

자료: 2016~2018 수원시 결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5) 수원시 지방보조금 부서별 현황

2018년 기준 부서별 지방보조사업의 현황을 살펴볼 때, 전체 48개부서 중 6개부서가 연간 40개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7개부서의 지방보조사업 수가 10개미만으로 나타났다. 총 737개 사업 중 보육아동과가 72개로 지방보조사업 수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체육진흥과(59개), 문화예술과(54개), 여성정책과(50개) 순으로 많은 지방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공원관리과, 도시디자인과, 문화유산관리과, 상생발전과, 소통협력과의 7개부서는 각 1개의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전체 사업 수 중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지방보조사업 예산액이 가장 많은 부서는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보육아동과로 전체 지방보조금 예산액 229,200백만 원 중 120,225백만 원으로 52.5% 수준을 담당하고 있다. 보육아동과 다음으로는 노인복지과 20,403백만 원(8.9%), 기후대기과 17,742백만 원(7.7%), 체육진흥과 12,585백만 원(5.5%) 순으로 지방보조사업 예산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방보조사업 예산액이 1억 원 미만인 부서는 상생발전과 외 6개 부서이며, 이 중 2018년 지방보조사업 예산액이 가장 적은 부서는 시민안전과(3천 4백만 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체사업(순시비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사업수 측면에서는 2018년 순시비 사업

446개 중 체육진흥과가 54개로 가장 많은 순시비 사업수를 보였으며, 자치행정과 43개, 문화예술과 42개의 순으로 사업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아동과 외 12개 부서는 순시비 사업이 10개 이상 40개 미만이며, 순시비 사업이 10개 미만인 부서는 총 32개 부서로 나타났다.

한편, 예산규모 측면에서는 순시비 사업 예산액이 가장 많은 부서는 체육진흥과(11,612백만 원)으로 총 순시비 사업 예산은 44,146백만 원 중 26.3%에 해당된다. 보육아동과의 순시비 사업 예산액이 9,426백만 원(21.4%)으로 체육진흥과 다음으로 높은 예산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동주택관리과 2,820백만 원(6.4%), 문화예술과 2,027백만 원(4.6%) 순으로 예산규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순시비 사업 예산액이 1억 원 미만인 부서는 상생발전과 외 8개 부서이며, 2018년 순시비 예산액이 가장 적은 부서는 앞서 총 예산액 규모와 마찬가지로 시민안전과(2천만 원)로 나타났다.

〈표 3-22〉 2018년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부서별 사업수 및 예산규모

(단위: 개, 천원)

부서명	전체 사업		자체 사업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보육아동과	72	120,225,290	19	9,425,792
체육진흥과	59	12,585,408	54	11,611,560
문화예술과	54	4,098,903	42	2,027,350
여성정책과	50	3,748,746	7	210,700
자치행정과	48	1,413,248	43	819,194
노인복지과	43	20,402,787	16	606,601
사회복지과	37	5,072,639	17	1,205,432
교육청소년과	34	2,528,831	18	695,370
생명산업과	34	1,890,347	11	348,138
장애인복지과	33	10,944,534	13	434,850
지역경제과	28	3,120,786	17	961,012
농업기술과	22	489,500	16	411,500
일자리정책관	22	3,734,578	8	1,059,767
기후대기과	20	17,741,690	8	575,000
기업지원과	19	1,649,045	16	1,405,140
권선구행정지원과	15	244,025	15	244,025
팔달구행정지원과	14	211,640	14	211,640
대중교통과	13	4,680,090	9	536,750
영통구행정지원과	13	265,165	13	265,165
장안구행정지원과	13	227,270	13	227,270
환경정책과	12	372,042	8	231,635

부서명	전체 사업		자체 사업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생태공원과	8	262,500	8	262,500
장안구보건소	8	2,496,657	1	50,000
복지허브추진단	7	740,236	7	740,236
권선구가정복지과	5	613,300	5	613,300
영통구가정복지과	5	600,680	5	600,680
장안구가정복지과	5	412,400	5	412,400
팔달구가정복지과	5	259,710	5	259,710
녹지경관과	4	270,915	3	259,715
권선구사회복지과	3	461,152	3	461,152
도서관정책과	3	79,000	1	30,000
생태교통과	3	435,000	1	35,000
영통구사회복지과	3	314,170	3	314,170
감사관	2	35,000	2	35,000
도시교통과	2	105,000	2	105,000
시민안전과	2	34,400	1	20,000
예산재정과	2	300,000	2	300,000
자원순환과	2	231,000	2	231,000
장안구사회복지과	2	390,000	2	390,000
청년정책관	2	120,000	2	120,000
팔달구사회복지과	2	345,780	2	345,780
건축과	1	1,300,000	1	1,300,000
공동주택관리과	1	2,820,000	1	2,820,000
공원관리과	1	44,560	1	44,560
도시디자인과	1	90,000	1	90,000
문화유산관리과	1	660,000	1	660,000
상생발전과	1	93,000	1	93,000
소통협력과	1	39,000	1	39,000
계	737	229,200,024	446	44,146,094

자료: 2018 수원시 최종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6) 수원시 지방보조금 신규·계속사업 현황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지방보조사업 중 계속사업 사업수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반면, 2016년 이후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조사업 중 신규사업의 사업수 및 예산규모는 전체 지방보조사업 중 10%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보조사업의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3〉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신규·계속사업 현황 (2015-2019)

(단위: 개, 천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수	예산액								
신규	82	11,555,027	66	11,090,054	73	8,980,440	83	10,209,058	54	7,304,092
	(9.5)	(5.9)	(8.9)	(5.8)	(9.9)	(4.3)	(11.3)	(4.5)	(7.7)	(2.6)
계속	777	184,898,785	673	180,115,144	664	201,597,012	654	218,990,966	651	270,020,484
	(90.5)	(94.1)	(91.1)	(94.2)	(90.1)	(95.7)	(88.7)	(95.5)	(92.3)	(97.4)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5-2019 수원시 최종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1차추경예산 기준)

이를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2016년 민간자본사업보조(24개, 2016년 신규사업 중 36.4%), 2017년 사회복지사업보조(23개, 2017년 신규사업 중 31.5%)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8년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26개 사업(신규사업 중 31.3%)으로 2015년에 이어 다시금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규모는 2016년까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가장 높은 금액(7.687백만 원, 2016년 신규사업 예산 중 69.3%)을 보이다가 2017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2,902백만 원, 2017년 신규사업 예산 중 32.3%), 2018년 사회복지사업보조(3,727백만 원, 신규사업 예산 중 36.5%)의 예산이 증가하였다.

계속사업의 경우, 지난 5년 간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사업수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예산규모는 사회복지사업보조의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규모를 차지하였다. 2018년 최종예산 기준,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수가 233개(계속사업 중 35.6%), 사회복지사업보조의 예산액이 87,851백만 원(계속사업 중 40.1%)으로 파악되었다.

〈표 3-24〉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예산과목별 신규·계속사업 현황 (2015-2019)

(단위: 개, 천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신규사업	82	11,555,027	66	11,090,054	73	8,980,440	83	10,209,058	54	7,304,09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23	795,084	17	1,023,947	9	291,570	26	3,346,611	21	2,067,273
	(28.0)	(6.9)	(25.8)	(9.2)	(12.3)	(3.2)	(31.3)	(32.8)	(38.9)	(28.3)
민간행사 사업보조	21	1,757,180	16	1,223,000	14	920,500	18	904,800	10	428,550
	(25.6)	(15.2)	(24.2)	(11.0)	(19.2)	(10.3)	(21.7)	(8.9)	(18.5)	(5.9)
사회복지 사업보조	15	3,247,620	4	205,042	23	2,282,488	12	3,726,554	8	1,676,058
	(18.3)	(28.1)	(6.1)	(1.8)	(31.5)	(25.4)	(14.5)	(36.5)	(14.8)	(22.9)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수	예산액								
민간자본 사업보조	16 (19.5)	4,450,483 (38.5)	24 (36.4)	7,686,823 (69.3)	15 (20.5)	2,349,612 (26.2)	19 (22.9)	1,530,251 (15.0)	10 (18.5)	2,792,090 (38.2)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	-	1 (1.5)	8,000 (0.1)	1 (1.4)	234,440 (2.6)	1 (1.2)	22,400 (0.2)	1 (1.9)	35,000 (0.5)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7 (8.5)	1,304,660 (11.3)	4 (6.1)	943,242 (8.5)	11 (15.1)	2,901,830 (32.3)	7 (8.4)	678,442 (6.6)	4 (7.4)	305,121 (4.2)
계속사업	777 (100.0)	184,898,785 (100.0)	673 (100.0)	180,115,144 (100.0)	664 (100.0)	201,597,012 (100.0)	654 (100.0)	218,990,966 (100.0)	651 (100.0)	270,020,484 (100.0)
민간경상 사업보조	306 (39.4)	24,153,366 (13.1)	241 (35.8)	19,806,436 (11.0)	248 (37.3)	20,744,388 (10.3)	233 (35.6)	22,367,408 (10.2)	240 (36.9)	28,945,095 (10.7)
민간행사 사업보조	164 (21.1)	8,238,337 (4.5)	142 (21.1)	7,823,581 (4.3)	127 (19.1)	5,820,503 (2.9)	134 (20.5)	6,734,643 (3.1)	110 (16.9)	5,065,100 (1.9)
사회복지 사업보조	102 (13.1)	78,201,230 (42.3)	104 (15.5)	81,337,881 (45.2)	101 (15.2)	85,825,040 (42.6)	101 (15.4)	87,850,671 (40.1)	102 (15.7)	95,125,584 (35.2)
민간자본 사업보조	81 (10.4)	26,248,081 (14.2)	68 (10.1)	16,076,832 (8.9)	69 (10.4)	26,032,998 (12.9)	65 (9.9)	26,666,234 (12.2)	70 (10.8)	55,108,006 (20.4)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41 (5.3)	4,081,177 (2.2)	36 (5.3)	4,766,243 (2.6)	36 (5.4)	5,248,044 (2.6)	36 (5.5)	5,667,635 (2.6)	37 (5.7)	6,334,400 (2.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83 (10.7)	43,976,594 (23.8)	82 (12.2)	50,304,171 (27.9)	83 (12.5)	57,926,039 (28.7)	85 (13.0)	69,704,375 (31.8)	92 (14.1)	79,442,299 (29.4)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5-2019 수원시 최종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1차추경예산 기준)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신규사업과 계속사업 모두 대체로 사회복지분야와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 많이 나타났다.

먼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8년 기준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신규사업은 28개(신규사업 중 33.7%)이며, 다음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17개, 신규사업 중 20.5%), 농림해양수산분야(13개, 신규사업 중 16.9%) 순으로 높은 사업비율을 보이고 있다. 예산규모의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분야가 마찬가지로 5,090백만 원(신규사업 예산 중 4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분야 1,398백만 원(신규사업 예산 중 13.7%), 문화 및 관광분야 1,133백만 원(신규사업 예산 중 11.1%)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수송 및 교통분야의 경우 신규사업이 2개에 불과하나 예산액은 905백만 원으로 사업수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예산규모를 보였다.

계속사업의 경우, 신규사업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이 사업수 및 예산규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예산규모는 2018년까지 매년 계속사업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수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이 300개(계속사업 중 45.9%), 문화 및 관광분야 107개(계속사업 중 16.4%), 일반공공행정분야 100개(계속사업 중 15.3%)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예산규모 측면에서는 사회복지분야 167,239백만 원(계속사업 예산 중 76.4%), 환경보호분야(계속사업 예산 중 7.8%), 문화 및 관광분야(계속사업 예산 중 7.5%) 순으로 나타나 사실상 사회복지 분야 이외의 사업예산비중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5〉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분야별 신규·계속사업 현황 (2015-2019)

(단위: 개, 천원,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신규사업	82 (100.0)	11,555,027 (100.0)	66 (100.0)	11,090,054 (100.0)	73 (100.0)	8,990,440 (100.0)	83 (100.0)	10,209,058 (100.0)	54 (100.0)	7,304,092 (100.0)
일반 공공행정	1 (1.2)	50,000 (0.4)	6 (9.1)	178,700 (1.6)	1 (1.4)	94,700 (1.1)	- (0.0)	- (0.0)	5 (9.3)	145,430 (2.0)
공공질서 및 안전	- (0.0)	- (0.0)	- (0.0)	- (0.0)	1 (1.4)	20,000 (0.2)	- (0.0)	- (0.0)	- (0.0)	- (0.0)
교육	4 (4.9)	246,957 (2.1)	5 (7.6)	121,025 (1.1)	1 (1.4)	16,000 (0.2)	- (0.0)	- (0.0)	- (0.0)	- (0.0)
문화 및 관광	24 (29.3)	3,081,346 (26.7)	18 (27.3)	3,850,000 (34.7)	14 (19.2)	2,161,290 (24.1)	17 (20.5)	1,132,580 (11.1)	11 (20.4)	887,330 (12.1)
환경보호	5 (6.1)	608,000 (5.3)	1 (1.5)	41,083 (0.4)	2 (2.7)	80,000 (0.9)	5 (6.0)	537,500 (5.3)	2 (3.7)	912,500 (12.5)
사회복지	36 (43.9)	7,182,119 (62.2)	16 (24.2)	1,630,406 (14.7)	47 (64.4)	6,086,570 (67.8)	28 (33.7)	5,089,730 (49.9)	24 (44.4)	2,154,822 (29.5)
보건	4 (4.9)	233,800 (2.0)	1 (1.5)	800,000 (7.2)	2 (2.7)	133,080 (1.5)	2 (2.4)	104,430 (1.0)	1 (1.9)	71,500 (1.0)
농림 해양수산	5 (6.1)	73,805 (0.6)	9 (13.6)	209,080 (1.9)	2 (2.7)	88,800 (1.0)	14 (16.9)	909,418 (8.9)	9 (16.7)	602,510 (8.2)
산업 중소기업	- (0.0)	- (0.0)	5 (7.6)	1,404,000 (12.7)	3 (4.1)	300,000 (3.3)	13 (15.7)	1,398,000 (13.7)	- (0.0)	- (0.0)
수송 및 교통	1 (1.2)	16,000 (0.1)	4 (6.1)	2,805,760 (25.3)	- (0.0)	- (0.0)	2 (2.4)	905,400 (8.9)	1 (1.9)	1,480,000 (20.3)
국토 및 지역개발	2 (2.4)	63,000 (0.5)	1 (1.5)	50,000 (0.5)	- (0.0)	- (0.0)	2 (2.4)	132,000 (1.3)	1 (1.9)	1,050,000 (14.4)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사업수	예산액								
계속사업	777 (100.0)	184,898,785 (100.0)	673 (100.0)	180,115,144 (100.0)	664 (100.0)	201,597,012 (100.0)	654 (100.0)	218,980,966 (100.0)	651 (100.0)	270,020,484 (100.0)
일반 공공행정	119 (15.3)	2,511,523 (1.4)	97 (14.4)	2,207,288 (1.2)	99 (14.9)	2,330,341 (1.2)	100 (15.3)	2,535,448 (1.2)	89 (13.7)	2,246,389 (0.8)
공공질서 및 안전	5 (0.6)	63,085 (0.0)	2 (0.3)	7,400 (0.0)	1 (0.2)	20,000 (0.0)	2 (0.3)	34,400 (0.0)	- (0.0)	- (0.0)
교육	14 (1.8)	1,074,300 (0.6)	9 (1.3)	420,200 (0.2)	17 (2.6)	625,935 (0.3)	15 (2.3)	681,567 (0.3)	14 (2.2)	648,946 (0.2)
문화 및 관광	133 (17.1)	14,147,696 (7.7)	114 (16.9)	15,547,809 (8.6)	107 (16.1)	15,170,659 (7.5)	107 (16.4)	16,451,631 (7.5)	105 (16.1)	17,201,303 (6.4)
환경보호	28 (3.6)	7,956,534 (4.3)	29 (4.3)	8,638,998 (4.8)	25 (3.8)	12,771,762 (6.3)	23 (3.5)	17,079,232 (7.8)	24 (3.7)	43,996,535 (16.3)
사회복지	331 (42.6)	132,615,786 (71.7)	306 (45.5)	140,632,046 (78.1)	301 (45.3)	151,820,916 (75.3)	300 (45.9)	167,238,578 (76.4)	300 (46.1)	186,758,890 (69.2)
보건	16 (2.1)	2,476,214 (1.3)	10 (1.5)	2,280,768 (1.3)	9 (1.4)	2,376,940 (1.2)	6 (0.9)	2,392,227 (1.1)	10 (1.5)	2,695,182 (1.0)
농림 해양수산	44 (5.7)	1,057,588 (0.6)	43 (6.4)	1,077,331 (0.6)	40 (6.0)	1,107,363 (0.5)	43 (6.6)	1,481,629 (0.7)	49 (7.5)	3,654,946 (1.4)
산업 중소기업	47 (6.0)	3,801,340 (2.1)	35 (5.2)	3,025,166 (1.7)	31 (4.7)	2,028,140 (1.0)	27 (4.1)	2,004,789 (0.9)	29 (4.5)	1,880,684 (0.7)
수송 및 교통	26 (3.3)	14,304,349 (7.7)	13 (1.9)	1,855,226 (1.0)	18 (2.7)	8,863,576 (4.4)	16 (2.4)	4,314,690 (2.0)	14 (2.2)	5,794,019 (2.1)
국도 및 지역개발	14 (1.8)	4,890,370 (2.6)	15 (2.2)	4,422,912 (2.5)	16 (2.4)	4,481,380 (2.2)	15 (2.3)	4,776,775 (2.2)	17 (2.6)	5,143,590 (1.9)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5-2019 수원시 최종예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1차추경예산 기준)

2.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의 집행현황

2018년 성과평가가 이루어진 순시비 지방보조사업 452개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집행잔액은 평균 5,185.4천 원으로 나타난다. 한편, 2017년 424개 사업의 집행잔액 평균은 6,915.2천 원, 2016년 448개 사업의 집행잔액 평균은 4,043.9천원으로 파악되었다.

이 중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집행잔액 평균이 가장 적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의 집행잔액 평균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1개 사업의 집행잔액 평균이 48,630.3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 149개 사업의 집행잔액 평균이 879.6천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표 3-26〉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 현황 (2016-2018)

(단위: 개, 천원)

구분	2016		2017		2018	
	사업수	집행잔액 평균	사업수	집행잔액 평균	사업수	집행잔액 평균
계	448	4,043.9	424	6,915.2	452	5,185.4
민간경상사업보조	170	3,193.3	165	4,517.0	178	3,184.4
민간행사사업보조	150	1,709.0	134	1,599.2	149	879.6
사회복지사업보조	28	3,492.3	26	9,799.7	23	9,227.2
민간자본사업보조	46	10,581.6	43	9,600.7	45	7,239.7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4	4,613.2	35	3,340.4	36	2,407.2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0	13,553.3	21	56,566.8	21	48,630.3

자료: 2016~2018 수원시 결산(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3.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등급은 주로 ‘우수’와 ‘보통’인 사업이 전체 사업수 중 60%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년 간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의 경우에는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수가 2016년 및 2017년과 비교해서 5배 이상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반면, ‘보통’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수와 사업비중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018년 기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등급은 ‘우수’가 144개 사업(31.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 141개 사업(31.2%), ‘매우우수’ 126개 사업(27.9%), ‘미흡’은 25개 사업(5.5%), ‘매우미흡’은 16개 사업(3.5%)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산삭감 및 사업중단 기준으로 나누어 볼 때, 2018년에는 ‘우수’ 등급 이상인 사업이 270개(59.7%)이었으며, ‘보통’ 이하 등급인 사업은 182개(40.3%)로 나타났다.

〈표 3-27〉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연도별 성과평가 결과 (2016-2018)

(단위: 개, %)

성과평가등급	2016		2017		2018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매우우수	3	0.7	24	5.7	126	27.9
우수	174	38.9	203	47.8	144	31.9
보통	217	48.4	168	39.6	141	31.2
미흡	48	10.7	22	5.2	25	5.5
매우미흡	6	1.3	7	1.7	16	3.5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2018년 기준,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하의 등급의 비중이 가장 많은 항목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보통’ 등급 이하가 72개(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수 중 48.3%)이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77개(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수 중 43.3%)로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다. 한편, ‘보통’ 이하 등급이 가장 적은 항목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로 3개 사업(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업수 중 14.3%)이 ‘보통’ 등급 이하에 해당되며, 다음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8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업수 중 22.2%), 민간자본사업보조(13개,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28.9%) 순으로 비중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매우우수’ 59개(33.1%), ‘우수’ 42개(23.6%), ‘보통’ 64개(36.0%), ‘미흡’ 8개(4.5%), ‘매우미흡’ 5개(2.8%) 사업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매우우수’ 38개(25.5%), ‘우수’ 39개(26.2%), ‘보통’ 53개(35.5%), ‘미흡’ 11개(7.4%), ‘매우미흡’ 8개(5.4%)사업으로 파악되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매우우수’와 ‘우수’가 14개(60.9%), ‘보통’과 ‘미흡’이 9개(39.1%),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매우우수’와 ‘우수’가 32개(71.1%), ‘보통’과 ‘미흡’이 10개(22.2%), ‘매우미흡’이 3개(6.7%)로 나타났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매우우수’와 ‘우수’가 28개(77.7%), ‘보통’ 8개(22.3%),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매우우수’와 ‘우수’가 18개(85.7%), ‘보통’ 2개(9.5%), ‘미흡’ 1개(4.8%)이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지난 3년 간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8〉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연도별 예산과목별 성과평가 결과 (2016-2018)

(단위: 개, %)

예산과목	2016					2017					2018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민간경상사업보조	3 (1.8)	60 (35.2)	83 (48.8)	20 (11.8)	4 (2.4)	11 (6.7)	80 (48.4)	62 (37.6)	9 (5.5)	3 (1.8)	59 (33.1)	42 (23.6)	64 (36.0)	8 (4.5)	5 (2.8)
민간행사사업보조	-	48 (32.0)	77 (51.4)	23 (15.3)	2 (1.3)	8 (6.0)	55 (41.1)	61 (45.5)	7 (5.2)	3 (2.2)	38 (25.5)	39 (26.2)	53 (35.5)	11 (7.4)	8 (5.4)
사회복지사업보조	-	10 (35.7)	17 (60.7)	1 (3.6)	-	-	9 (34.6)	13 (50.0)	4 (15.4)	-	2 (8.7)	12 (52.2)	6 (26.1)	3 (13.0)	-
민간자본사업보조	-	23 (50.0)	19 (41.3)	4 (8.7)	-	4 (9.3)	25 (58.2)	12 (27.9)	1 (2.3)	1 (2.3)	18 (40.0)	14 (31.1)	8 (17.8)	2 (4.4)	3 (6.7)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18 (52.9)	16 (47.1)	-	-	1 (2.9)	17 (48.5)	16 (45.7)	1 (2.9)	-	7 (19.4)	21 (58.3)	8 (22.3)	-	-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	15 (75.0)	5 (25.0)	-	-	-	17 (81.0)	4 (19.0)	-	-	2 (9.5)	16 (76.2)	2 (9.5)	1 (4.8)	-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4. 유사자치단체와의 비교

수원시의 경기도내 유사자치단체 간 통합재정 예산총계를 살펴보면, 수원시 지방보조금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8년 이후 도내 유사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규모를 보인다. 세출예산 대비 지방보조금비율은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2년 간 고양시 다음으로 높은 지방보조금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3-29〉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예산규모 (2015-2019)

(단위: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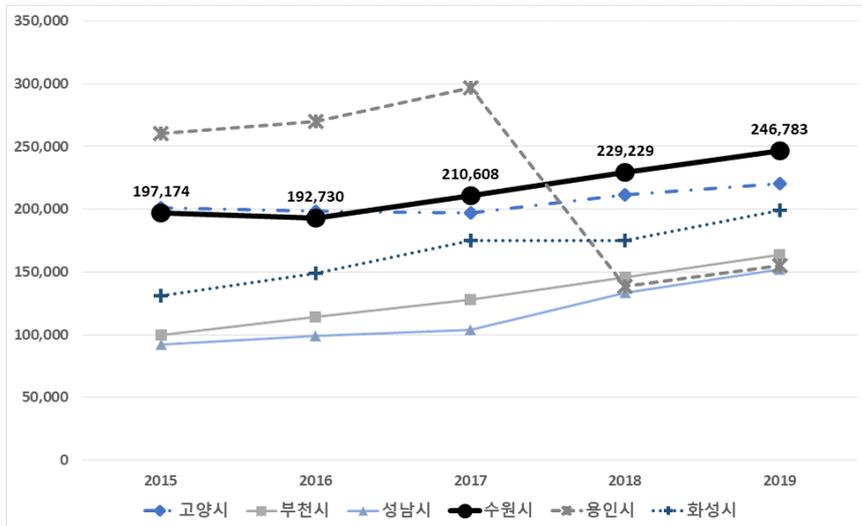
단체명	2015		2016		2017		2018		2019	
	지방 보조금 총액	지방 보조금 비율	지방 보조금 총액	지방 보조금 비율	지방 보조금 총액	지방 보조금 비율	지방 보조금 총액	지방 보조금 비율	지방보 조금 총액	지방 보조금 비율
수원시	197,174	8.2	192,730	7.7	210,608	7.2	229,229	7.6	246,783	8.9
고양시	201,125	10.8	198,315	10.6	197,043	9.4	211,588	9.0	220,400	9.6
부천시	99,900	6.2	113,984	5.8	127,717	7.2	145,910	7.1	163,874	8.6
성남시	92,334	3.7	99,184	3.6	104,029	3.4	133,319	4.0	152,067	5.0
용인시	260,548	12.3	269,765	11.7	296,376	12.9	138,518	5.4	155,282	6.9
화성시	131,040	6.6	148,776	6.5	175,037	7.6	175,148	6.3	199,327	7.9

주1: 지방보조금 총액=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

주2: 지방보조금 비율=(지방보조금총액/세출예산액)*100

자료: 2015-2019 통합지방재정공시(최종예산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당초예산 기준)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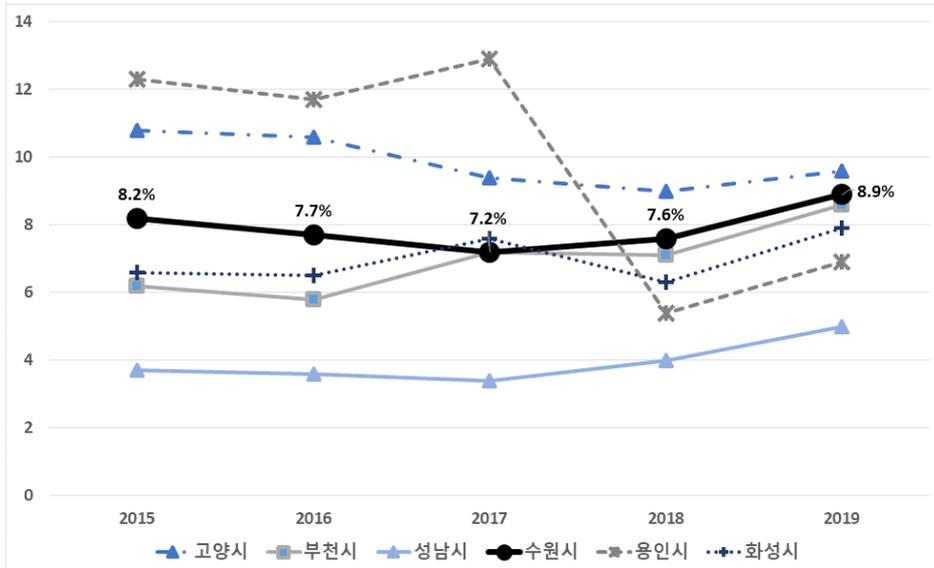


주: 지방보조금 총액=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

자료: 2015-2019 통합지방재정공시(최종예산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그림 3-2〉 2019년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예산규모 추이 (2015-2019)

(단위: %)



주1: 지방보조금 총액=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

주2: 지방보조금 비율=(지방보조금총액/세출예산액)*100

자료: 2015-2019 통합지방재정공시(최종예산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그림 3-3〉 2019년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세출예산 대비 지방보조금비율 추이 (2015-2019)

예산과목별 규모를 살펴보면, 수원시는 사회복지사업보조 총액이 도내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하여 2배 이상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그림 3-8), 그 추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화성시보다 낮은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성남시, 용인시, 고양시와 더불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그림 3-4). 이와 반대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2016년까지 유사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17년 이후 화성시와 부천시와 비교하여 낮은 예산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3-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의 경우, 수원시를 비롯한 유사자치단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성남시는 2018년 이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그림 3-6), 용인시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의 경우 가장 높은 규모를 보이다가 2018년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그림 3-7).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지난 5년 간 화성시와 부천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수원시는 250억 원에서 3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림 3-9).

〈표 3-30〉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2015-2019)

(단위: 백만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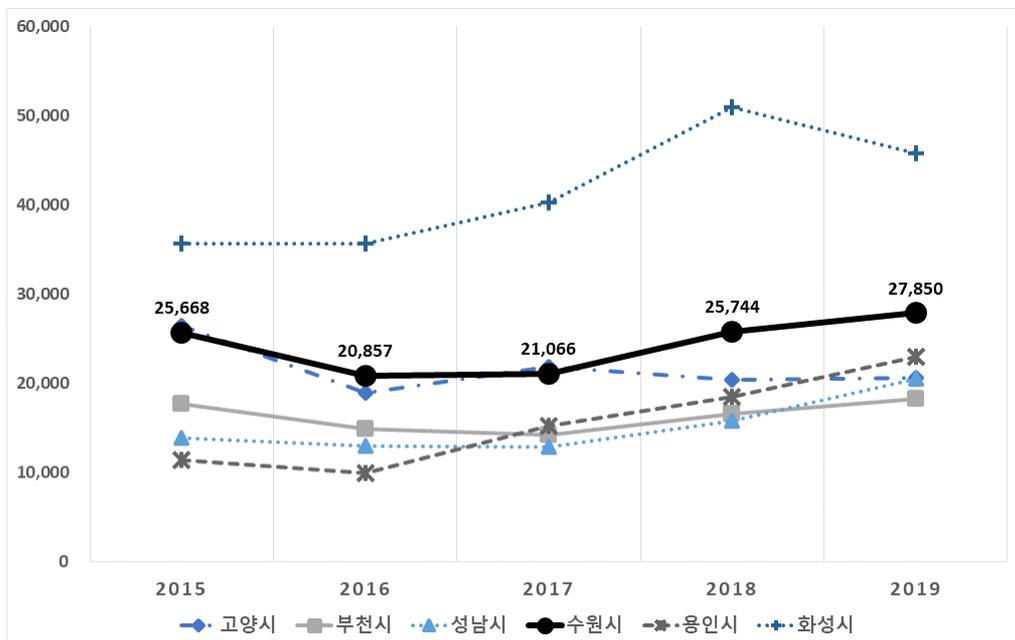
연도	예산과목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2015	민간경상사업보조	25,668 (13.0)	26,399 (13.1)	17,709 (17.7)	13,844 (15.0)	11,367 (4.4)	35,660 (27.2)
	민간행사사업보조	9,996 (5.1)	7,620 (3.8)	6,029 (6.0)	4,659 (5.0)	1,959 (0.8)	7,549 (5.8)
	사회복지사업보조	81,449 (41.3)	50,336 (25.0)	11,401 (11.4)	29,095 (31.5)	37,728 (14.5)	26,174 (20.0)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4,081 (2.1)	1,591 (0.8)	3,386 (3.4)	3,634 (3.9)	1,899 (0.7)	2,741 (2.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45,281 (23.0)	92,261 (45.9)	51,202 (51.3)	26,833 (29.1)	183,229 (70.3)	34,474 (26.3)
	민간자본사업보조	30,699 (15.6)	22,918 (11.4)	10,173 (10.2)	14,269 (15.5)	24,366 (9.4)	24,442 (18.7)
	2016	민간경상사업보조	20,857 (10.8)	18,969 (9.6)	14,860 (13.0)	13,014 (13.1)	9,895 (3.7)
민간행사사업보조		9,047 (4.7)	8,176 (4.1)	7,781 (6.8)	4,910 (5.0)	2,389 (0.9)	7,432 (5.0)
사회복지사업보조		81,543 (42.3)	57,276 (28.9)	25,327 (22.2)	30,880 (31.1)	17,699 (6.6)	29,616 (19.9)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4,774 (2.5)	4,391 (2.2)	5,527 (4.8)	4,590 (4.6)	2,266 (0.8)	3,086 (2.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51,247 (26.6)	90,930 (45.9)	50,759 (44.5)	27,025 (27.2)	208,828 (77.4)	39,676 (26.7)
민간자본사업보조		25,262 (13.1)	18,573 (9.4)	9,730 (8.5)	18,765 (18.9)	28,688 (10.6)	33,314 (22.4)
2017		민간경상사업보조	21,066 (10.0)	21,797 (11.1)	14,219 (11.1)	12,867 (12.4)	15,228 (5.1)
	민간행사사업보조	6,741 (3.2)	7,743 (3.9)	7,254 (5.7)	4,567 (4.4)	1,988 (0.7)	11,499 (6.6)
	사회복지사업보조	88,108 (41.8)	41,279 (20.9)	27,285 (21.4)	32,942 (31.7)	20,792 (7.0)	36,214 (20.7)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5,482 (2.6)	5,352 (2.7)	7,673 (6.0)	4,889 (4.7)	2,640 (0.9)	3,376 (1.9)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60,828 (28.9)	95,480 (48.5)	58,503 (45.8)	30,261 (29.1)	212,731 (71.8)	47,150 (26.9)
	민간자본사업보조	28,383 (13.5)	25,392 (12.9)	12,783 (10.0)	18,503 (17.8)	42,997 (14.5)	36,533 (20.9)
	2018	민간경상사업보조	25,744 (11.2)	20,401 (9.6)	16,605 (11.4)	15,822 (14.2)	18,445 (13.3)
민간행사사업보조		7,639 (3.3)	7,903 (3.7)	6,860 (4.7)	7,318 (6.6)	2,555 (1.8)	9,409 (5.4)
사회복지사업보조		91,577 (40.0)	44,332 (21.0)	31,726 (21.7)	36,296 (32.6)	25,325 (18.3)	15,808 (9.0)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5,690 (2.5)	5,604 (2.6)	8,230 (5.6)	15,356 (13.8)	3,239 (2.3)	3,639 (2.1)

연도	예산과목	수원시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70,383 (30.7)	104,748 (49.5)	67,910 (46.5)	34,523 (31.0)	47,773 (34.5)	53,121 (30.3)
	민간자본사업보조	28,196 (12.3)	28,600 (13.5)	14,579 (10.0)	2,004 (1.8)	41,181 (29.7)	42,225 (24.1)
2019	민간경상사업보조	27,850 (11.3)	20,639 (9.4)	18,204 (11.1)	20,453 (13.4)	22,918 (14.8)	45,735 (22.9)
	민간행사사업보조	5,575 (2.3)	5,198 (2.4)	7,180 (4.4)	5,393 (3.5)	3,862 (2.5)	7,293 (3.7)
	사회복지사업보조	95,439 (38.7)	48,388 (22.0)	41,769 (25.5)	48,326 (31.8)	28,833 (18.6)	20,047 (10.1)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6,293 (2.6)	6,279 (2.8)	8,408 (5.1)	16,144 (10.6)	3,645 (2.3)	4,096 (2.1)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80,202 (32.5)	110,400 (50.1)	70,421 (43.0)	36,959 (24.3)	55,908 (36.0)	61,313 (30.8)
	민간자본사업보조	31,424 (12.7)	29,496 (13.4)	17,892 (10.9)	24,792 (16.3)	40,116 (25.8)	60,843 (30.5)

주1: 지방보조금 총액=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행사사업보조+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회복지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

주2: 지방보조금 비율=(지방보조금총액/세출예산액)*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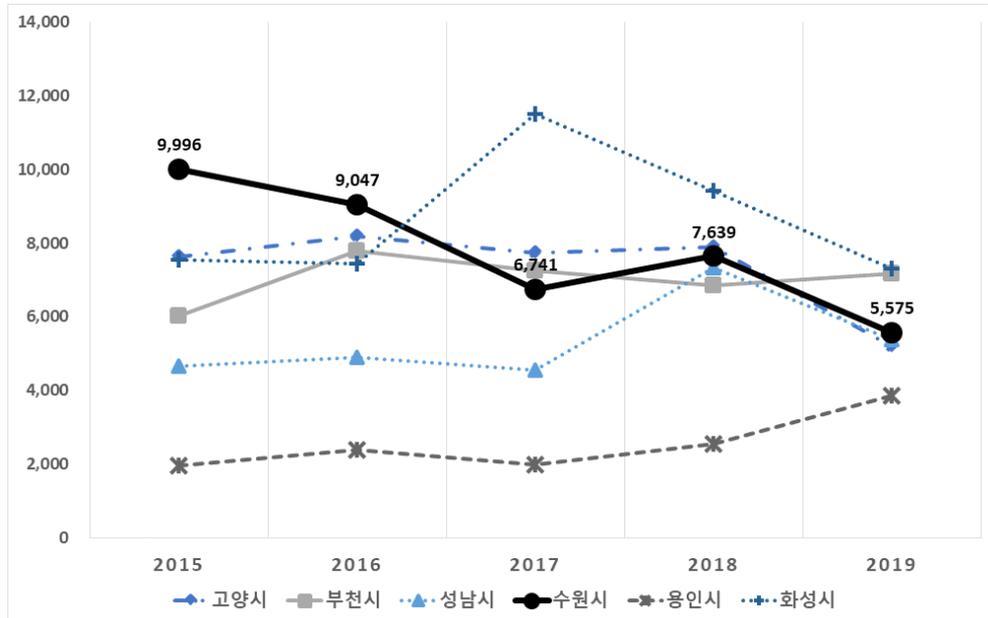
자료: 2015-2019 통합지방재정공시(최종예산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당초예산 기준)
(단위: 백만 원)



자료: 2015-2019 통합지방재정공시(최종예산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그림 3-4〉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규모 추이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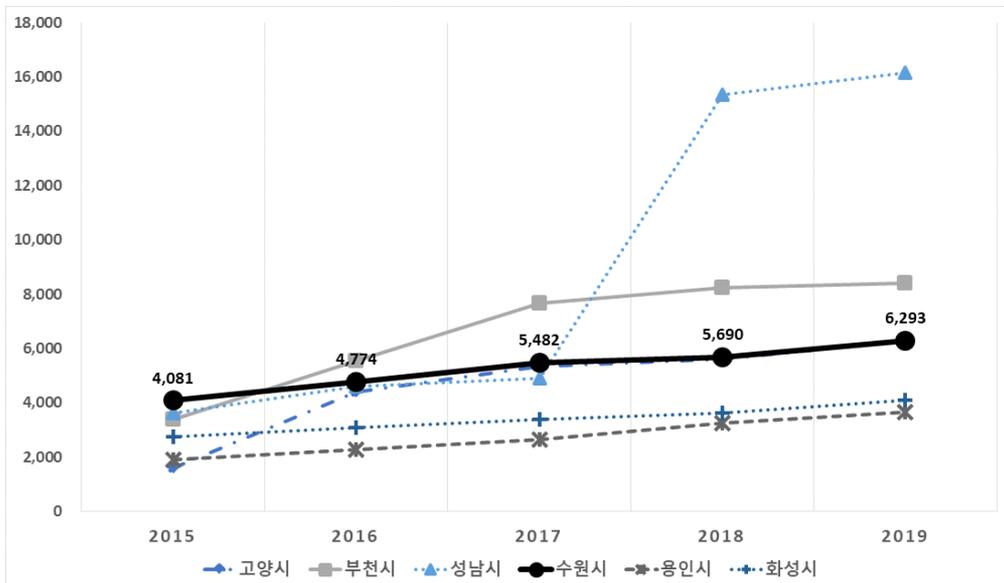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자료: 2015-2019 통합지방재정공시(최종예산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그림 3-5〉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규모 추이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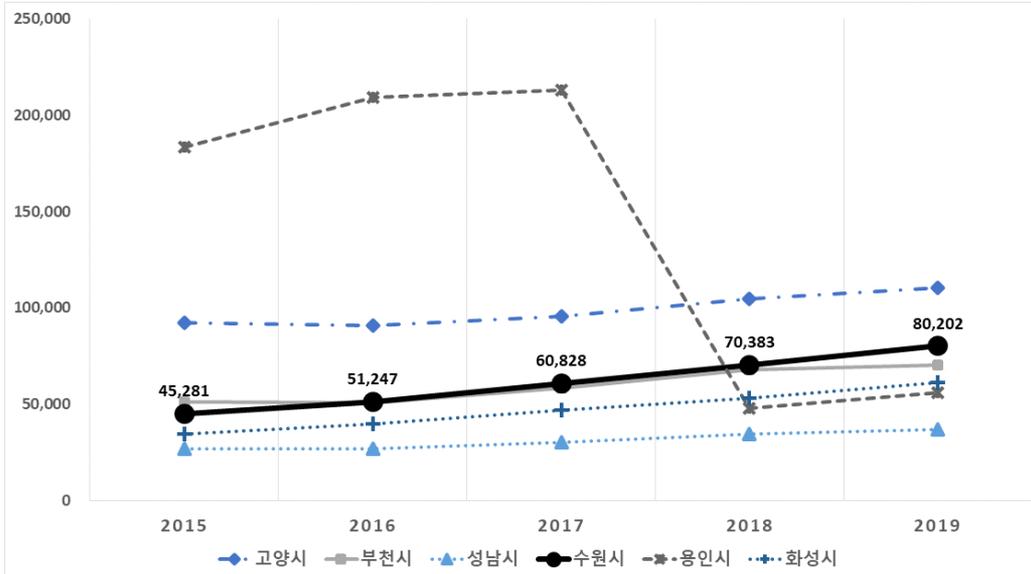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자료: 2015-2019 통합지방재정공시(최종예산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그림 3-6〉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예산규모 추이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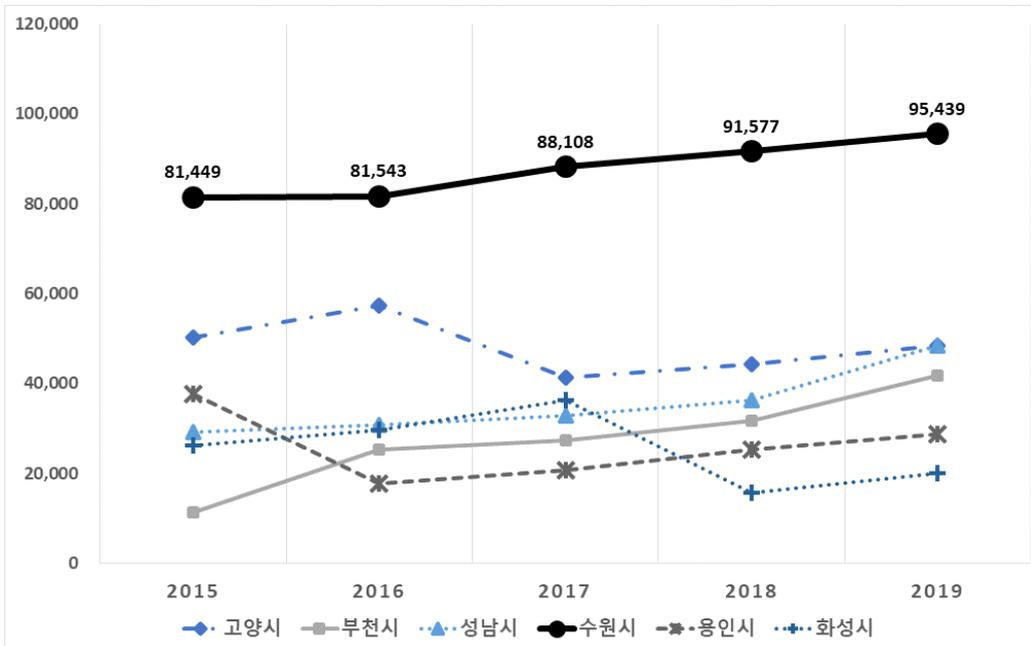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자료: 2015-2019 통합지방재정공시(최종예산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그림 3-7〉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예산규모 추이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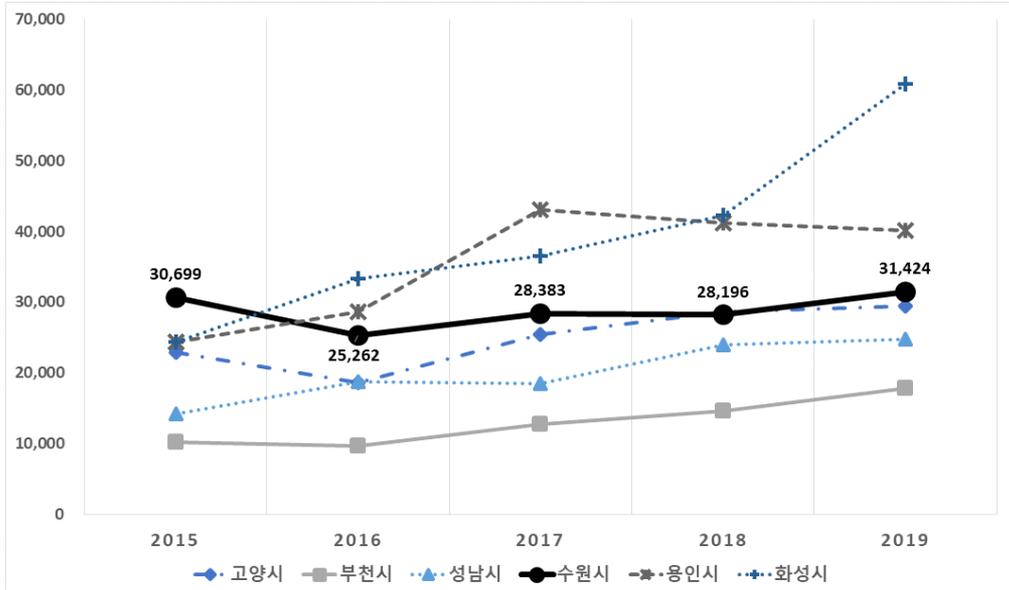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자료: 2015-2019 통합지방재정공시(최종예산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그림 3-8〉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규모 추이 (2015-2019)

(단위: 백만 원)



자료: 2015-2019 통합지방재정공시(최종예산총계)(일반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단, 2019년 당초예산 기준)

〈그림 3-9〉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규모 추이 (2015-2019)

2019년 경기도 내 유사자치단체의 회계구분별 지방보조금의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수원시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기타특별회계는 고양시가 2,734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수원시와 고양시가 3천만 원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지방보조금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3-31〉 2019년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회계구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단체명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수원시	246,640	113	30
성남시	150,854	1,211	0
고양시	217,636	2,734	30
용인시	155,235	47	0
부천시	163,288	585	0
화성시	199,033	294	0

자료: 2019 통합지방재정공시(당초예산)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수원시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분포되어 있다. 고양시의 경우, 기타 특별회계의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3억 4천 7백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1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남시와 부천시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각각 1천 5백만 원, 2천만 원 수준의 지방보조금이 편성되었다. 한편,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보조금이 편성되어있는 수원시, 고양시 모두에서 민간경상 사업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32〉 2019년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회계구분별 예산과목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과목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부천시	화성시
일반회계	민간경상사업보조	27,772	19,266	19,217	22,877	17,638	45,71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6,293	16,144	5,932	3,645	8,408	4,096
	민간행사사업보조	5,575	5,378	5,198	3,862	7,160	7,293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80,202	36,959	110,400	55,908	70,421	61,313
	사회복지사업보조	95,439	48,326	48,288	28,833	41,769	20,047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5,046	5,682	5,548	8,382	3,746	24,843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6,313	19,099	23,053	31,728	14,146	35,726
기타 특별회계	민간경상사업보조	48	1,186	1,392	41	565	2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0	0	347	0	0	0
	민간행사사업보조	0	15	0	0	20	0
기타 특별회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0	0	0	0	0	0
	사회복지사업보조	0	0	100	0	0	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65	10	0	6	0	0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0	0	895	0	0	274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경상사업보조	30	0	30	0	0	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0	0	0	0	0	0
	민간행사사업보조	0	0	0	0	0	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0	0	0	0	0	0
	사회복지사업보조	0	0	0	0	0	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0	0	0	0	0	0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0	0	0	0	0	0

자료: 2019 통합지방재정공시(당초예산)

제3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수원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7에 따라 2015년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 절차, 심의선정, 성과평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바탕으로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내용을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에 명시하고 있다.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은 크게 지방보조금의 개요와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사업 수행·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운용평가를 비롯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에 있어서의 유의사항 및 보조금 감사지적사례와 관계법령을 포함한다.

수원시는 2016년 지방보조금 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건전재정추진단 의견수렴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3개 분야, 9개 항목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2017년에는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및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제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을 구축하고 보조금의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담당공무원과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의 내용은 지방보조금 관리제도 및 집행방법 전반에 관한 내용과 보조금 전용카드 및 관리시스템 사용요령, 부정수급 근절대책 및 신고포상제도 홍보 등이 해당된다.

1. 지방보조사업자의 심의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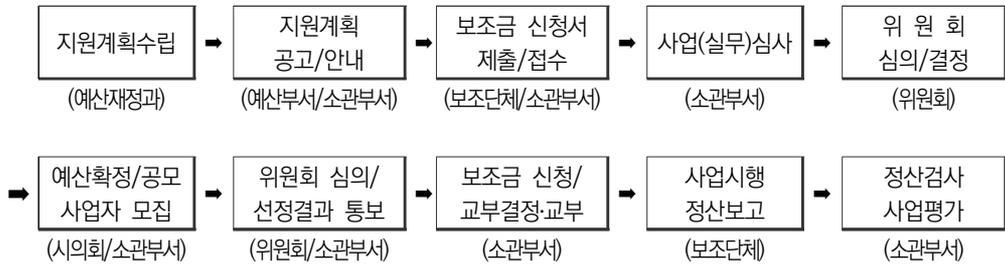
지방보조사업은 차기년도 본예산 편성 시 법령 및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공고가 이루어진다.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절차는 지원계획 수립, 실무심사, 위원회 심의, 예산확정의 과정을 거치며,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심의는 공모절차 진행, 위원회 심의, 교부절차, 실적 및 정산보고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심의선정 시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바탕으로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1차적으로 거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전달한다. 지방보조금위원회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통해 심의결과를 결정한다.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지방보조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단, 법 제32조의2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①국·도비 매칭사업, ②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③당초 예산대비 30%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가능하다.

〈표 3-33〉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절차

시 기		절 차	내 용
Y-1년 【편성】	8월	지원계획 공고	▪ 예산재정과(보조금 신청기간 안내)
	8~9월	사업 신청 (민간 또는 부서)	민간단체 등 사업부서
		사업 검토 (사업부서)	『보조금 신청사업 심사조사』 작성·제출
	9~10월	보조사업 심사 (보조금 심의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보조금 지원규모 결정>
	10~12월	예산 반영 (의회)	보조금 예산 최종확정
Y년 【교부】 【집행】	연중	《필수절차》 보조사업 공모 (사업부서) ↓ 공모심사 의뢰 (예산재정과)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조사』 작성·제출 ※ 공모절차 예외(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 법령, 조례에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 대상자가 지정된 국고보조사업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 - 신청에 따라 예산 반영된 사업으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모절차 제외사유 해당 시 위원회 심의 없이 지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해 교부절차 진행
		보조사업자 심사 (보조금 심의위원회)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서(교부조건 포함) 통보 ※ 보조사업 성과평가제도 안내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이 삭감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을 사전 공지 ▪ e-호조 시스템 「지방보조사업등록」 입력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 제출 ▪ 사업비(보조금+자부담 등) 총액에 대한 정산서 제출
		실적보고 (보조사업자)	▪ 제출 :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
Y+1년 【정산】 【평가】	1~7월	실적보고 심사 성과평가 및 일몰제 평가 (사업부서)	▪ 실적보고서 심사 및 보조사업 정산 - 정산내용의 적합여부 심사, 보조금액 최종 확정 ▪ 성과평가 : 지방보조사업(국·도비보조사업 제외) - 평가결과 60점미만 보조사업은 익년도 지원 제외 ▪ 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 3년 이상 계속 지원된 사업 - 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평가 - 지원제외 대상으로 선정 시 익년도 지원 제외

자료: 2019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자료: 2019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그림 3-10〉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선정 및 집행 (2019년 기준)

지원계획의 공고가 이루어지면,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보조금·자부담 집행계획 포함), 공익활동 실적(최근 2년간), 보조금 외 경비부담 내역, 단체등록증 및 정관·회칙 등의 서류와 함께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 사업자의 신청내용을 바탕으로 담당부서와 심의위원회는 기본 심사와 사업 심사를 거친다. 이 때, 기본 심사와 사업 심사 모두 정성적 평가에 해당한다. 자부담비율이나 신청보조금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는 있으나 일괄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담당 부서 및 담당 공무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먼저 기본 심사는 신청사업의 필요성, 자격요건 등에 대한 것으로 충족 또는 미충족으로 평가하며, 두 항목 중 하나라도 저촉되면 사업자로 선정이 불가능하다.

〈표 3-34〉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공모사업 기본 심사항목 (2019년 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기본심사 결과
사업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원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여부 수원시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공익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 	충족 (또는) 미충족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신청 자격요건 해당 유무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해당 유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충족 (또는) 미충족

자료: 2019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사업심사는 3개 분야(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편성), 7개 항목(설립목적 및 조직구성, 공익 실적 및 활동실적, 사업계획타당성, 수혜대상자, 사업효과성, 예산효율성, 예산적정성)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가한다. 분야별 배점 비율 및 개별 심사내용은 사업성격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변경사유를 기재하고 변경이 가능하여 비교적 자율적 구성이 가능하다.

〈표 3-35〉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공모사업 사업 심사항목 (2019년 기준)

분야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점수	
단체역량 (30점)	설립목적 및 조직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의 설립목적과 보조사업이 부합하는 정도 • 보조사업 추진 전담인력 확보 등 인력구성의 적정성 	15				
			상	중	하		
	15	10	8	15			
	공익사업 및 활동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 이내 공익사업 및 활동 실적 	상	중	하		
15			10	8			
사업내용 (50점)	사업계획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수립의 완성도 •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목적 달성가능) (단체구성 및 활동실적 등을 바탕으로 평가) 	20				
			상	중	하		
			20	15	10		
	수혜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대상자 선정의 구체성 및 범위 • 일부 특정 수혜자에게 중복되지 않는지 	10				
			상	중	하		
			10	7	5		
사업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에 따른 수혜자 등 파급효과 정도 • 당해 사업 추진에 따른 시정발전 기여도 	20					
		상	중	하			
		20	15	10			
예산편성 (20점)	예산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자부담 비율 정도 등) • 예산의 짜임새 및 현실성 평가(불필요 항목 여부) 	10				
			상	중	하		
			10	7	5		
	예산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보조금의 적정성(예산 집행 불가항목 있는지)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비목별 구성의 적절성 	10				
			상	중	하		
			10	7	5		

자료: 2019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연번	단체명 (대표자)	사업비		기본 심사		사업심사										
		신청액	조정액			단체역량 (30점)		사업내용 (50점)				예산편성 (20점)				
		신청액	조정액	사업 필요성	자격 요건	계	소계	설립목적 구성 (15)	공익 실적 (15)	소계	사업 계획 (20)	수혜 대상 (10)	사업 효과 (20)	소계	예산 효율 (10)	예산 적정 (10)
()개 단체 모집		보조금	보조금													
()개 단체 신청		(자부담)	(자부담)													
계																
1	가가단체 (홍길동)	1,234 (567)	1,200 (500)	○	○											

자료: 2019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그림 3-11〉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공모사업 심사총괄표 (예시) (2019년 기준)

신청단체	“단체명” or “공모사업” or “부서요구사업”		설립일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지원근거	“법령 또는 조례명”기재			예산과목			
사업 개요				사업 심사			
○ 사업명 :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사업내용 : • □ □ □ 를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몇 번을 추진하는지 ○ 기대효과 : .				단격역량	설립목적·조직구성	○ 설립목적 : ○ 주된사업 : ○ 사업수행인원은?	
					공익실적	○ 접수한 사업계획서 참조하여 평가	
기본 심사				사업내용	사업계획타당	○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조사·검토(필수) ○ 사업효과 달성을 위한 적합성	
○ 신청사업 필요성	•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 왜 필요한 것인가?				수혜대상	○ 선정방법(구체적) ○ 대상범위(특정되어야 함)	
○ 자격요건	•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조사·검토(필수) •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해당 유무				사업효과	○ 사업지원을 통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은?	
○ 시 소관사무와의 관련성 유무				(있음 / 없음)			
실무심사 검토의견				예산	예산효율	○ 경비배분(자부담 비율) ○ 예산의 짜임새 및 현실성 평가 ○ 불필요한 항목은 없는지(산출기초 조정)	
○ 신청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 등(구체적) ○ 【종합의견 : ○○】 (적정, 부적정 중 택1)					편성	예산적정	○ 금액산정 착오유무 조사·검토(필수) ○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조사·검토(필수) ○ 집행 불가능항목 여부
최근3년간 보조사업 수행실적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수행단체							
사업비 (단위 :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보조금 :	자부담 :	보조금 :	자부담 :	
사업성과 및 성과평가	○	○	○	○	○	○	
사업비 집행계획 총괄심사(세부내역 불임)							
구분	단체 신청액 (천원)			부서 조정액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등	계	보조금	자부담 등	
계	금액						
	비율	100%	%	%	100%	%	

자료: 2019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그림 3-12〉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심사조서 (2019년 기준)

2.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및 정산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만일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 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비목 내 변경 사용 등 '시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하다. 수원시에서는 '시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 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과 관계없는 내용, 사업비 교부결정 내역에 포함된 비목 내 사업비를 변경 사용(10% 이내 범위)하는 경우¹⁶⁾로 운영편람에 명시하여 자의적인 해석을 줄이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않도록 지원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나 그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혹은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상황을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대책 추진에 따라 수원시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지방보조금을 집행하는 전 부서에 대하여 부정수급근절 홍보와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월별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있다.

〈표 3-36〉 수원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근절 활동 (2019년 기준)

부서	부정수급근절 활동
예산재정과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홍보 및 신고접수 ※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등 근절대책 수립 및 시행
감사관	정기 종합감사 시 자체보조사업 관리실태 점검 필수
복지여성국 소속 6개부서	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상시 점검
기타 사업부서(49개)	보조금 수급자 및 보조사업 수행자 대상 교육·홍보 보조금 관리실태 및 보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자료: 2019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계획

16) 단, 당초 교부결정 내역에 없는 부기 신설 시에는 시장의 승인 필요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의 정산은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예산편성 규칙에 따르고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혹은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17)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담당사업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이 법령 등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하고 필요 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관리기준에 따라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결과를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전년도 지방보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완료 후 다음연도 7월말까지 진행된다. 평가대상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의 민간보조사업이 해당된다.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 또는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예비군육성지원보조사업, 운수업계보조사업,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평가는 사업계획(15점)·사업관리(25점)·사업성과(60점) 3개 분야에 대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사업부서에서 1차 평가 후 결과를 예산부서에 제출하면, 예산부서에서 검토 및 2차 평가가 이루어진다.

〈표 3-37〉 수원시 지방보조금 평가기준 및 항목 (2019년 기준)

사업계획(1)	사업관리(4)	사업성과(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수행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집행의 투명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보조사업자 자부담률 사업수행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실적(정산)보고 사업목표 달성도 시정 발전 기여도 지속 가능성

자료: 2019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평가항목은 총 9개로, 5개의 정량평가 항목과 4개의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정량 평가항목에는 사업계획 수행 적정성, 전용카드 사용률, 예산집행의 적정성, 자부담비율, 실적(정산)보고가 해당된다. 정성평가 항목에는 사업수행의 적정성, 목표달성도, 시정발전 기여도, 지속가능성 등이 포함되고 평가지표를 가급적 정량화하였다. 또한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17)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지출결의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차량운행 일지 등

사용여부에 대해 감점사항을 두어 정보화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방 보조금관계자의 교육 참석 여부에는 가점을 두어 교육을 통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가능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분야	평가 지표	평가 기준	배점	점 수		
				담당부서	예산부서	
합 계			100	80	60	
소 계			15	15	15	
사업 계획 (15)	1 사업계획 수행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대로 추진 (11~15점)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추진 (6~10점) 사업계획을 대폭 수정하여 추진 (1~5점) 사업 미실시 (0점) ※ 페널티(익년도 지원제외) 	15	15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초 사업계획에 부합하게 사업이 수행되었는지 여부 (최중 사업계획서 기준) ※ 사업계획은 사업비 집행계획(예산안)을 포함(예산안 변경집행 여부도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배점 외) 감점사항 ▶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사업계획 변경 추진 (-5점) 	(-5)	-	-	
소 계			25	20	12	
사업 관리 (25)	2 예산집행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카드 100% 사용 (10점) 전용카드 80% 이상 사용 (8점) 전용카드 60% 이상 사용 (6점) 전용카드 40% 이상 사용 (4점) 전용카드 20% 이상 사용 (2점) 전용카드 미사용 (0점) ※ 페널티(익년도 지원제외) 	10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전용카드(별도 계좌 개설) 및 보조사업비관리시스템 사용실적(인근비, 수당 등 카드사용 제한행위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배점 외) 감점사항 ▶ 보조사업비 관리시스템 미사용 (-5점) ※ 페널티(익년도 지원제외) 	(-5)	-	-5	
	3 예산집행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사업 적정 항목으로만 집행 (5점) 건별 배점 【부적정 및 예산낭비성 지출(-1점/건)】 ※ 부적정 및 예산낭비성 지출건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하며, 5건 초과시 페널티 부여(익년도 지원제외) 	5	5	5	
	4 보조사업자 자부담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부담률 20%이상 부담 (5점) 자부담률 15%이상~20%미만 부담 (4점) 자부담률 10%이상~15%미만 부담 (3점) 자부담률 5%이상~10%미만 부담 (2점) 자부담률 5%미만 부담 (1점) 자부담률 없음 (0점) 	5	1	0	
	5 사업수행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사업 관리 및 개선 노력 우수 (5점) 보조사업 관리 및 개선 노력 보통 (3~4점) 보조사업 관리 및 개선 노력 미흡 (1~2점) 보조사업 관리 및 개선 노력 없음 (0점) 	5	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추진실태 주기적 관리 및 보고 등 개선 노력의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배점 외) 감점사항 ▶ 지방보조금 관계자 교육 참석(예산부서 주관) (+1점) ▶ 민원발생 또는 의회,감사,인론 등의 지적 시 (-3점) 	(-3)	-	-		
소 계			60	45	33	
사업 성과 (60)	6 사업 실적(정산)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한 내 실적(정산)보고서 제출(10점) 건별 배점 【기한 5일 경과마다 (-2점)】 ※ 페널티 부여 대상(익년도 지원제외) - 실적(정산)보고 미실시 	10	0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종료후 2개월 이내, 실적(정산)보고서 제출 중빙서류 누락 없이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빙자료 누락 없이 제출(10점) 건별 배점 【자료 미흡 (-2점/건)】 ※ 페널티 부여 대상(익년도 지원제외) -보고서(중빙자료 포함) 보완 불용 	10	10	10	
	7 사업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우수 (17~20점) 보 통 (9~12점) 매우미흡 (0~4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 수 (13~16점) 미 흡 (5~8점) 	20	17	12
	8 시정 발전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높음 (9~10점) 보 통 (5~6점) 매우 낮음 (0~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 음 (7~8점) 낮 음 (3~4점) 	10	9	6
	9 지속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높음 (9~10점) 보 통 (5~6점) 매우 낮음 (0~2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우 높음 (9~10점) 보 통 (5~6점) 매우 낮음 (0~2점) 	10	9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 지원 필요성 인정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속 지원 필요 (6~10점) 일부 관여 지원 필요 (1~5점) 지원중단 (0점) 	10	9	5		

자료: 2019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

〈그림 3-13〉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체크리스트 (2019년 기준)

평가결과는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차기년도 예산편성 시 반영된다. 수원시는 ‘보통’과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감액지원을 검토하고 ‘매우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우우수’와 ‘우수’ 등급의 사업은 반드시 모두 계속지원 대상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지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표 3-38〉 수원시 지방보조금 평가결과 반영계획 (2019년 기준)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 ~ 89점)	보통(70 ~ 79점) 미흡(60 ~ 69점)	매우미흡(60점 미만)
계속지원 검토	감액지원 검토	지원중단 원칙

자료: 2019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계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유지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3년간 성과평가결과에 각 배점을 33점, 33점, 34점 만점으로 합산¹⁸⁾하여 일몰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평가결과, ‘보통’ 및 ‘미흡’ 등급의 사업은 일몰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매우미흡’인 사업은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차년도 예산편성에서 제외한다. 뿐만 아니라 3년 간 한번이라도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총 점수와 상관없이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매우우수’ 및 ‘우수’사업 또한 반드시 일몰제 미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일몰제 미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표 3-39〉 수원시 지방보조금 일몰제 적용 검토기준 (2019년 기준)

매우우수(100점 이상) 우수(75~99점)	보통(54~74점) 미흡(30~53점)	매우미흡(30점 미만)
일몰제 미적용 검토	일몰제 적용 검토	일몰제 적용 원칙

주1: 최근 3년간 최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주2: 최근 3년간 성과평가 중 한 번이라도 ‘매우미흡’을 받은 경우 총 점수에 관계없이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함

자료: 2019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계획

18) 전년도(n-1년도)의 경우, 매우우수(34점), 우수(25점), 보통(18점), 미흡(10점), 매우미흡(0점), 그 이전년도(n-2년도, n-3년도)의 경우에는 매우우수(33점), 우수(25점), 보통(18점), 미흡(10점), 매우미흡(0점)으로 계산하여 합산함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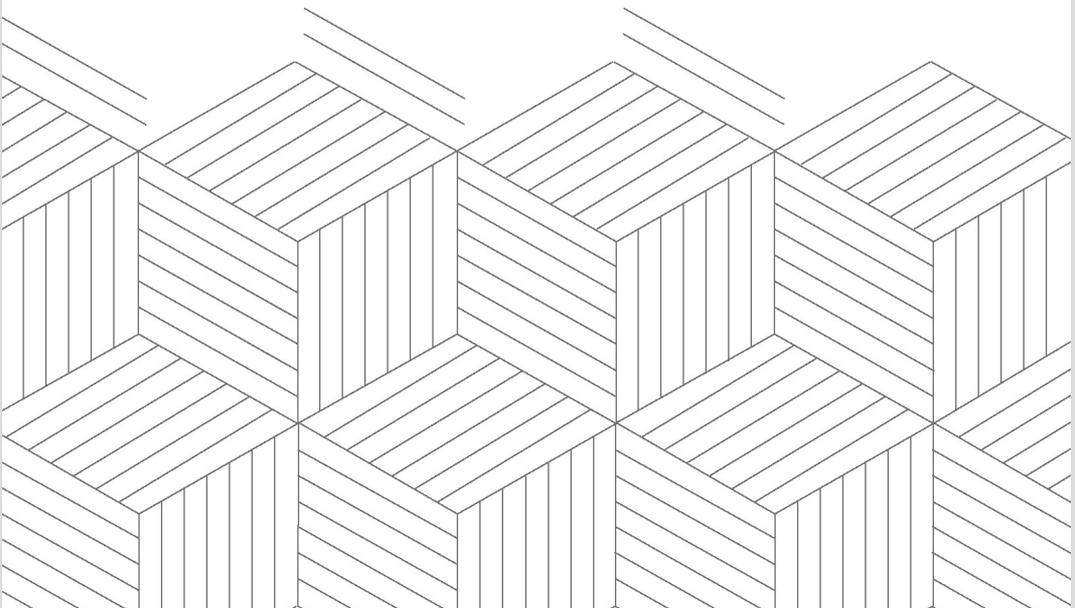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 현황

제1절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자 현황

제2절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현황

제3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체계 현황

제4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 과정의 쟁점



제4장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 현황

제1절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자 현황

1.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자 지원 현황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단체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모집단체 수와 신청단체의 수가 거의 유사하여 지방보조사업자 간 경쟁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의 경우에는 모집단체 수보다 신청단체의 수가 더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모집단체의 수에 제한이 없는 사업의 경우 신청단체 대부분이 지방보조금 교부단체로 결정되고 있었다.

〈표 4-1〉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단체결정 현황(모집제한이 있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2017-2019)

(단위: 개)

연도	모집단체	신청단체	결정단체
2017	263	271	231
2018	191	185	163
2019 (9월 현재)	142	216	139

자료: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재구성

〈표 4-2〉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단체결정 현황(모집제한이 없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2017-2019)

(단위: 개)

연도	모집단체 수 제한없음	신청단체	결정단체
2017	1개 사업	6	6
2018	0개사업	-	-
2019	3개 사업	39	34

자료: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재구성

모집단체 수 대비 신청단체의 수는 평균 1.14배로, 연도별로 1.1대1에서 1.2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사업은 2017년 토요일수원인문여행으로 1개 단체를

모집하였으며 3개 단체가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1개 단체가 결정되었다. 가장 많은 단체가 신청한 사업은 2018년 수원형어린이집 추가 선정으로 총 25개 단체를 모집하였으며, 32개 단체가 지원하고 최종적으로 21개 단체가 결정되었다. 가장 경쟁률이 낮은 사업은 두루누리 아카데미 사업으로 총 12개 단체를 모집하였으나 1개 단체만이 지원하여 최종적으로 1개 단체가 보조사업자로 결정되었다.

〈표 4-3〉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경쟁률 현황 (신청단체 : 결정단체) (2017-2019)

2017	2018	2019
1.2 : 1	1.1 : 1	1.2 : 1

자료: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재구성

2. 수원시 지방보조금 자부담 현황

지난 3년간 결산기준,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의 사업비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편성액 중 자부담비율은 매년 약 20% 수준에 해당한다. 2018년 성과평가가 진행된 지방보조사업은 총 452개로, 사업비(총액) 54,291,382천원 중 편성액은 42,846,952천 원, 자부담은 11,444,430천 원이며, 전체 사업액 대비 자부담비율은 21.1%로 나타나고 있다.

〈표 4-4〉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자부담 현황 (2016-2018)

(단위: 개, 천원, %)

회계연도	2016	2017	2018
사업수	448	424	452
총액	47,981,518	48,305,547	54,291,382
편성액	38,142,954	38,500,434	42,846,952
자부담	9,838,564	9,805,113	11,444,430
자부담비율	20.5	20.3	21.1

주: 총액 기준 자부담 비율은 전체 사업의 자부담액이 사업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지난 3년간 예산과목별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의 사업수를 살펴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사업수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다음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사업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총 452개의 보조금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78개(39.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 (149개, 33.0%), 민간자본사업보조 (45개, 10.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6개, 8.0%) 순으로 많은 사업수를 보인다.

〈표 4-5〉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예산과목별 사업수 및 평균 자부담비율 현황 (2016-2018)

(단위: 개, %)

구 분	2016		2017		2018	
	사업수	평균 자부담비율	사업수	평균 자부담비율	사업수	평균 자부담비율
민간경상사업보조	170	12.0	165	8.8	178	16.1
민간행사사업보조	150	25.3	134	31.9	149	22.9
사회복지사업보조	28	8.9	26	8.6	23	2.2
민간자본사업보조	46	44.6	43	48.8	45	49.8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4	8.1	35	6.4	36	6.3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0	0.3	21	0.2	21	0.2

주: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지난 3년 간 대체로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자부담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순으로 자부담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사업총액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3,738백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13,642백만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가 4,595백만 원으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총사업액 대비 자부담비율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사업액 13,642,051천원 중 자부담 6,795백만 원으로 49.8%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자부담 1,948백만 원으로 22.9%의 자부담비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총사업액 대비 자부담액이 0.2%로 자부담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전체사업 및 예산과목별 편성액 및 자부담액 현황 (2016-2018)

(단위: 천원, %)

구 분	2016				2017				2018			
	총액	편성액	자부담	자부담 비율	총액	편성액	자부담	자부담 비율	총액	편성액	자부담	자부담 비율
민간경상사업보조	12,192,081	10,730,065	1,462,016	12.0	12,559,378	11,456,394	1,102,984	8.8	13,738,147	11,522,078	2,216,069	16.1
민간행사사업보조	11,152,294	8,336,322	2,815,972	25.3	9,004,398	6,130,470	2,873,928	31.9	8,497,400	6,549,228	1,948,172	22.9
사회복지사업보조	1,736,402	1,582,330	154,072	8.9	1,477,345	1,349,600	127,745	8.6	4,595,063	4,493,156	101,907	2.2
민간자본사업보조	11,201,011	6,210,197	4,990,814	44.6	10,903,879	5,579,219	5,324,660	48.8	13,642,051	6,847,079	6,794,972	49.8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846,200	4,453,843	392,357	8.1	5,517,812	5,163,784	354,028	6.4	5,838,562	5,468,116	370,446	6.3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6,853,530	6,830,197	23,333	0.3	8,842,735	8,820,967	21,768	0.2	7,980,159	7,967,295	12,864	0.2

주: 자부담비율=예산과목별 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지난 3년 간 전체 보조금 사업의 자부담비율은 평균 15% 내외이며, 전체 지방보조사업 중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약 40% 수준에 해당한다. 2018년 전체 보조금 사업들의 자부담 비율은 평균 14.9%, 2017년 보조금 사업들의 자부담비율은 평균 14.8%, 2016년 보조금 사업들의 자부담비율은 평균 15.7%로 2016년에 비하여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표 4-7〉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연도별 평균 자부담비율 (2016-2018)

(단위: %)

2016	2017	2018
15.7	14.8	14.9

주: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한편, 지난 3년간 자부담비율 15%이상 20% 미만의 사업과 25%이상 40%미만 사업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20%이상 25%미만 사업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만 살펴볼 때, 자부담비율 5%이상 15%미만인 사업수가 가장 높은 비중(각각 10.4%, 10.2%)을 차지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낮은 자부담비율을 가진 사업이 상당수임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8〉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자부담비율 구간별 사업수 현황 (2016-2018)

(단위: 개, %)

자부담비율	2016		2017		2018	
	사업수	사업수비율	사업수	사업수비율	사업수	사업수비율
자부담 없음	170	37.9	172	40.6	172	38.1
5%미만	31	6.9	33	7.8	31	6.9
5%이상 10%미만	40	8.9	35	8.3	47	10.4
10%이상 15%미만	35	7.8	29	6.8	46	10.2
15%이상 20%미만	26	5.8	23	5.4	20	4.4
20%이상 25%미만	19	4.2	31	7.3	36	8.0
25%이상 30%미만	25	5.6	16	3.8	15	3.3
30%이상 40%미만	51	11.4	35	8.3	33	7.3
40%이상 50%미만	12	2.7	17	4.0	15	3.3
50%이상	39	8.7	33	7.8	37	8.2
계	448	100.0	424	100.0	452	100.0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한편, 예산과목별 자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이 자부담이 포함된 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8년 기준, 각 예산과목별 자부담비율 수준을 살펴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의 평균 자부담비율이 18.7%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15.7%), 민간경상사업보조(14.1%) 순으로 평균 자부담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업의 평균 자부담비율이 1.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4-9〉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예산과목별 평균 자부담비율 (2016-2018)

(단위: %)

예산과목	2016	2017	2018
민간경상사업보조	14.7	12.9	14.1
민간행사사업보조	18.5	19.8	18.7
사회복지사업보조	10.7	10.0	8.6
민간자본사업보조	17.5	14.5	15.7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9.4	16.6	13.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2	1.1	1.3

주: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각 자부담 비율의 구간별로 자세히 살펴볼 때, 2018년 기준 자부담이 없는 지방보조사업의 비율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21개 사업 중 19개(90.4%)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은 149개 중 33개(22.1%)가 자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 중에서는 자부담비율 5%이상 10%미만 사업이 2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10%이상 15%미만 사업(18개), 20%이상 25%미만 사업(16개)의 순으로 나타나 주로 25% 미만 사업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민간행사사업보조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비율 10%이상 15%미만 사업이 24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5%이상 10%미만 사업 및 30%이상 40%미만 사업(각 17개), 50%이상 사업(16개) 순으로 나타나 사업 간 자부담비율의 격차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내 자부담액이 있는 사업은 23개 사업 중 9개 사업으로, 이 중 3개 사업이 자부담비율 5%미만 사업으로 나타났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는 45개 중 19개가 자부담액이 있는 사업이며 이 중 7개가 자부담비율 50%이상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와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는 자부담액이 있는 사업 중 자부담비율이 20%이상 25%미만 사업이 5개, 10%이상 15%미만 사업이 4개, 5%이상

10% 미만 사업이 3개 순으로 나타나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의 경우 자부담이 있는 사업은 2개 사업 뿐으로 각각 5%미만, 25%이상 30%미만이 해당한다.

〈표 4-10〉 2018년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자부담비율 구간별 예산과목별 사업수 현황

(단위: 개, %)

자부담비율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자부담 없음	65 (36.5)	33 (22.1)	14 (61.0)	26 (57.8)	15 (41.7)	19 (90.4)
5%미만	10 (5.6)	13 (8.7)	3 (13.1)	2 (4.4)	2 (5.6)	1 (4.8)
5%이상 10%미만	24 (13.5)	17 (11.4)	2 (8.7)	1 (2.2)	3 (8.3)	0 (0.0)
10%이상 15%미만	18 (10.1)	24 (16.1)	0 (0.0)	0 (0.0)	4 (11.1)	0 (0.0)
15%이상 20%미만	11 (6.2)	7 (4.7)	1 (4.3)	1 (2.2)	0 (0.0)	0 (0.0)
20%이상 25%미만	16 (9.0)	11 (7.4)	1 (4.3)	3 (6.7)	5 (13.9)	0 (0.0)
25%이상 30%미만	7 (3.9)	5 (3.4)	0 (0.0)	1 (2.2)	1 (2.8)	1 (4.8)
30%이상 40%미만	10 (5.6)	17 (11.4)	0 (0.0)	3 (6.7)	3 (8.2)	0 (0.0)
40%이상 50%미만	6 (3.4)	6 (4.0)	1 (4.3)	1 (2.2)	1 (2.8)	0 (0.0)
50%이상	11 (6.2)	16 (10.7)	1 (4.3)	7 (15.6)	2 (5.6)	0 (0.0)
계	178 (100.0)	149 (100.0)	23 (100.0)	45 (100.0)	36 (100.0)	21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자부담비율과 성과 간 관계를 살펴볼 때, 성과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수 대비 약 50% 전후에 해당한다. 2018년 기준 성과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의 수는 270개로 전체 사업수 452개 중 59.7%에 해당하는데, 전체 지방보조사업과 비교하여 평균 자부담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각 예산과목별 평균 자부담비율은 '우수' 등급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이 전체 지방보조사업보다 높게 나타나,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전체 지방보조사업 자부담비율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11〉 수원시 '우수'등급이상 지방보조사업 예산과목별 평균 자부담비율 (2016-2018)

(단위: 개, %)

예산과목	2016	2017	2018
사업수	177	227	270
민간경상사업보조	17.8	15.0	16.4
민간행사사업보조	15.9	19.6	18.4
사회복지사업보조	13.1	14.7	8.7
민간자본사업보조	22.3	17.9	19.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2.3	18.8	15.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6	1.3	1.4
전체 평균 자부담비율	16.7	15.9	15.9

주: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성과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에서 지난 3년간 자부담이 없는 사업 비율이 가장 높은 예산과목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이다. 자부담이 없는 사업 비율이 가장 낮은 예산과목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나타나 전체 지방보조사업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8년 기준, 성과평가 결과 '우수' 등급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에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의 비율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업이 18개 중 17개(9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은 77개 중 12개(15.6%)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여 이와 같은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 중에서는 자부담비율이 5%이상 10%미만이 13개로 가장 많고, 10%이상 15%미만이 11개, 20%이상 25%미만이 10개의 순서로 나타나 자부담비율이 낮은 구간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 중에서는 자부담비율이 10%이상 15%미만인 사업이 15개로 가장 많고, 5%이상 10%미만과 30%이상 40%미만이 각 9개, 20%이상 25%미만이 8개의 순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우수' 등급 이상 사업의 경우, 14개 사업이 자부담액이 있는 사업이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7개 사업이 자부담비율 50%이상으로 전체 사업수 대비 높은 자부담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12〉 2018년 수원시 '우수'등급이상 지방보조사업 자부담비율 구간별 예산과목별 사업수 현황
(단위: 개, %)

자부담비율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자부담 없음	30 (29.6)	12 (15.6)	9 (64.4)	18 (56.2)	11 (39.3)	17 (94.4)
5%미만	5 (5.0)	7 (9.1)	2 (14.3)	1 (3.1)	2 (7.1)	0 (0.0)
5%이상 10%미만	13 (12.9)	9 (11.7)	1 (7.1)	0 (0.0)	1 (3.6)	0 (0.0)
10%이상 15%미만	11 (10.9)	15 (19.5)	0 (0.0)	0 (0.0)	3 (10.7)	0 (0.0)
15%이상 20%미만	8 (7.9)	3 (3.8)	0 (0.0)	0 (0.0)	- -	0 (0.0)
20%이상 25%미만	10 (9.9)	8 (10.4)	1 (7.1)	3 (9.4)	4 (14.3)	0 (0.0)
25%이상 30%미만	5 (5.0)	5 (6.5)	0 (0.0)	0 (0.0)	1 (3.6)	1 (5.6)
30%이상 40%미만	9 (8.9)	9 (11.7)	0 (0.0)	2 (6.3)	3 (10.7)	0 (0.0)
40%이상 50%미만	3 (3.0)	3 (3.9)	0 (0.0)	1 (3.1)	1 (3.6)	0 (0.0)
50%이상	7 (6.9)	6 (7.8)	1 (7.1)	7 (21.9)	2 (7.1)	0 (0.0)
계	101 (100.0)	77 (100.0)	14 (100.0)	32 (100.0)	28 (100.0)	18 (100.0)

주: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지방보조금 편성액 기준으로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편성액이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자부담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난 3년 간 평균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한편, 편성액 5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지속적으로 자부담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 편성액이 천만원 미만인 사업은 100개 사업, 평균 자부담 비율 17.8%로 가장 높은 자부담비율을 보였다. 다음으로 편성액이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이 452개 보조금 사업 중 221개를 차지하였고 해당되는 사업들의 평균 자부담 비율은 16.0%에 해당하였다. 또한 지방보조금 편성액이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사업은 58개 사업(평균 자부담비율이 11.5%), 편성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사업은 61개 사업(평균 자부담비율이 9.2%)으로 편성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사업들은 사업개수와 평균 자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지방보조금 편성액이 5억 원 이상인

사업수는 2018년 기준 12개로 평균 자부담비율이 14.4%로 나타났으며 매년 사업수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자부담비율은 2016년 9.9%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규모의 사업에 못 미치는 평균 자부담비율을 보여 사업 간 지방보조금 분배의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3〉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편성액 규모별 사업수 및 자부담비율 현황 (2016-2018)

(단위: 개, %)

편성액 규모	2016		2017		2018	
	평균 자부담비율	사업개수	평균 자부담비율	사업개수	평균 자부담비율	사업개수
전체	15.7	448 (100.0)	14.8	424 (100.0)	14.9	452 (100.0)
천만 원 미만	20.6	87 (19.4)	19.6	83 (19.6)	17.8	100 (22.1)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16.7	205 (45.8)	15.8	205 (48.3)	16.0	221 (48.9)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1.3	76 (17.0)	12.0	62 (14.6)	11.5	58 (12.8)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2.4	69 (15.4)	8.7	63 (14.9)	9.2	61 (13.5)
5억 원 이상	9.9	11 (2.5)	10.1	11 (2.6)	14.4	12 (2.7)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자부담비율 구간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 편성액과 자부담비율 간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대체로 편성액이 클수록 자부담이 없는 사업수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성과평가 기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5억 원 이상 사업에서 8개로 전체 5억 원 이상 사업 중 66.7%에 해당하며,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사업에서 38개 사업(62.3%),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사업에서 27개 사업(46.7%) 순서로 나타나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편성액 1억 원을 기준으로 볼 때, 편성액 1억 원 이하의 사업에서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50% 이하인 반면, 1억 원 이상인 사업에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의 비율이 60% 이상에 달하고 있다. 천만원 이하의 사업에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25.0%인 것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자부담이 없는 사업 중에서는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사업이 74개(33.5%)로 가장 높은 사업수를 보이고 있으며, 천만 원 미만인 사업은 25개 사업으로 5억 원 이상 사업 다음으로

낮은 사업수를 보여 전체 사업 수 비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한편, 자부담이 있는 사업 중에서는 지방보조금 편성액이 가장 낮은 천만 원 미만인 사업에서는 자부담비율이 5%이상 10%미만인 사업이 17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편성액이 가장 높은 5억 원 이상의 사업 중에서는 자부담비율이 50%이상인 사업이 2개, 40%이상 50%미만인 사업이 1개로 비교적 높은 자부담 비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개 사업에서 5% 미만의 매우 낮은 자부담비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편성액이 높은 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자부담을 많이 부담하지만, 자부담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사업이 보다 많아 전반적으로 자부담비율이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5억 원 다음으로 편성액이 높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사업 중에서는 자부담이 있는 사업 중 자부담비율이 5%인 사업과 10%이상 15%미만인 사업(각각 5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14〉 2018년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편성액 규모별 평균 자부담비율 구간별 사업수 현황
(단위: 개, %)

자부담비율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자부담 없음	25 (25.0)	74 (33.5)	27 (46.7)	38 (62.3)	8 (66.7)
5%미만	6 (6.0)	18 (8.1)	1 (1.7)	5 (8.2)	1 (8.3)
5%이상 10%미만	17 (17.0)	19 (8.6)	9 (15.5)	2 (3.3)	0 (0.0)
10%이상 15%미만	12 (12.0)	25 (11.3)	4 (6.9)	5 (8.2)	0 (0.0)
15%이상 20%미만	4 (4.0)	12 (5.4)	4 (6.9)	0 (0.0)	0 (0.0)
20%이상 25%미만	10 (10.0)	20 (9.1)	4 (6.9)	2 (3.3)	0 (0.0)
25%이상 30%미만	5 (5.0)	8 (3.6)	2 (3.4)	0 (0.0)	0 (0.0)
30%이상 40%미만	9 (9.0)	17 (7.7)	3 (5.2)	4 (6.5)	0 (0.0)
40%이상 50%미만	2 (2.0)	8 (3.6)	2 (3.4)	2 (3.3)	1 (8.3)
50%이상	10 (10.0)	20 (9.1)	2 (3.4)	3 (4.9)	2 (16.7)
계	100 (100.0)	221 (100.0)	58 (100.0)	61 (100.0)	12 (100.0)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2018년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 예산과목별 편성액과 자부담비율 간 관계를 살펴보면, 편성액이 가장 높은 5억 원 이상의 사업에서는 민간자본사업보조의 자부담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성액이 가장 낮은 천만 원 미만의 사업에서는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의 자부담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방보조금 편성액이 천만 원 미만 사업에서는 사회복지사업보조사업의 자부담비율이 평균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민간행사사업보조(25.2%), 민간경상사업보조(16.8%) 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5억 원 이상인 사업에서는 민간자본사업보조가 평균 57.1%의 자부담비율을 보이고 있다. 앞서 가장 많은 사업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규모의 사업에서는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평균 자부담비율이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민간행사사업보조(18.0%),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15.5%) 순으로 파악되었다. 편성액 규모가 두 번째로 높은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사업에서 자부담비율은 민간행사사업보조가 평균 18.1%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민간경상사업보조(11.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11.3%) 순으로 나타났다.

예산과목별로 살펴볼 때, 사회복지사업보조의 경우 천만 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서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거나 평균 자부담비율이 천만 원 미만 규모의 사업의 평균 자부담비율의 33.6%의 0.2배에 불과하며, 이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에서도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표 4-15〉 2018년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예산과목별 편성액 규모별 사업수 및 평균 자부담비율

(단위: 개, %)

예산과목	천만 원 미만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	
	사업수	자부담 비율	사업수	자부담 비율	사업수	자부담 비율	사업수	자부담 비율	사업수	자부담 비율
민간경상사업보조	59	16.8	74	13.9	21	11.6	21	11.5	3	0.0
민간행사사업보조	26	25.2	91	18.0	20	13.3	12	18.1	0	-
사회복지사업보조	4	33.6	10	5.7	5	0.0	3	2.2	1	0.0
민간자본사업보조	10	0.0	17	22.3	9	17.0	6	0.3	3	57.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	0.0	26	15.5	0	-	8	11.3	1	0.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0	-	3	8.5	3	0.0	11	0.0	4	0.3

주: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자료: 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의 경우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사업이 가장 낮은 편성액을 보이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과 비교하여 평균 자부담비율이 8.5%로 가장 높고 5천만 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서는 자부담을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매우 낮은 수준의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사업이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사업수가 가장 많음에도 평균 자부담비율이 0%임을 고려할 때, 적은 규모의 일부 사업에서 높은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낮은 사업규모일수록 자부담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은 민간경상사업 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에만 가장 낮은 규모의 사업에서 25.2%의 가장 높은 평균 자부담비율이 나타나지만 다른 편성액 규모 간 평균 자부담비율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현황

1. 수원시 지방보조금 사업근거

지난 3년간 지방보조사업의 지원근거를 ‘법률’, ‘조례’, ‘법률과 조례’, ‘기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사업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조례에 근거한 지원 사업의 비중이 다음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2018년을 기준으로, 사업평가대상에 해당된 452개 사업 중 184개 사업(40.7%)은 법률을 지원근거로 하고 있으며, 171개 사업(37.8%)은 조례를, 95개 사업(21.0%)은 법률과 조례를 지원근거로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표 4-16〉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지원근거현황 (2016-2018)

(단위: 개, %)

연도	법률	조례	법률+조례	기타	없음	계
2016	200 (44.7)	190 (42.4)	57 (12.7)	0 (0.0)	1 (0.2)	448 (100.0)
2017	198 (46.7)	139 (32.8)	86 (20.3)	1 (0.2)	0 (0.0)	424 (100.0)
2018	184 (40.7)	171 (37.8)	95 (21.0)	2 (0.4)	0 (0.0)	452 (100.0)

주: ‘기타’는 지원근거가 ‘지침’ 등임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통계목별 지원근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회복지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법률’에 근거한 지원사업의 비율이 높은 편이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역시 대부분의 사업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8년을 기준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에서는 평가사업 178개 중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이 89개(50.0%)로 가장 많았고, 법률에 근거한 지원사업은 50개(28.1%),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은 38개(21.3%)로 나타났다. 민간행사사업보조 항목에서는 지원근거별로 법률 59개 사업(39.6%), 조례 52개 사업(34.9%), 법률과 조례 38개 사업(25.5%), 민간자본사업보조 항목에서는 지원근거별로 법률 18개 사업(40.0%) 조례 21개 사업(46.7%), 법률과 조례 6개 사업(13.3%)으로 나타났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항목은 법률에 근거한 지원사업이 22개(61.1%),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이 5개(13.9%), 법률과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이 8개(22.2%)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업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항목에서는

법률에 근거한 지원사업 비율이 높은 편으로 파악된다.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는 법률 근거 사업이 16개(69.6%), 법률과 조례 근거 사업이 5개(21.7%), 조례 근거 사업이 2개(8.7%)이며, 사회복지법정운영비보조에서는 법률 근거 사업이 19개(90.5%), 조례 근거 사업이 2개(9.5%)로 나타났다. 통계목별 지원근거 현황은 2017년과 2016년에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17〉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연도별 예산과목별 지원근거현황 (2016-2018)

(단위: 개, %)

예산과목	2016					2017					2018				
	계	법률	조례	법률+ 조례	없음	계	법률	조례	법률+ 조례	기타	계	법률	조례	법률+ 조례	기타
민간경상 사업보조	170 (100.0)	48 (28.2)	92 (54.2)	30 (17.6)	-	165 (100.0)	57 (34.5)	69 (41.9)	38 (23.0)	1 (0.6)	178 (100.0)	50 (28.1)	89 (50.0)	38 (21.3)	1 (0.6)
민간행사 사업보조	150 (100.0)	67 (44.6)	69 (46.0)	13 (8.7)	1 (0.7)	134 (100.0)	63 (47.1)	42 (31.3)	29 (21.6)	-	149 (100.0)	59 (39.6)	52 (34.9)	38 (25.5)	-
사회복지 사업보조	28 (100.0)	21 (75.0)	1 (3.6)	6 (21.4)	-	26 (100.0)	21 (80.8)	2 (7.7)	3 (11.5)	-	23 (100.0)	16 (69.6)	2 (8.7)	5 (21.7)	-
민간저본 사업보조	46 (100.0)	15 (32.6)	27 (58.7)	4 (8.7)	-	43 (100.0)	16 (37.2)	19 (44.2)	8 (18.6)	-	45 (100.0)	18 (40.0)	21 (46.7)	6 (13.3)	-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34 (100.0)	29 (85.3)	1 (2.9)	4 (11.8)	-	35 (100.0)	22 (62.9)	5 (14.3)	8 (22.8)	-	36 (100.0)	22 (61.1)	5 (13.9)	8 (22.2)	1 (2.8)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20 (100.0)	20 (100.0)	-	-	-	21 (100.0)	19 (90.5)	2 (9.5)	-	-	21 (100.0)	19 (90.5)	2 (9.5)	-	-

주: '기타'는 지원근거가 '지침' 등임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법률을 사업근거로 하는 경우 주로 청소년기본법, 문화체육진흥법, 지방문화원진흥법,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등의 지방보조사업의 사업분야와 대상에 따른 법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개략적인 사업대상 및 내용을 파악하고 일반적 지원절차를 적용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적용 가능한 사업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어 심사 시 해당근거에 기초하여 적정성을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수원문화원지원 및 육성조례, 수원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와 같이 수원시가 보다 구체적인 조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아닌 법령을 사업근거로 제시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의 기본적 근거 해당하는 지방재정법¹⁹⁾을 사업근거로 제시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취지 및 적정 절차를 법령에 기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19)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9조

2. 수원시 지방보조금 계속사업 등에 관한 평가 현황

1) 일몰제 적용 현황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중 계속사업에 대하여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일몰제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전체 452개 사업 중 159개 사업(35.2%), 2017년에는 전체 424개 사업 중 310개 사업(73.1%)이 일몰제 적용 사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293개 사업(64.8%)이 일몰제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이 없었으며, 일몰제 적용 대상 사업 159개(35.2%) 중에서는 1개 사업(0.2%)에 대하여 일몰제가 적용되었다. 2017년에는 114개 사업(26.9%)이 일몰제 적용에 해당이 없는 사업이었으며, 일몰제 적용 대상 사업 310개(73.1%) 중에서는 8개 사업(1.9%)에 대하여 일몰제가 적용되었다.

〈표 4-18〉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일몰제 적용 현황 (2017-2018)

(단위: 개, %)

구분	2017		2018	
	사업수(개)	사업비율(%)	사업수(개)	사업비율(%)
전체	424	100.0	452	100.0
해당없음	114	26.9	293	64.8
적용 대상	310	73.1	159	35.2
미적용	302	71.2	158	35.0
적용	8	1.9	1	0.2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일몰제 적용 대상 사업의 일몰제 평가 등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일몰제 적용 대상 159개 사업 중 57개 사업(35.8%)이 일몰제 '우수' 등급이었고, 82개 사업(51.7%)이 '보통', 18개 사업(11.3%)이 '미흡', 1개 사업(0.6%)이 '매우미흡'인 사업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일몰제 적용 사업 중에서는 101개 사업(63.6%)이 일몰제 평가에서 '보통' 이하 등급으로 나타났다. 2017년에는 일몰제 적용 대상 310개 사업 중 일몰제 평가 등급이 '우수'인 사업이 52개(16.8%), '보통'인 사업이 208개(67.1%), '미흡'인 사업이 37개(11.9%), '매우미흡'인 사업이 4개(1.3%)이었다. 2017년 일몰제 적용 사업 중에서는 249개 사업(80.3%)이 일몰제 평가에서 '보통' 이하 등급으로 파악되었다.

〈표 4-19〉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별 일몰제 적용 현황 (2017-2018)

(단위: 개, %)

	계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타
2017	310 (100.0)	52 (16.8)	208 (67.1)	37 (11.9)	4 (1.3)	9 (2.9)
2018	159 (100.0)	57 (35.8)	82 (51.7)	18 (11.3)	1 (0.6)	1 (0.6)

주: '기타'는 일몰제 등급 미가입 등이 포함됨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통계목별로 일몰제 적용 대상의 일몰제 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업이 '우수' 또는 '보통'에 해당하는 사업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2017년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만 '미흡'에 해당하는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볼 때,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의 일몰제 적용 대상 사업은 62개이며, 17개 사업(27.4%)이 일몰제 평가 '우수', 37개 사업(59.7%)이 '보통', 7개 사업(11.3%)이 '미흡'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항목에서는 일몰제 적용 대상 46개 사업 중 일몰제 평가 등급이 '우수'인 사업은 15개(32.6%)이고, '보통' 이하인 사업이 31개(67.4%)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업보조 항목은 11개 사업이 일몰제 적용 대상이었으며, 일몰제 평가 등급은 '보통' 8개(72.7%), '미흡' 3개(27.3%)이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항목의 일몰제 적용 대상 사업은 13개이며, 9개 사업(69.2%)이 일몰제 평가 '우수', 4개 사업(30.8%)이 '보통'이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항목에서는 일몰제 적용 대상 14개 사업 중 일몰제 평가 등급이 '우수'인 사업은 8개(57.1%)이고, '보통'인 사업이 6개(42.9%)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항목은 13개 사업이 일몰제 적용 대상이었으며, 일몰제 평가 등급은 '우수' 8개(61.5%), '보통' 5개(38.5%)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표 4-20〉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별 예산과목별 일몰제 적용 현황 (2017-2018)

(단위: 개, %)

예산과목	2017						2018					
	계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타	계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타
민간경상사업보조	122 (100.0)	19 (15.6)	85 (69.6)	13 (10.7)	1 (0.8)	4 (3.3)	62 (100.0)	17 (27.4)	37 (59.7)	7 (11.3)	-	1 (1.6)
민간행사사업보조	99 (100.0)	11 (11.1)	68 (68.7)	15 (15.2)	2 (2.0)	3 (3.0)	46 (100.0)	15 (32.6)	22 (47.8)	8 (17.4)	1 (2.2)	-
사회복지사업보조	17 (100.0)	3 (17.6)	9 (52.9)	5 (29.5)	-	-	11 (100.0)	-	8 (72.7)	3 (27.3)	-	-

예산과목	2017						2018					
	계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타	계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기타
민간자본 사업보조	27 (100.0)	10 (37.0)	12 (44.5)	3 (11.1)	1 (3.7)	1 (3.7)	13 (100.0)	9 (69.2)	4 (30.8)	-	-	-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27 (100.0)	6 (22.2)	19 (70.4)	1 (3.7)	-	1 (3.7)	14 (100.0)	8 (57.1)	6 (42.9)	-	-	-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8 (100.0)	3 (16.7)	15 (83.3)	-	-	-	13 (100.0)	8 (61.5)	5 (38.5)	-	-	-

주: '기타'는 일몰제 등급 미가입 등이 포함됨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일몰제 적용 대상 사업의 일몰제 평가 등급별 일몰제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2018년 일몰제 적용 사업 중에서는 101개 사업(63.6%)이 일몰제 평가에서 '보통' 이하 등급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매우미흡'인 1개 사업이 일몰제가 적용되었고, 일몰제 등급이 '보통' 및 '미흡'인 사업은 모두 일몰제 미적용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일몰제 적용 사업 중에서는 249개 사업(80.3%)이 일몰제 평가에서 '보통' 이하 등급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평가 등급이 '매우미흡'인 4개 사업 중에서는 3개 사업이 일몰제가 적용되었고, 일몰제 등급이 '미흡'인 사업 37개 중 4개 사업, '보통'인 사업 208개 중 1개 사업이 일몰제가 적용되었다.

〈표 4-21〉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별 일몰제 적용 유무 현황 (2017-2018)

(단위: 개, %)

구분	2017			2018			
	계	미적용	적용	계	미적용	적용	
총계	310 (100.0)	302 (97.4)	8 (2.6)	159 (100.0)	158 (99.4)	1 (0.6)	
일몰 평가등급	우수	52 (100.0)	52 (100.0)	-	57 (100.0)	57 (100.0)	-
	보통	208 (100.0)	207 (99.5)	1 (0.5)	82 (100.0)	82 (100.0)	-
	미흡	37 (100.0)	33 (89.2)	4 (10.8)	18 (100.0)	18 (100.0)	-
	매우미흡	4 (100.0)	1 (25.0)	3 (75.0)	1 (100.0)	-	1 (100.0)
	기타	9 (100.0)	9 (100.0)	-	1 (100.0)	1 (100.0)	-

주: '기타'는 일몰제 등급 미가입 등이 포함됨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이 때, 2018년 일몰제가 적용된 1개 사업은 민간행사사업보조 항목의 ‘수원여성문화 축제’이며, 2017년에 일몰제가 적용된 8개 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항목에서 4개 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 항목에서 각 2개 사업으로 파악되었다.

〈표 4-22〉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별 일몰제 적용 사업 목록 (2017~2018)

연도	사업명	통계목	부서
2017	수중인명구조장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자치행정과
2017	지역브랜드 홍보 및 교류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지역경제과
2017	월남참전전우회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과
2017	저소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장애인복지과
2017	인문도시 조성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예술과
2017	광교호수공원 가족사랑 걷기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체육진흥과
2017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환경정책과
2017	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기술센터
2018	수원여성문화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	여성정책과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2) 성과평가 및 환류

성과평가 결과 ‘매우미흡’을 받은 사업의 경우 대부분 폐지되었으며,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되었으나 일부 사업들은 오히려 증액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2016년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하 등급인 271개 사업의 2017년 예산을 살펴보면, 30개 사업(11.1%)이 증액, 100개 사업(36.9%)이 유지, 77개 사업(28.4%)이 감액, 64개 사업(23.6%)이 폐지로 나타났다. 2016년에 ‘매우미흡’ 등급인 사업은 2017년에 5개(83.3%)가 폐지되었고, 1개 사업(16.7%)은 감액이었다. 2016년에 ‘미흡’ 등급인 사업 중 24개(50.0%), ‘보통’ 등급인 사업 중 35개(16.1%)가 2017년에 사업이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하 등급인 197개 사업의 2018년 예산을 살펴보면, 48개 사업(24.4%)이 증액, 60개 사업(30.5%)이 유지, 45개 사업(22.8%)이 감액, 44개 사업(22.3%)이 폐지로 나타났다. 2017년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매우미흡’인 사업은 2018년에 모두 해당 사업이 운영되지 않았다.

〈표 4-23〉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차년도 예산 현황 (2017-2018)

(단위: 개, %)

전년도 성과평가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계	증액	유지	감액	폐지	계	증액	유지	감액	폐지
보통	217 (100.0)	28 (12.9)	92 (42.4)	62 (28.6)	35 (16.1)	168 (100.0)	46 (27.4)	52 (31.0)	36 (21.4)	34 (20.2)
미흡	48 (100.0)	2 (4.2)	8 (16.7)	14 (29.1)	24 (50.0)	22 (100.0)	2 (9.1)	8 (36.4)	9 (40.9)	3 (13.6)
매우미흡	6 (100.0)	-	-	1 (16.7)	5 (83.3)	7 (100.0)	-	-	-	7 (100.0)
계	271 (100.0)	30 (11.1)	100 (36.9)	77 (28.4)	64 (23.6)	197 (100.0)	48 (24.4)	60 (30.5)	45 (22.8)	44 (22.3)

주1: 차년도에 사업이 없어진 경우 '폐지'

주2: 괄호 안은 비율을 나타냄

자료: 2016-2018 수원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평가제외 사업 제외)

제3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체계 현황

1.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수원시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으로 3명의 당연직(기획조정실장, 경제정책국장, 안전교통국장)과 12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위촉직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원시의회가 추천한 민간전문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1회 연임 가능 규정에 따라 전기 위원회 위원 중 연임자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 연임을 본인의사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소속 또는 직책 등 기관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은 위촉 사유가 소멸(근무처 퇴사 또는 연임 미수락 등)된 경우 소속 기관 추천의뢰를 추진한다. 대학교수, 민간전문가는 공공행정, 사회복지, 문화 및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섭외하며, 참여율 향상 및 소통 강화 차원에서 전문가 외에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현재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있다.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기획, 문화, 체육, 교육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심의하며, 제 2분과위원회에서는 경제, 복지, 환경, 건설 분야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별로 6명의 위촉직 위원이 약 220여개 사업에 대하여 담당하였다.

〈표 4-24〉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구성 (2018년 기준)

구분	제1분과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분야	기획, 문화, 체육, 교육	경제, 복지, 환경, 건설
소관 부서	감사관, 청년정책관,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재정과,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문화유산관리과, 도서관정책과, 구 행정지원과	일자리정책관, 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복지허브화추진단, 도시관리과, 공동주택관리과, 건축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생태교통과, 도시교통과, 대중교통과, 도시디자인과, 소통협력과, 생명산업과, 운업기술과, 생태공원과, 녹지경관과, 공원관리과, 구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보건소
사업수	224개 사업	214개 사업

자료: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재구성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안건 및 내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상시로 이루어지는 전체회의와 예산편성 시 이루어지는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심의과정을 추진한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보조금 지원규모 결정(순시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의원발의 포함), 3년 이상 지속사업 유지여부 결정, 국·도비매칭 지방보조사업 중 순시비 추가부담사업(내시비율 초과 사업),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결정 등에 대해 심의한다. 심의위 안건상정 시 심의자료는 최소 10일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권하며, 심의위 개최가 어려운 경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지난 3년 간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연간 8~10회 개최되었으며 매년 1회당 평균 10건~15건 정도의 안건을 검토하고 있다. 1회당 최소 1건, 최대 67건의 안건이 검토되고 있는데, 지방보조사업자 운용평가결과 및 차년도 지원규모 검토 시에는 1건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사실상 집행중인 모든 지방보조사업(약 400여 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표 4-25〉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및 안건 현황 (2017-2019)

(단위: 건)

	2017	2018	2019 (9월 현재)
개회횟수	10	9	8
안건 수	168	140	83

주: 안건 수의 경우 전체 지방보조금 예산(지원규모) 결정안에 대한 검토와 운용평가 보고에 대한 안건은 1건으로 처리함
자료: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재구성

지방보조금 심의 안건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행사성 사업의 사전 심사안 검토, 예산편성(본예산 및 추경)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규모 검토와 지방보조사업 운용 평가 결과 보고 및 검토로 나누어진다. 또한 지방보조금 조례 개정, 분과위원회설치, 신고 포상금지급 결정 등 규정 마련을 위한 심의위가 1건~3건 이루어지고 있다.

〈표 4-26〉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내용별 안건수 현황 (2017-2019)

(단위: 건)

안건 내용	2017	2018	2019 (9월 현재)	총합계
보조사업자 선정	49	46	41	136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	51	18	8	77
지방보조금 지원규모 및 평가결과 검토	67	74	31	172
기타	1	2	3	6

주: 안건 수의 경우 전체 지방보조금 예산(지원규모) 결정안에 대한 검토와 운용평가 보고에 대한 안건은 1건으로 처리함
자료: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재구성

최근 3년 간 전반적으로 검토 안건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행사성 사업에 대한 심사 안건은 전년대비 0.5배 이하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지방보조금 지원규모 및 평가결과 검토의 안건수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는 있으나 전체 지방보조금 예산 결정 및 운용평가 검토와 관련해서는 400개 이상의 전체 사업수를 1개의 안건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안건이 반드시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일정 및 시기

수원시의 지방보조사업은 평균적으로 상반기인 2월~4월 사이에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주로 검토가 이루어지며, 하반기인 10~12월에는 성과평가 검토와 다음해 지방보조사업 지원규모 결정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표 4-27〉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방보조사업 심의 검토시기 (2017~2019)

(단위: 개)

심의일자 심의내용		심의일자												총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7	사업자선정			17	17	5		1	8				1	49
	행사사전심사				11						37	3		51
	지원규모 결정				39						3	25		67
	기타		1											1
	소계		1	17	67	5		1	8		40	28	1	168
2018	사업자선정		15	7	14		1	7	2					46
	행사사전심사		2				6	4	1			5		18
	지원규모 결정						36	2		1		34		73
	평가결과검토							1						1
	기타						2							2
	소계		17	7	14		45	14	3	1		39		140
2019 (9월 현재)	사업자선정	3	23	8	5		1	1						41
	행사사전심사		1		3		3	1						8
	지원규모 결정			1	25		2	2						30
	평가결과검토								1					1
	기타						1	1	1					3
	소계	3	24	9	32		7	5						83
총합계		3	42	33	113	5	52	20	11	1	40	67	1	391

주: 안건 수의 경우 전체 지방보조금 예산(지원규모) 결정안에 대한 검토와 운용평가 보고에 대한 안건은 1건으로 처리함
 자료: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재구성

지방보조사업 심의선정일자를 살펴볼 때,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각 행사시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행사일정으로부터 약 2~3개월 이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있다.²⁰⁾ 다만, 일부 사업²¹⁾에서 사업공고와 심의, 행사일정까지 기간이 각 1개월여에 불과한 사례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 심의 이후 1개월 이내에 교부 결정 및 교부금 배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빠른 심의가 요구되는데 사업시행이 임박하여 주관부서의 사정을 반영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있다. 특히 사업을 집행하기까지 사업 준비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주어져 심의 중 사업계획 등에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이 제기되어도 이를 충실히 사업계획에 반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추가자료 요청이나 조건부 가결도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보조사업자와의 협의 및 교육기간 역시 부족하여 내실 있고 안정적인 사업집행을 담보하기 힘들다.

20) 행사개최일자가 비교적 명확한 민간행사사업보조 이외의 타 보조사업의 경우, 담당부서에 따라 사업기간을 공고 이전부터 설정하거나 사업시간시기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여 명확한 사업시작시기를 파악하기에 용이하지 않아 본 분석에서는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중심으로 사례를 파악하였다.

21) 2017년 화성따라 자전거타기, 2017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 나눔 한마당,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 사업 중 일부 사업들의 경우 심의일자와 행사일자 간 시차가 1개월여에 불과하여 위원회의 내실있고 객관적인 심사가 어렵고, 심사 중 제기될 수 있는 지적사항 및 권고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제4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 과정의 쟁점

앞서 3장과 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원시는 지방보조금 예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체 사업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작은 규모의 사업이 많아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은 모집규모에 비해 신청사업자가 많지 않아 경쟁률이 낮고, 신청사업자의 대부분이 보조사업자로 결정되고 있다. 지방보조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규모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비율이 낮은 특성이 있고, 대부분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한편, 법적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위원수 증가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심의안 건수가 많고 심의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존재하여 보조사업자의 역량이나 사업평가결과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1. 수원시 지방보조금 현황과 심의선정과정의 쟁점

1) 지방보조금 증가에 따른 심의선정과정 엄정성 확보 미흡

지방보조금은 규모와 비중 측면에서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서울과 경기 지역에 많은 규모의 지방보조금이 집중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내 지방보조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수원시의 지방보조금 규모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어 엄정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수원시 지방보조금은 예산과목 중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의 예산액이 가장 많은 규모를 보였으며, 분야별로 살펴보았을 때 사회복지분야의 사업수와 예산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보조의 경우 최근 그 증가세가 가파르게 나타나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요구가 대내외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변동과 장애인판정기준 완화 등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측되는 가운데, 수원시 지방보조금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규모 측면에서 수원시의 지방보조금은 자체재원 사업규모의 비율이 낮고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예산액 중 보조금 규모가 큰 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 전체 사업수 중 과반수이상 차지하고 있고, 예산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매칭비가 요구되므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향에 지방보조금 규모가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사무로 이양하고자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지방보조금 증가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작은 규모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관리 미흡

수원시 전체 지방보조사업 중 5천만 원 미만의 사업규모가 작은 보조사업이 가장 많아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사업이 매년 40% 수준의 비중을 보이고 있는데, 순시비 사업에서는 50%에 가까운 비중을 보이며 더욱 편중된 모습을 나타냈다. 또한 순시비 사업 중 17%에 가까운 사업이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규모를 보임에 따라 자체사업일수록 작은 사업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와 비교할 때,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작은 규모의 사업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는 이와 같은 작은 규모의 사업을 통해 다각적인 측면에서 공공서비스를 유연하게 제공할 수 있으나 사업수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관리가 어려운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작은 규모의 사업은 주로 심층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사중복사업이 증가할 수 있고 관행적인 지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업의 목적에 맞도록 사업규모를 조정하거나 주기적으로 심층검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관행적 지방보조금 지급에 대한 검토 부족

수원시는 신규사업의 비율이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나 기존 보조사업에 관행적으로 지방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계속사업은 지난 5년간 사업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업수 대비 예산규모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지방보조금은 계속사업 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예산 감액이나 지원중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보통'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수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성과평가대상 사업 중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수는 지난 3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보통'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수와 사업비중은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 중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매우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전체 지방보조사업 중 사회복지분야 사업예산의 비중이 높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매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계속지원 근거와 구체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성과평가 기준에 따라 환류원칙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2.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상 쟁점

1) 지방보조사업자 역량 파악 미흡

먼저 지방보조사업 공모 시 수원시는 모집단체수와 비교하여 신청단체의 수가 동일하거나 그보다 적어 경쟁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청단체 대부분에 대해 지방보조금 지원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경쟁률이 낮은 경우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않은 보조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으며,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재정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심의·선정 시 자부담비율이 명확화되어 있지 않아 자부담이 없는 사업의 비중이 40% 수준으로 평균 자부담비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사업규모가 높은 사업에서 자부담비율이 낮고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 또한 나타나고 있었다. 예산과목별로 살펴볼 때, 민간자본 사업보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과목에서 작은 사업규모에서의 자부담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천만 원 미만의 가장 작은 사업규모에서 자부담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5억 원 이상의 큰 규모의 사업비중의 증가추세가 가파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수원시의 실정을 감안할 때, 적정수준의 자부담비율을 결정하고 사업규모와 특성에 맞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인 사업의 경우에도 자부담비율이 없는 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보조나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영세한 사업자가 많아 '우수'등급인 경우에도 자부담비율이 없는 사업수의 비중이 높다는 특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부담비율이 성과에 반영되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자의 부담 능력의 차이가 높아 지방보조금 운영 상 형평성과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2) 지방보조사업 내용 및 목적의 구체성 미비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은 조례보다는 법률을 지원근거로 하고 있어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독창성이 반영된 보조사업이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는 대부분의 사업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와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에서 '법률'에 근거한 지원사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법률을 근거로 하는 경우 주로 지방보조사업의 사업 분야와 대상에 따른 법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가 보다 구체적인 조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아닌 법령을 사업 근거로 제시하는 사례도 존재하였다. 이와 같은 법령은 특정 분야의 지원대상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과 일반적 지원절차를 제공해주고 있으나, 사업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므로 적정 사업유형을 파악하는 데에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의 개괄에 해당하는 지방재정법을 사업근거로 하고 있어, 사업의 구체적인 취지가 사업근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일몰제 적용 원칙에 따라 폐지된 사업도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수원시 지방보조사업 중 계속사업에 대하여 2018년 일몰제 적용대상사업은 35%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1개 사업에 대하여 일몰제가 적용되었다. 일몰제 적용 대상 사업은 대부분 '우수' 또는 '보통'에 해당하였으며, 이 중 '매우미흡'인 1개 사업에 일몰제가 적용되었고, 일몰제 등급이 '보통' 및 '미흡'인 사업은 모두 일몰제 미적용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과평가 결과 '매우미흡'을 받은 사업의 경우 대부분 폐지되었고, '미흡' 등급을 받은 사업 또한 대부분의 사업은 감액·폐지되었으나 일부 사업들은 오히려 증액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2017년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하 등급인 사업 중 약 45%의 사업은 다음해인 2018년 예산이 감액되거나 폐지되었으나, 과반수가 넘는 나머지 사업은 유지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성과평가 결과가 심의선정 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지방보조사업 심의환경 및 운영체계의 한계

지방보조사업 심의현황 측면에서 살펴볼 때, 사업 및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에 대내외적인 제도적 환경에 따른 한계를 보였다. 먼저 성과평가와는 달리 심의선정 시에는 정성적 평가에 치중되어 있어 사업자 선정기준이 모호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에서 제출한 실무심사서에 의존하여 평가를 하여야 하며, 따라서 많은 안전을 심사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를 구분하여 2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기획, 문화, 체육, 교육 분야, 제 2분과위원회에서는 경제, 복지, 환경, 건설 분야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는데, 각 분과위원회별로 6명의 위촉직 위원이 약 220여개 사업에 대하여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분과위원회의 전문성을 갖추고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연간 8~10회 개최되어 1회당 최소 1건, 최대 67건의 안전이 검토되고 있으며, 평가결과 검토 시에는 사실상 집행중인 모든 지방보조사업(약 400여 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가하고, 많은 안전 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촉위원의 규모를 확보하고 운영방식을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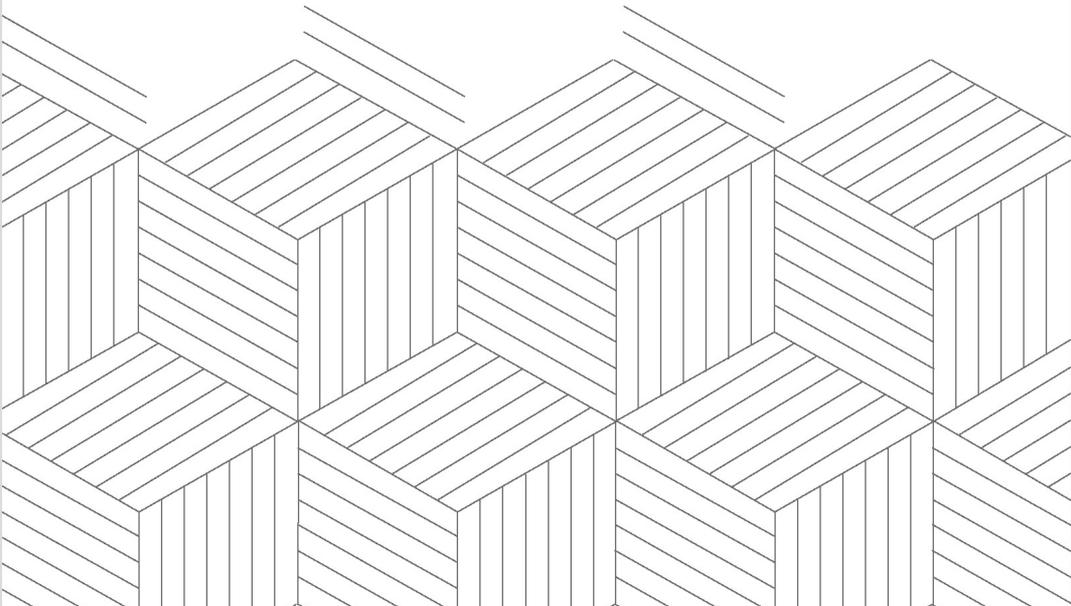
또한 심의위원회 일정과 사업시행시기 간 간격이 1개월 이내로 매우 짧은 사례도 존재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 엄격한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빠른 심의가 요구되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든 측면이 있다. 또한 추가자료 요청이나 조건부 가결 및 재상정을 통해 세밀한 검토와 개선을 거치기 어려운 환경이므로 지방보조사업이 내실있게 수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지방보조사업자 역시 지방보조금 교부 이후 사업 준비기간이 매우 짧고 심의과정에서 제시된 지적·개선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보조금 교부 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진행할 시간과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5장

타 자치단체 사례분석

- 제1절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 제2절 타 자치단체 심의선정과정 개선사례
- 제3절 타 자치단체 사례 쟁점분석



제5장 타 자치단체 사례분석

제1절 경기도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2018년 결산기준 경기도내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교부금액 및 세출대비비율을 살펴보면, 수원시의 교부금액 규모가 200,208백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고양시(179,975백만 원), 화성시(138,772백만 원) 순으로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5-1〉 2018년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교부금액 및 세출대비교부비율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지방보조금 교부금액	200,208	131,417	109,272	179,975	106,030	138,772
세출대비 지방보조금비율	8.80	8.67	4.89	9.75	5.06	6.89

주: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회복지분야 지방보조금 교부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화성시의 경우에만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비중이 사회복지법정운영비보조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제외한 민간보조금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성남시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의 비중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5-2〉 2018년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예산과목별 교부금액 및 세출대비교부비율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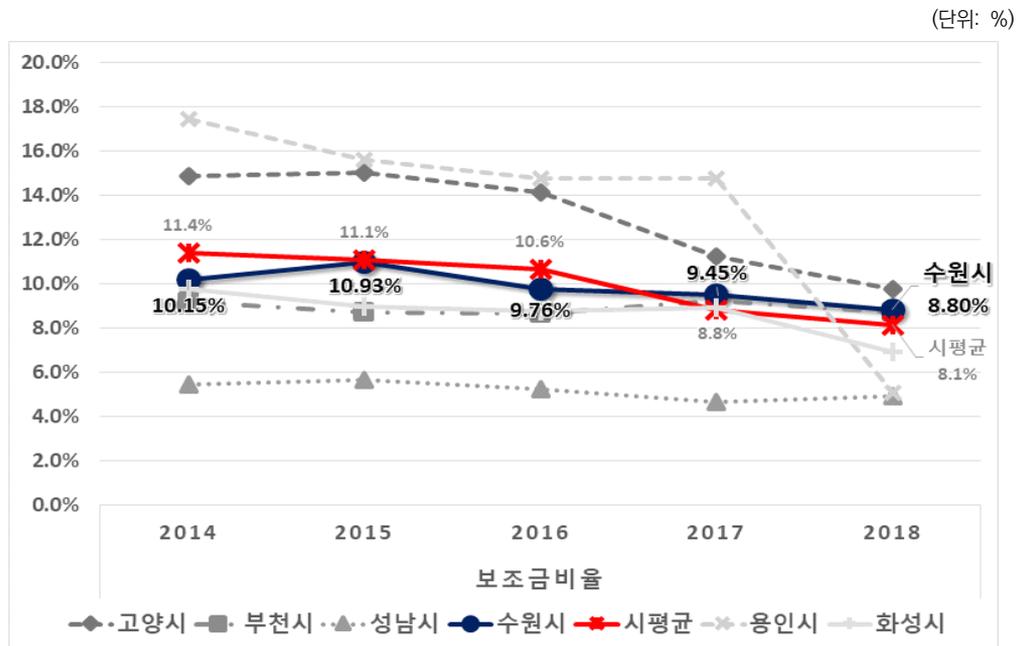
구 분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민간경상사업 보조	교부금액	23,935	15,342	14,360	19,566	17,000	45,133
	세출대비비율	1.05	1.01	0.64	1.06	0.81	2.24
민간단체 운영비보조	교부금액	5,611	8,204	15,167	5,503	3,222	3,605
	세출대비비율	0.25	0.54	0.68	0.30	0.15	0.18
민간자본사업 보조	교부금액	7,268	3,944	5,725	5,886	12,553	15,386
	세출대비비율	0.32	0.26	0.26	0.32	0.60	0.76

구 분		수원시	부천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민간행사사업 보조	교부금액	7,315	7,112	6,546	7,538	2,542	9,000
	세출대비비율	0.32	0.47	0.29	0.41	0.12	0.45
사회복지사업 보조	교부금액	90,159	30,686	33,780	43,586	24,703	15,464
	세출대비비율	3.96	2.03	1.51	2.36	1.18	0.7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교부금액	65,920	66,129	33,694	97,896	46,010	50,184
	세출대비비율	2.90	4.36	1.51	5.30	2.20	2.49

주: 교부액은 결산기준 예산과목별 총 지출액

자료: 2018년 결산기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결산기준 세출대비 교부비율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시평균 지방보조금비율(8.1%)보다 높은 지역은 고양시(9.75%), 수원시(8.80%), 부천시(8.67%)로 나타났다. 2018년 기준 전년 대비 지방보조금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지방보조금비율이 가장 낮은 성남시는 4.65%에서 4.90%로 다소 증가하였다. 부천시와 화성시는 거의 유사한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화성시가 좀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부천시는 수원시와 유사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는 고양시와 비교하여 지방보조금비율이 낮은 편이나 고양시의 지방보조금비율의 감소율이 수원시보다 높아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2018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공시(결산기준)(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그림 5-1〉 유사자치단체 세출대비 지방보조금 교부비율(결산기준) (2014-2018)

본 연구에서는 세출대비 지방보조금 교부비율을 기준으로 수원시보다 낮은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와 최근 지방보조금비중이 감소한 용인시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추이 및 성과평가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용인시 지방보조금 현황

2018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용인시의 지방보조금은 106,032백만 원으로 2017년 261,231백만 원과 비교하여 59.4%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세출대비지방보조금비율은 지난 5년 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7년 15.76%에서 5.06%로 크게 감소하였다.

〈표 5-3〉 용인시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2014-2018)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1,461,317	1,639,395	1,783,219	1,769,421	2,095,131
지방보조금(민간)	254,759	255,677	262,444	261,231	106,032
비율	17.43%	15.60%	14.72%	14.76%	5.06%

주: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용인시 통합재정공시(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018년 기준 사회복지분야 지방보조금인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가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행사사업보조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용인시는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지방보조금비율을 보이고 있었으나 2018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금이 크게 줄어들며 전년 대비 가장 큰 지방보조금 감소폭을 보임과 함께 지방보조금비율도 가장 낮은 성남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통합재정공시 결산기준 2017년 대비 2018년 세출결산액이 증가한 반면, 지방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209,503백만 원에서 46,010백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며 지방보조금비율이 크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감소는 용인시의 민간위탁금 증가에 반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업수행방식에 변화와 더불어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규정과 관리체계 개선에 따른 결과라고 추정하여 볼 수 있다.

〈표 5-4〉 2018년 용인시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095,131	17,000	0.8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3,222	0.15%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2,542	0.12%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46,010	2.2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4,703	1.18%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12,553	0.60%

주: 교부액은 결산기준 예산과목별 총 지출액
 자료: 2018년 결산기준 용인시 통합재정공시(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순시비 기준 용인시의 지방보조금은 총 337개 사업으로 총 37,026백만 원 중 보조금 총액은 26,258백만 원, 자부담 총액은 10,768백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용인시의 평균 자부담비율은 16.6%이며, 이 중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평균 자부담비율이 34.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가장 낮은 평균 자부담비율(4.7%)을 보이고 있다.

〈표 5-5〉 2018년 용인시 지방보조금(순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

(단위: 개, 천원, %)

예산과목	사업수	총계	보조금	자부담	평균 자부담비율
민간경상사업보조	132	9,290,645	7,411,327	1,879,318	11.8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3	3,288,867	2,960,005	328,862	10.1
민간자본사업보조	67	16,455,139	8,651,660	7,803,479	34.9
민간행사사업보조	95	2,736,263	2,303,226	433,037	16.0
사회복지사업보조	19	264,198	236,056	28,142	16.9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1	4,990,896	4,696,062	294,834	4.7
총합계	377	37,026,008	26,258,336	10,767,672	16.6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미평가 사업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용인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용인시는 전체 사업수 중 66.8%인 252개 사업이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목별로 살펴볼 때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업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는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사업수가 자부담이 있는 사업수보다 많고 평균 사업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부담이 있는 사업만 살펴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가 가장 낮은 자부담비율(18.7%)을 보이고 있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가 평균 사업규모도 크고 평균 자부담비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5-6〉 2018년 용인시 지방보조금(순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자부담 유/무)

(단위: 개, 천원, %)

예산과목	자부담 있음			자부담 없음	
	사업수	평균 사업비	평균 자부담비율	사업수	평균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71	45,020	21.9	61	69,097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1	57,852	20.7	22	79,324
민간자본사업보조	60	134,794	39.0	7	80,571
민간행사사업보조	81	24,756	18.7	14	21,286
사회복지사업보조	15	6,754	21.4	4	33,688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4	207,604	24.5	17	227,391
총계	252	61,254	24.9	125	86,579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미평가 사업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용인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성과평가 결과, '매우우수'인 사업이 129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자부담비율 또한 1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흡'인 사업은 16개 사업으로 평균 자부담비율은 13.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5-7〉 2018년 용인시 지방보조금(순시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

(단위: 개, 천원, %)

평가결과	사업수	보조금	자부담	평균 자부담비율
매우우수	129	13,645,783	6,468,525	19.5
우수	114	7,336,345	3,587,864	15.7
보통	118	4,529,758	684,258	14.9
미흡	16	746,450	27,025	13.0
총계	377	26,258,336	10,767,672	16.6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미평가 사업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용인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자부담 유무에 따라 살펴보면, 전체 사업수 중 66.8%인 252개 사업이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보통' 평가를 받은 사업에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업의 비중이 85개(7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8〉 2018년 용인시 지방보조금(순시비) 성과평가 및 자부담유무에 따른 보조금 및 사업수 현황
(단위: 개, 천원)

평가결과	자부담 있음		자부담 없음	
	사업수	평균 사업비	사업수	평균 사업비
매우우수	82	179,677	47	114,485
우수	76	99,832	38	87,816
보통	85	44,040	33	44,564
미흡	9	15,497	7	90,571
총계	252	103,983	125	86,579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미평가 사업 등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용인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 성남시 지방보조금 현황

2018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성남시의 지방보조금은 109,272백만 원으로 2017년 89,402백만 원과 비교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세출대비지방보조금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으나, 2017년 4.7%에서 4.9%로 다소 증가하였다.

〈표 5-9〉 성남시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2014-2018)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1,404,203	1,545,332	1,729,945	1,923,325	2,232,051
지방보조금(민간)	76,292	86,958	90,354	89,402	109,272
비율	5.43%	5.63%	5.22%	4.65%	4.90%

주: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성남시 통합재정공시(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018년 통합재정공시 결산기준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지방보조금인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가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 자본사업보조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5-10〉 2018년 성남시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232,051	14,360	0.64%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15,167	0.68%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6,546	0.29%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33,694	1.5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3,780	1.51%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5,725	0.26%

주: 교부액은 결산기준 예산과목별 총 지출액

자료: 2018년 결산기준 성남시 통합재정공시(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순시비 기준 성남시의 지방보조금은 총 433개 사업²²⁾으로 총 47,263백만 원 중 보조금 총액은 38,958백만 원, 자부담 총액은 8,306백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성남시의 평균 자부담 비율은 8.1%이며, 이 중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평균 자부담비율이 1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2018년 성남시 지방보조금(순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

(단위: 개, 천원, %)

예산과목	사업수	총계	보조금	자부담	평균 자부담비율
민간경상사업보조	132	7,863,656	6,762,596	1,101,060	6.2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0	18,421,207	14,994,672	3,426,535	2.9
민간자본사업보조	27	7,780,890	4,696,616	3,084,274	16.4
민간행사사업보조	165	6,697,696	6,018,766	678,930	12.8
사회복지사업보조	33	4,202,036	4,202,036	0	0.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6	2,297,717	2,282,870	14,847	0.8
총계	433	47,263,202	38,957,556	8,305,646	8.1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미평가 사업 등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성남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성남시의 지방보조사업은 전체 사업수 중 47.1%인 167개 사업이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목별로 살펴볼 때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업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사업의 경우 자부담을

22) 미평가(7개 사업) 및 총사업비 0원(7개 사업)인 사업 제외

부담하지 않는 사업수가 자부담이 있는 사업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부담이 있는 사업만 살펴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가장 높은 평균 자부담비율(40.4%)를 보이고 있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의 평균 사업규모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평균 자부담비율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다음으로 낮은 편에 해당한다.

〈표 5-12〉 2018년 성남시 지방보조금(순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자부담 유/무)
(단위: 개, 천원)

예산과목	자부담 있음			자부담 없음	
	사업수	평균 사업비	평균 자부담비율	사업수	평균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47	87,924	17.5%	85	43,897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7	1,965,318	16.3%	33	141,333
민간자본사업보조	11	556,382	40.4%	16	103,793
민간행사사업보조	100	38,402	21.1%	65	43,962
사회복지사업보조	0	-	-	33	127,334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	30,524	14.6%	34	65,784
총계	167	167,132	21.1%	266	72,752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미평가 사업 등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성남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성과평가 결과, '매우우수'인 사업이 290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자부담비율 또한 8.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흡'과 '매우미흡'인 사업은 각 1개 사업으로 평균 자부담비율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5-13〉 2018년 성남시 지방보조금(순시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
(단위: 개, 천원, %)

평가결과	사업수	보조금	자부담	평균 자부담비율
매우우수	290	20,085,267	3,904,644	8.9
우수	120	8,341,203	1,109,106	7.5
보통	21	10,506,962	3,291,892	2.2
미흡	1	6,996	4	0.1
매우미흡	1	17,128	0	0.0
총계	433	38,957,556	8,305,646	8.1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미평가 사업 등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성남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대부분의 평가수준에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자부담이 있는 사업보다 많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사업규모는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자부담이 없는 사업보다 높은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수' 등급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의 평균 사업규모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14〉 2018년 성남시 지방보조금(순시비) 성과평가 및 자부담유무에 따른 보조금 및 사업수 현황
(단위: 개, 천원, %)

평가결과	자부담 있음		자부담 없음	
	사업수	평균 사업비	사업수	평균 사업비
매우우수	115	104,519	175	68,401
우수	46	61,296	74	89,604
보통	5	2,612,950	16	45,881
미흡	1	7,000	0	-
매우미흡	0	-	1	17,128
총계	167	167,132	266	72,752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미평가 사업 등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성남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3. 부천시 지방보조금 현황

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131,417백만 원으로 지방보조금비율은 8.7%로 나타나고 있다.

〈표 5-15〉 부천시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2014-2018)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968,594	1,122,448	1,297,699	1,256,346	1,515,143
지방보조금(민간)	88,610	97,232	111,707	115,804	131,417
비율	9.15%	8.66%	8.61%	9.22%	8.67%

주: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부천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각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5-16〉 2018년 부천시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1,515,143	15,342	1.01%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8,204	0.54%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7,112	0.4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66,129	4.36%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30,686	2.03%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3,944	0.26%

주: 교부액은 결산기준 예산과목별 총 지출액
 자료: 2018년 결산기준 부천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순시비 기준 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은 총 452개 사업으로 총 26,531백만 원 중 보조금 총액은 22,267백만 원, 자부담 총액은 4,263백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부천시의 평균 자부담비율은 14.9%이며, 이 중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평균 자부담비율이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낮은 평균 자부담비율 규모를 보이는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의 평균 자부담비율은 6.4%로 나타났다.

〈표 5-17〉 2018년 부천시 지방보조금(순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

(단위: 개, 백만 원, %)

예산과목	사업수	총계	보조금	자부담	평균 자부담비율
민간경상사업보조	164	8,144.9	6,513.3	1,631.4	11.5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28	8,176.9	7,277.7	899.3	7.0
민간자본사업보조	18	1,200.3	923.5	276.9	32.3
민간행사사업보조	117	3,360.3	2,699.6	660.4	18.7
사회복지사업보조	92	2,196.7	1,819.9	376.7	18.2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3	3,451.4	3,033.2	418.3	6.4
총계	452	26,530.5	22,267.2	4,263.0	14.9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미평가 사업 등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부천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부천시의 지방보조사업은 전체 사업수 중 61.5%인 278개 사업이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목별로 살펴볼 때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업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의 경우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사업수가 자부담이 있는 사업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부담이 있는 사업만 살펴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가장 높은 평균 자부담비율(41.6%)을 보이고 있고,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의 경우 평균 사업비 규모가 높으나 평균 자부담비율은 15.0%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5-18〉 2018년 부천시 지방보조금(순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자부담 유/무)

(단위: 개, 백만원, %)

예산과목	자부담 있음			자부담 없음	
	사업수	평균 사업비	평균 자부담비율	사업수	평균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110	43.7	17.1	54	61.9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3	502.6	15.0	15	109.5
민간자본사업보조	14	49.4	41.6	4	127.1
민간행사사업보조	67	40.1	32.7	50	13.4
사회복지사업보조	60	18.5	27.8	32	34.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4	94.2	15.1	19	112.3
총계	278	61.7	24.2	174	54.0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미평가 사업 등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부천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성과평가 결과, '매우우수'인 사업이 217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자부담비율은 '미흡'등급으로 평가받은 사업²³⁾이 2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우미흡'인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모두 사업비 총계가 각 1백만 원 이하로 매우 작게 나타났다.

〈표 5-19〉 2018년 부천시 지방보조금(순시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평가결과	사업수	보조금	자부담	평균 자부담비율
매우우수	217	16,402.9	3,203.7	15.6
우수	187	5,369.4	972.5	14.1
보통	40	475.3	61.2	13.6
미흡	5	18.4	25.5	29.3
매우미흡	3	1.2	0.1	8.3
총계	452	22,267	4,263	14.9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미평가 사업 등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부천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23) 사회복지사업보조 2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3개 사업

'매우미흡'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평가수준에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자부담이 없는 사업보다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평균 총사업규모 역시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자부담이 없는 사업보다 높은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매우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과, 모두 자부담을 부담하는 '미흡'등급의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평가등급에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의 평균 사업규모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20〉 2018년 부천시 지방보조금(순시비) 성과평가 및 자부담유무에 따른 보조금 및 사업수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평가결과	자부담 있음		자부담 없음	
	사업수	평균 사업비	사업수	평균 사업비
매우우수	124	106.7	93	68.6
우수	119	29.5	68	41.6
보통	29	12.3	11	16.3
미흡	5	8.8	0	-
매우미흡	1	0.4	2	0.5
총계	278	61.7	174	54.0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미평가 사업 등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부천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4. 화성시 지방보조금 현황

화성시의 지방보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138,772백만 원으로 2017년 155,431백만 원 대비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지방보조금비율은 2014년 9.7%에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2018년 6.9%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1〉 화성시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2014-2018)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1,163,411	1,424,817	1,573,916	1,748,773	2,014,806
지방보조금(민간)	113,368	127,710	137,660	155,431	138,772
비율	9.74%	8.96%	8.75%	8.89%	6.89%

주: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화성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각 예산과목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50,184백만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45,133백만 원으로 많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는 3,605백만 원으로 전체 지방보조금 교부액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5-22〉 2018년 화성시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2,014,806	45,133	2.24%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07-03)		3,605	0.18%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9,000	0.45%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50,184	2.49%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15,464	0.77%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15,386	0.76%

주: 교부액은 결산기준 예산과목별 총 지출액

자료: 2018년 결산기준 화성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순시비 기준 화성시의 지방보조금은 총 469개 사업으로 총 76,245백만 원의 사업비 중 보조금 총액은 55,386백만 원, 자부담 총액은 20,660백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부천시의 평균 자부담비율은 14.0%이며, 이 중 민간자본사업보조의 평균 자부담비율이 32.9%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가 가장 낮은 1.0%의 평균 자부담비율을 보였다.

〈표 5-23〉 2018년 화성시 지방보조금(순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예산과목	사업수	총계	보조금	자부담	평균 자부담비율
민간경상사업보조	139	27,335.5	20,866.0	6,469.5	13.8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34	4,064.0	3,900.0	162.0	8.9
민간자본사업보조	61	25,652.0	13,474.0	12,166.0	32.9
민간행사사업보조	175	9,301.0	8,247.0	1,054.0	11.9
사회복지사업보조	47	2,861.0	2,448.0	408.0	4.8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3	7,031.0	6,451.0	400.0	1.0
총계	469	76,244.5	55,386.0	20,659.5	14.0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미평가 사업 등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화성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화성시의 지방보조사업은 전체 사업수 중 47.8%인 224개 사업이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과목별로 살펴볼 때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업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부담이 있는 사업만 살펴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가 가장 높은 평균 자부담비율(41.0%)을 보이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법정 운영비보조에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사업은 시립장애전문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영지원 1개 사업으로 자부담비율이 13.5%로 나타나고 있다.

〈표 5-24〉 2018년 화성시 지방보조금(순시비)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자부담 유/무)
(단위: 개, 백만원, %)

예산과목	자부담 있음			자부담 없음	
	사업수	평균 사업비	평균 자부담비율	사업수	평균 사업비
민간경상사업보조	72	204.8	26.4	67	187.9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2	46.0	25.3	22	159.6
민간자본사업보조	49	497.9	41.0	12	104.8
민간행사사업보조	81	53.6	25.7	94	52.8
사회복지사업보조	9	86.8	25.3	38	54.7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1	2,970.0	13.5	12	338.4
총합계	224	213.3	29.2	245	116.2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미평가 사업 등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화성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성과평가 결과, '우수'인 사업이 172개 사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자부담비율은 '매우우수' 등급인 사업이 1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자부담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은 '보통'등급을 받은 사업들로 평균 8.1%의 자부담비율을 보이고 있다.

〈표 5-25〉 2018년 화성시 지방보조금(순시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및 자부담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평가결과	사업수	보조금	자부담	평균 자부담비율
매우우수	164	19407.0	11899.7	19.5
우수	172	26620.0	7566.0	12.6
보통	106	7816.0	598.8	8.1
미흡	17	787.0	137.0	10.7
매우미흡	10	756.0	458.0	14.1
총계	469	55,386	20,660	14.0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미평가 사업 등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화성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화성시는 대부분의 평가수준에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 자부담이 있는 사업보다 많은 수를 보이고 있으며, 평균 총사업규모는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 자부담이 없는 사업보다 높은 규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평균 자부담비율이 가장 낮은 '보통'등급의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사업의 평균 사업비 규모가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는 사업들의 평균 사업비 규모보다 크게 나타났다.

〈표 5-26〉 2018년 화성시 지방보조금(순시비) 성과평가 및 자부담유무에 따른 보조금 및 사업수 현황
(단위: 개, 백만원, %)

평가결과	자부담 있음		자부담 없음	
	사업수	평균 사업비	사업수	평균 사업비
매우우수	82	314.4	82	69.7
우수	81	220.6	91	179.4
보통	48	51.9	58	102.1
미흡	8	78.0	9	33.3
매우미흡	5	204.4	5	38.4
총계	224	213.3	245	116.2

주1: 평균 자부담비율=개별 사업의 자부담비율의 합/사업수

주2: 미평가 사업 등 제외

자료: 2018년 결산기준 화성시 통합재정공시 재구성(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제2절 타 자치단체 심의선정과정 개선사례

1. 지방보조사업자 사업수행역량 확보

1)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비율 기준 강화

최근 지방자치단체는 자부담비율의 기준을 결정하고 이를 의무화하거나 신규사업에 대해 권고함으로써 보조사업자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자부담비율 기준 도입은 사업특성 및 지역 환경에 따라 관계자 간 협의에 의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안동시의 경우 유사한 사업임에도 사업주체나 담당부서에 따라 자부담비율에 차이가 있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에 대하여 자부담비율을 의무화하고 사업유형 및 분야에 따라 기준을 마련하였다.²⁴⁾ 2020년 안동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계획의 편성원칙에 따르면, 안동시는 행사성 사업 자부담비율을 최소 10% 이상 원칙으로 하고 신규 행사축제성 예산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경상적 보조사업의 경우 10% 이상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에 보조하는 자본형성적 보조사업인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50% 이상의 자부담을 의무화하였다. 이 중에서 자본형성적 사업이 가장 많 농·축산분야는 50% 이상 자부담이 의무화하고, 다만 신제품 개발 실험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 30%로 완화해 적용한다. 민간행사사업보조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자부담비율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매년 점진적으로 의무 자부담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실무부서의 검토 시 자부담비율을 정량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먼저 신규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대비 자부담비율이 60% 이상일 때 15점 만점을 부여하고 40%이상 12점, 30%이상 9점, 20%이상 6점, 20% 미만인 경우 최하점인 3점을 부여하고 있어 다른 단체와 비교하여 자부담비율에 대한 요구기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계속사업의 경우 자부담비율의 배점은 10점으로 신규사업보다는 낮으나 자부담을 축소집행하는 경우 -2점의 감점을 부여하고 있다.²⁵⁾

청주시는 2017년부터 20%의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2017년 이후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20%의 자부담을 부여하며, 계속사업의 경우 기존 보조율을 유지하되, 자부담

24) 2019.11.04. 안동시 보도자료, 안동, 들쭉날쭉 보조사업 자부담률 바로 세운다

25) 2017년 안동시 제1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자료,

20% 미만의 사업에 대해 20% 이상의 자부담을 권고하였다. 단, 보훈,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다문화, 市주관 구성·운영단체, 자치단체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는 예외로 한다. 소관부서에서는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 지침 및 법령 등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사업 검토 시 총사업비 대비 자부담비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자기자본부담률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20% 자부담비율을 권고 사항으로 적용해 온 문화예술 행사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자율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중 청주예총, 청주민예총, 청주문화원 3개 예술단체 운영비는 현행대로 자부담을 유지하고, 신규사업인 경우는 행사 축제 및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운영에 따른 시 관리지침에 따라 20% 자부담 의무 부과를 관련부서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원주시의 경우 지방보조금 의무 자부담비율을 20%로 제시하고 있다. 원주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르면, 총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20% 미만으로 신청한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율을 하향조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 자부담 20% 이하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성과평가 시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 시 “사업예산”에 40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중 “자부담비율”은 20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 때, 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이상인 경우에 20점 만점을 부여하며, 20%이상 시 15점, 10%이상 시 5점을 부여한다. 한편, 성과평가 시에는 “사업계획”에 15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중 자부담비율은 “사업추진의 적극성”으로서 5점 만점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50%이상 5점, 49~30% 4점, 29~20% 3점, 19~10% 2점, 10%미만 1점을 부여하고 있다.

2019년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따르면, 총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이 의무적으로 포함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심사항목에서 자부담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2015년 기준 “사업예산(30점)” 영역에서 “자부담비율의 적절성” 항목에 15점의 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50%이상 15점, 40%이상 12점, 30%이상 9점, 20%이상 6점, 20%미만 0점을 부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모든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자부담비율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예산 요구 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에 미반영하는 것으로 조치하였다.²⁶⁾ 국고 보조사업은 자율적으로 적용하나 전액 시비사업은 원칙적으로 10%의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공모사업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삭감 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부담이 없는 사업에 대한 감점을 10점에서 20점

26) 재정지원금 성격의 보조금(민간단체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운영비) 및 소외계층, 장애인 지원 등 생존과 관련된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

감점으로 확대하여 성과평가에서도 자부담비율을 강화하였다.

한편, 의무적이지는 않으나 일정 기준 이상의 자부담을 권고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울산광역시도 민간보조사업의 자부담비율을 10%이상 부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²⁷⁾ 공모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은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예산을 삭감조치하며, 차년도 성과평가 시 자부담이 없는 경우 -20점의 감점조치를 한다.

용인시와 창원시 또한 2019년부터 자부담비율 10%를 권고하고 있으며, 관리지침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는 않으나 담당자 및 지방보조사업자 교육 시 함께 권고기준을 고시하고 있다. 용인시는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사업비 편성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타 자치단체 현황 및 자부담비율 등과 같은 기준을 확보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신규행사성 사업에 한하여 10%의 자부담을 각 부서에 권고하여 현재 부서-단체 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시 자부담비율과 더불어 자부담비율의 근거를 심의위원회에 제시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사업비 편성 기본원칙에 자부담 이행 정착을 명시하여 적정수준의 자부담비율을 부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은 공익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임을 사업공모 시 주관부서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사업자가 총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자부담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표 5-27〉 용인시 지방보조금 사업비 편성 기본원칙 (2020년 기준)

구 분	기본원칙	내용
적정예산의 편성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의 편성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
	자부담 이행정착	- 보조금은 공익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사업자는 총사업비 중 일정금액을 자부담하도록 노력해야 함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비의 편성	지방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 등으로 편성 불가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편성 가능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비로 식비,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홍보비 편성 지양.
예산편성 기준의 명확화	포괄적 예산편성 지양	- 사업예산은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 -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예산편성 공통기준 단가 적용	- 강사료, 원고료, 출장여비 등 용인시 예산편성 공통단가 기준을 준수 -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자료: 2020년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27) 재정지원사업 및 장애인·소외계층 등 생계관련 복지사업 미적용

이 외에도 당진시의 경우 지방보조금 운용토론회를 통해 자부담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의무적 자부담비율은 총 사업비의 5% 이상으로 하되, 민간자본사업 보조의 경우 30% 이상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²⁸⁾

2) 지방보조사업자 자격요건 구체화

용인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와 같은 운영비 사업, 공모제외사업과 일반공모사업 간 지원검토서 표준안에 차이를 두고 있다. 운영비사업과 공모제외사업의 경우 단체검토 평가항목에서 자부담 적절성을 '적절'과 '부적절'로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원단체검토 평가 항목은 크게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적정성', '지원경비의 적정성', '자부담적정성', '동일사업 중복지원여부'로 구분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공모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에는 자부담비율과 관련한 별도의 평가항목이 부재하나,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해당사업의 자부담비율에 관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운영비 산출 및 조정 시에 타 시·군과 유사사업의 예산액 및 현황을 확인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규모 심의 시 함께 검토함으로써 예산편성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고 있다.

지방보조사업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 적정성 검토 후 보조금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교부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개정조례 제 16조 제 1항 제 5호). 이를 위해 지방보조사업 공고문에는 보조금 신청 전 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에 대해 안내하고, 사업 담당부서는 교부 전 보조사업 대상자 체납여부를 세정부서로부터 메모로 보고 및 답변을 받아 최종적으로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성남시 또한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력이 있는 단체나 개인이 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도록 하여 교부대상 사업자의 기본자격요건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²⁹⁾

화성시는 예산편성 및 사업자선정 심의 시 정성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한편, 심사조서는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하여 담당부서 및 예산부서의 판단근거를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모제외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절차제외사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편성의 3가지 심사항목의 세부심사내용에 대해 '적정', '부적정'의 평가결과 대신, 구체적 판단근거를 모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담당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각각의 검토의견을 '적정', '조정', '부적정'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28) 해외연수 보조금 자부담 50%로: 당진시 지방보조금 운용토론회 개최, 의무적 자부담 비율도 5%로 규정, 당진시대, 2019.09.02

29)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표 5-28〉 화성시 지방보조사업 예산편성 심사항목 및 검토결과 (2018년 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검토결과(구체적 판단근거 기재)
사업 심사	단체 역량	설립목적과 보조사업이 부합하는 정도	
		사업 추진 전담인력 확보 등 인력구성의 적정성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친목성 단체 여부 검토	
		최근 2년 이내 공익사업 및 활동 실적	
		조직 구성현황 및 운영 상태, 재정능력의 적정성	
	사업 내용	일몰제(3년) 대상 검토(연속 3년 이상 지원 사업) - 유지 필요성	
		동일한 대상자와 목적으로 유사 중복사업이 있는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행사사업인가? 종교 교리 전파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인지 여부	
		사업계획의 법규 및 사업지침 등 합목적성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일시, 추진방법 등)	
		수혜대상자 선정방법 및 대상범위	
	지역사회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		
	예산 편성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자부담 재원조달 방안의 적정성	
		신청항목의 적정성	
산출기초 및 금액의 적정성			
사업부서 실무심사 검토의견	【종합의견】 적정() 조정() 부적정()		
예산부서 검토의견	【종합의견】 적정() 조정() 부적정()		

자료: 2018년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지방보조사업 선정 시에는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사업필요성과 자격요건에 대한 기본 심사와 단체역량, 사업내용,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 심사로 이루어진다. 지방보조금의 교부 시에는 기존 예산심의결과 및 사업자선정심의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사업여부와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항목별로 파악하여 간단한 내용을 작성하고 여·부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체 관리지침을 통해 교부검토의견서 작성요령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단근거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보조사업자 (단체)명				
사 업 명				
주요사업내용				
신청액	구분	신 청 액(원)	조 정 액(원)	
	보조금			
	자부담액			
조사·검토	대상사업 여부	1.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여부	중복없음 여() 부(○)	
		2. 보조금 지원가능 사업 여부 (국비보조사업은 검토 제외)	법령규정 (화성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지원 조례) 여(○) 부()	
		3. 보조금 지원가능 사업자 여부 (관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여부)	체납사실없음 여(○) 부()	
	사업계획의 적정성	4. 예산지원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사업취지에 적합 법령저촉없음	여(○) 부()
		5.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사업계획 적정	적정 (○) 부적정 ()
		6.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없음	유() 무(○)
		7.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있음	유(○) 무()
	보조금 교부전 확인	8. 보조금 전용계좌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여부, 자부담금 통장사본 확인	조합명의통장	여(○) 부()
		9.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여부	청렴이행서약서	여(○) 부()
총 합 의 건		교부가능(○), 교부 불가능()		

자료: 2018년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그림 5-2〉 화성시 지방보조사업 교부 검토결과서 (2018년 기준)

〈표 5-29〉 화성시 보조금 교부 검토의견서 작성요령 (2018년 기준)

항목	세부항목	작성요령
대상사업 여부	1.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상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존재 여부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행사, 사업인지? -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업인지?
	2. 보조금 지원가능 사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인지? - 공모대상 사업인지 확인, 다음의 경우 공모절차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항목	세부항목	작성요령
	3. 보조금 지원가능 사업자(단체)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로써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중인지?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인지?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인지? - 보조사업자(단체의 경우 대표자와 임원)의 체납(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인한 보조금 지원제한대상은 아닌지? ☞ (징수와, 동부세무과, 특별회계 해당부서)체납조회 확인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기재사항이 법령 및 지침의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 사업계획이 관련 법규, 공직선거법, 기타 개별 법령에 의거 제한은 없는지?
	5.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 내용이 사업목적에 맞는 항목들로 작성되었는지?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 사업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6.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상 산출기초 및 금액의 기재사항의 정확성 확인
	7.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 자부담금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유형별 자원부담기준에 맞게 자부담이 작성되었는지?
보조금 교부전 확인	8. 보조금 전용계좌개설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여부, 자부담금 예치 통장사본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위하여 1개사업에 1개 보조금 전용계좌 개설하였는지? - 계좌의 예금주가 보조사업자(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와 일치하는지? - 자부담금이 포함된 사업의 경우 자부담금을 예치하였는지?
	9. 보조금 관련 서류구비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부신청서 - 사업계획서 - 통장(계좌)사본(또는 계좌번호 지정서) - 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검토자, 확인자	- 검토자는 업무담당 주무관 또는 팀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자료: 2018년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2. 지방보조사업 적정성 검토 및 관리체계 강화

1)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의 강화

용인시는 성과평가 시, 각 평가주체별 역할을 명확화하여 평가인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담당부서에서는 실국소별 우선순위에 따라 매우우수(15%), 우수(30%), 보통(50%), 미흡(5%)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³⁰⁾ '미흡'등급에 대해서는 사업축소 혹은 사업폐지 중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전수평가를 통해 사업부서 평가를 재검증한다. 이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자체평가 결과 하위 5%인

30) 다만, 단년도 사업이나 실국소별 보조사업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절대평가

'미흡' 등급으로 평가받은 사업에 대해서 대면평가를 통해서 심층심의를 진행하고, 심층심의 비대상 사업(매우우수~보통)에 해당하는 95%의 사업에 대해서는 일괄심의를 진행한다. 이 때, 대면심의를 통해 최후진술권을 부여하며 사업의 축소 혹은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보조사업명 [○○○부서명]

보조금 종류	“통계목 기재”		사업유형	“단년도 또는 계속사업”						
지원단체명	(대표자 :)									
지원 근거	“법령, 조례 등”									
예산집행현황 (전 원) •신장 : 월 월 •지원 : 월 월 •정산 : 월 월	연도별	중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2016									
	2017									
2018										
사업부서 평가	등급 :	점수 :	사업지속 필요성 ('미흡' 등급인 경우)			사업축소		사업폐지		
예산부서 최종평가(1)	등급 :	점수 :						○		

자료: 2018년 용인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계획

〈그림 5-3〉 용인시 지방보조사업 성과 및 일몰평가서 (2018년 기준)

최근 성남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사전성과평가를 바탕으로 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검토를 고려하고 있다. 성남시의 이와 같은 외부검토에 대한 관심은 매년 지방보조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기존사업에 대한 감액 및 일몰사업이 없어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성과평가 결과, '미흡'이 하는 일몰에 해당되나 사업부서의 형식적이고 관대한 평가로 자체평가의 실효성이 낮고, 지방보조사업자와 사업부서 담당자가 상호 협조관계로 객관적인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성남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를 사업부서 자체평가로 종결하던 것에서 나아가 외부전문가의 객관적·전문적 평가를 통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고 있다. 외부전문가를 통한 성과평가는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의 5가지로 평가되며, '미흡' 이상의 사업을 20% 이상 추출하여 사업비 감액(10%) 또는 일몰을 적용하는 데에 활용될 예정에 있다.

〈표 5-30〉 성남시 외부전문가 성과평가 결과 활용계획 (2019년 기준)

구분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9-80점)	보통 (79-60점)	미흡 (59-50점)	매우미흡 (50점 미만)
비율적용	총 사업건수 80% 이내			총 사업건수의 20% 이상	
결과적용	사업비 증액 또는 유지	유사사업 통폐합 및 사업비 감액 검토		사업비 10% 이상 감액	사업 일몰

자료: 2019년 성남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용역계획

부천시에는 별도의 지방보조금 자체 관리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준하여 심의선정 기준과 자부담비율 모두 부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 성과평가 시 성과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함으로써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성과평가항목에 보조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효율성과 적절성,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여부 관련한 평가 항목을 포함함으로써 집행의 효율성과 목표달성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타 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여부에 대해서는 타부서 및 부서 내 유사 사업이 있는 경우 각각 감점요인이 된다.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도 같은 부서 내 중복사업자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의 개수에 따라 감점사항을 둠으로써 일부 유형의 사업에 편중되거나 특정 보조사업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명확한 정량적 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5-31〉 부천시 성과평가 지표 (2019년 기준)

분야	운영내용 및 평가지표	배점	평가점수	비고
	총 점	100		
사업 계획 (15)	1-1.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이고 적절한가? ◦ 사업계획의 효율성, 독창성, 지속성	10		
	◦ 사업계획의 지역사회 기여도 및 파급효과	5		
	1-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 수혜자의 중복 ⇒ 같은 부서 내에 사업대상자가 같은 사업이 있는 경우 2개(-1), 3개(-2), 4개이상(-3)	5		
	◦ 타 사업과 내용의 중복 ⇒ 부서내에 같은 내용의 사업이 있는 경우(-2) ⇒ 타부서에 같은 내용의 사업이 있는 경우(-1)	3		
	2			
사업 관리 (25)	2-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 사업추진 체계성, 전문성, 공정성 등 운영과정	5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기한 준수여부 ⇒ 15일 이내 지연(-1) 한 달 이상 지연(-2)	3		
	2			
	2-2.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는가?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형식적 완성도(기준서식 작성 등) ⇒ 품의서 또는 결과증빙서류 누락 2건 이내(-1), 3-4건(-2), 4건 이상(-3)	15		
3				

분야	운영내용 및 평가지표	배점	평가점수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계획대로의 예산집행 여부 ⇒ 계획변경 없이 당초 계획대로 예산집행 : 5점 ⇒ 사전 승인을 통해 예산집행 계획 변경 1회(-1), 2회(-2), 3회(-3), 4회 이상(-5) ⇒ 임의변경 예산집행 1회(-7), 2회(-10), 3회이상(-1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처리 준수 여부 ⇒ 자부담비율 미준수(-3) ⇒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 누락 지적횟수 2회이하(-1), 3건(-3), 4건(-5), 5건이상(-7) 	7		
	2-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절감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되어야 점수 부여 가능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감 항목이 없을 경우 : 0점 ◦ 보조금의 10%이상(5점), 8%(4점), 6%(3점), 4%(2점), 2%(1점) 			
	2-4.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하거나 집행기준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는가?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수액 ⇒ 교부액의 5%미만(-5), 10%(-10), 15%(-15), 20%이상(-20) ◦ 지적액 ⇒ 교부액의 5%미만(-5), 10%(-10), 15%(-15), 20%이상(-20) 			
	3-1.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양) 달성도 ⇒ 계획대비 100% 달성시 만점(10% 미달시마다 2점 감점) ◦ 사업목표(질) 달성도 ⇒ 목표에 맞게 행사 진행시 만점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수해도 및 주민목구 충족도 ⇒ 사업계획(양) 달성도 -2점 감점시마다 -1점씩 감점 ◦ 사회문제 해결 및 해당분야의 파급효과 ⇒ 사업목표(질) 달성도 -1점 감점시마다 -1점씩 감점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성 및 향후 지속 필요성 ⇒ 상(5), 중(3), 하(1) ◦ 단체의 수행능력 ⇒ 상(5), 중(3), 하(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성 및 향후 지속 필요성 ⇒ 상(5), 중(3), 하(1) ◦ 단체의 수행능력 ⇒ 상(5), 중(3), 하(1) 	5			

자료: 2019년 부천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서식

2) 성과평가 결과의 환류 기준 세분화 및 실효성 강화

안동시는 성과평가 환류 계획에 예산삭감기준 기준 및 삭감수준, 사업폐지 기준을 명확화하고 있다. ‘미흡’등급으로 평가받은 사업은 10%이상 예산을 삭감하고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매우미흡’인 사업은 20% 예산 삭감과 함께 개선 대책 혹은 사업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3회 연속 ‘미흡’등급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사업폐지를 원칙으로 하였다. 계속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검토 시에는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를 총 100점 중 20점 배점으로 하여 ‘매우우수’인 경우 20점 만점을 부여하고, ‘우수’는 16점, ‘보통’ 12점, ‘미흡’ 8점, ‘매우미흡’ 4점을 부여하여 선정기준에 차등을 두고 있다.

〈표 5-32〉 안동시 지방보조금 평가결과 반영계획 (2018년 기준)

매우우수~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계속지원 및 장려	전년 수준으로 지원	10%이상 예산 삭감 개선 대책 마련	20%이상 예산 삭감 개선 대책 마련 또는 사업폐지 검토
		3회 연속 '미흡'등급 이하 평가 시 원칙적으로 폐지	

자료: 2018 안동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계획

한편, 최근 부산광역시시는 2019년 6월 '지방보조금 사업 관리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미흡사업에 대해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운영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무엇보다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One-strike-out제', 'Yellow Card제', '삼진아웃제'를 도입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였다.

먼저 성과평가 시 '미흡' 등급의 사업비율을 의무적으로 15%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년도 예산편성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미흡' 등급사업은 15%이상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과평가지표에 있어서도 기존 성과분야 배점 35점에서 60점으로 배점의 수준을 높이고 감점 배점도 -45점에서 -120점까지 확대하여 엄격한 성과관리체계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한편, 보조금 일몰제평가와 관련하여 '미흡'등급 15%에 속한 사업에 대해 예산삭감 또는 지원중단한다는 기존의 방침에서 '미흡'사업 5%는 지원을 중단하여 예산삭감 및 지원중단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다.

〈표 5-33〉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등급 및 비율 (2018년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점수	95점 이상	94-90점	89-80점	80점미만
등급배분	5%	25%	55%	15%

자료: 2018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개선계획

보조금 부정수급 10대 유형³¹⁾에 속하여 교부결정 취소 시 차년도 보조금 성과평가 시 '미흡'등급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One-strike-out). 기타(협회의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되어 교부결정이 취소된 고의·중과실 부정수급자는 1차 적발 시 예산을 15% 삭감하고 2차 적발 시에는 지원을 중단하는 Yellow Card제를 적용한다. 단, 감사관실 수시감사, 수사기관 통보, 사업부서 자체점검 등에서 부정수급 환수액이 1백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Yellow Card 적용 없이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는 One-strike-out제를

31) 허위신청(허위인력), 허위신청(허위소득·재산), 허위신청(기타), 허위출결, 가격 부풀리기, 자부담 회피·대납, 바우처카드 허위결제, 목적 외 사용, 정산서류 조작, 중요재산 임의처분

바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행정상 오류, 단순과실과 같은 광의의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되어 환수조치된 사업자의 경우에는 '미흡' 등급을 적용하고 1차 위반 시에는 15%의 예산 삭감, 2차 위반 시에는 50%의 예산을 삭감하며, 3차 위반 시에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삼진아웃제).

서울특별시는 1차 성과평가 시 평가등급을 세분화하고 등급비율을 조정하였다. 특히 미흡(부진)사업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여 부서별 자체평가를 시행하며, '미흡'(20%)사업은 사업의 '지속', '축소', '폐지' 중에서 결정하여 '지속', '축소' 사업에 대해 2차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서울특별시는 성과평가를 기존 6월에서 4~5월에 시작하도록 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상반기에 심층평가까지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심사결과와 예산편성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였다.

3) 사업근거의 마련

행정안전부의 관리기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 17조 및 제 32조의 2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방보조금은 사업근거가 모호하고 명확한 선정기준이 부재하다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법령근거가 없는 단체운영비 예산 요구 시에는 삭감 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센터 운영비가 지원되는 등 과목이 잘못 편성된 사항을 파악하여 과목경정하도록 하였다. 조례 등의 근거 규정이 없는 민간보조금 사업은 우선 조례 제·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지원중단 조치하도록 개선하였다.

울산광역시 또한 부산광역시와 마찬가지로 법령근거 없이 단체운영비 지급예산 요구 시에 예산을 삭감조치하며 잘못 편성된 예산과목의 경정조치, 조례 제·개정을 통한 민간보조금 사업의 근거규정의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3. 지방보조금 심의체계 효율성 강화

1) 심의위원회 전문성 및 운영효율성 확보

부산광역시는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개선으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기존 3개 분과 위원회에서 5~6개의 분과위원회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성과평가에 대해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온 분과위원회의 심의범위를 예산심사에도 확대운영하도록 하였다. 분과위원회는 기존 6명에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8-9명으로 추가 위촉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단계부터 사전심사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사전심사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집중심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1인당 심사안을 축소하고 회의소요시간을 단축하였다. 또한 심의위원회 위원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위원 수 확대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분과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울산광역시 역시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과 사업비 지출과 사업성과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도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나 2017년 이를 폐지하고 단일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복지, 교통, 환경 등 10개 분야별로 인력풀을 구성하였으며(총370명), 회의 구성 시 분야에 맞는 전문위촉직 위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 운영방법을 개선하였다.

2) 집중심사 환경 조성

안동시는 행사·축제성 사업은 신규사업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부서별 총액한도제를 부활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시민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하여 평가 및 관리하고자 하였다. 농업 분야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자체 구축하여 사업신청부터 확정까지 정보시스템 관리를 통해 집행 및 관리에 있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다.³²⁾

부산광역시는 사전심사를 활성화하여 전체 회의에 대한 심의 부담을 완화하고 집중심사를 통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심의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전심사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전심사를 장려하고 있다. 사전심사수당은 안전에 대하여 ‘가능’, ‘부결’, ‘수정’, ‘부대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 심사의견으로 인정하여 지급하며, 지급 근거는 예산편성계획 및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 15조, 「부산광역시 소청심사 사전연구수당지급 조례」 제5조를 준용한다.

〈표 5-34〉 부산광역시 심의안건 수당지급기준 (2018년 기준)

구분	기준	변경
심의안건기준	최대 200건 초과	최대 301건 이상
지급단가	최대 300,000원	200건 초과 300건 이하 250,000원 301건 이상 300,000원

자료: 2018년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개선계획

32) 2019.6.10. 안동시보도자료, 안동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3월 지방보조금 제도개선 계획에서 제도운영의 효율화,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조사업 지원기준을 명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소규모 연례 반복사업 등³³⁾에 대해 서면심의를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개정조례 제 7조 제 3항). 심의절차를 살펴보면, 예산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 5일 전 사업(예산)부서로부터 심의위원에 심의자료를 배부하며, 분과위원회 개최 전까지 분과위원별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고 사업부서는 보완자료를 제출한다. 분과 위원회에서는 분과별로 대면 및 서면심의가 이루어지며 보완된 자료와 함께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전체심의가 이루어진다. 공모대상 사업이 예산편성 전·후에 심의되어 심의건수가 증가하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보조사업자를 공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거나 연초부터 시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공모 후 예산편성을 추진 하도록 하였다(개정조례 제 4조 제 3항). 이러한 사전 공모 확대를 통해 중복심의를 해소하고 위원회 운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서울특별시도 평가체계를 1차와 2차 평가를 나누어 1차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2차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유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을 재심의 한다. 하위 20% 사업(공공보조, 민간보조)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실시하며, 심의대상은 1차 평가 결과, 계속사업의 '미흡'사업 중 '지속', '축소'로 평가한 사업에 해당한다. 서울특별시는 2018년 시행 후 전체 3개년 계속사업에 대해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3) 합리적인 심의위원회 운영

울산광역시도 2019년 11월 지방보조금 관리개선 계획에 따라 기존 최종예산안 결재 하루 전 또는 당일에 이루어지던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시기를 최소 5일 전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조정하여 예산심의 및 결정이 보다 신중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방보조사업 예산요구 및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에 보조금 교부시점에 검토하던 사업 계획서를 예산편성 전에 검토하도록 사전심사를 강화하였다. 심의위원회 개최횟수도 확대하여 당초예산 기준 1회 진행되어온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횟수를 실국별로 나누어 2회 개최하도록 하였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3개 분과위, 전체회의)에 대해 매월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일정에 대해 사전 예고하고, 심의위 연간일정을 공개하는 등, 심의일정을 예측가능 하도록 하여 심의 준비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와 부서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행정시의

33) 국비 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다초 예산대비 30% 이하 증액사업(추경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예산편성 시), 보조금 지원규모 500만원 이하 연례 반복사업·공모사업(전년대비 증액이 없는 사업)

심의건수가 많은 경우 행정시에 방문하여 추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에 대한 사전 공모를 독려하여 보조사업 심의를 적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였다.

제3절 타 자치단체 사례 쟁점분석

1. 유사자치단체 지방보조금 현황 및 쟁점

1) 지방보조금 규모 및 비중의 감소 경향

수원시는 경기도내 유사자치단체 중 지방보조금 규모와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인다. 특히 수원시는 2018년 이후 경기도내 지역 중 지방보조금 총 예산규모가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하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관리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내 유사자치단체는 대체로 세출결산액의 증가율이 지방보조금의 증가율보다 높아 지방보조금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지방보조금 규모와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와 화성시는 최근 지방보조금 규모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간 성남시, 부천시, 화성시는 지속적으로 수원시보다 낮은 지방보조금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성남시는 다른 유사자치단체와 비교하여 0.5배 수준의 낮은 지방보조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용인시의 지방보조금 비중은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 보조의 감소와 지방보조금 관리개선노력에 따라 2018년 전년 대비 큰 감소폭을 보이며 성남시와 유사한 수준의 지방보조금 비중을 나타냈다. 한편, 고양시는 유사자치단체 중 높은 지방보조금 비중을 보이거나 수원시와 비교하여 가파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2) 적정 자부담비율 부담의 한계

자부담비율 측면에서는 공통적으로 심의·선정 시 자부담 권고 혹은 의무화 비율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지방보조금이 민간의 공익적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성격의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없는 사업의 비중이 매우 높고 평균 자부담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수원시를 비롯한 유사자치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자부담비율은 사업부서 자율에 맡기고 있었으며, 자부담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용인시의 경우에만 10%의 자부담을 사업부서에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용인시의 평균 자부담비율은 16.6%로 수원시(14.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화성시가 14.0%로 수원시보다 낮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 그 외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수원시보다 낮은 평균 자부담비율을 보였으며 지방보조금 자부담비율 강화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사업규모가 높은 사업유형의 평균 자부담비율이 높고, 우수한 성과평가결과를 받은 사업이 평균 자부담비율이 높게 나타나 합리적인 자부담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자본 형성적 특성을 지니고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 많아

평균 사업비가 높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타 유사자치단체의 평균 자부담비율이 수원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과평가 측면에서 용인시, 성남시, 화성시에서는 ‘매우우수’ 사업의 평균 자부담비율이 낮은 등급의 평균 자부담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타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쟁점과 개선방향

최근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심의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자부담비율 강화 및 지방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명확화

타 자치단체들은 지방보조사업자 적격성 확보를 위하여 자부담비율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크게 자부담비율을 통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심사조서 작성을 통해 정성적 평가를 보완하고 있었으며, 체납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제한 자격은 조례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명확화하였다.

(1) 자부담비율 의무화 및 최소기준 권고

먼저 최근 여러 자치단체에서 자부담비율을 의무화하거나 각 담당 사업부서에 권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부산광역시 및 전라북도과 같은 광역단체 뿐만 아니라 안동시, 청주시, 원주시 등 기초단체에서도 자부담비율을 10%~20%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업에 따라서는 50%의 자부담을 의무화하기도 하였다.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 안동시는 자부담비율을 최소 10% 이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지방보조사업 선정이나 예산편성 시 자부담비율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거나 기존 기준을 확대 강화하였다.

안동시는 점진적으로 자부담비율을 높여갈 계획에 있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경우 50% 이상의 자부담을 의무화하되 이 중 일부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 30%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청주시와 원주시는 20%이상 자부담 의무부과를 추진하고 신규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자부담 의무화 지역들은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등 생존과 관련된 복지사업에 대해서 대체로 예외를 적용하고 있으며, 청주시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각 지방보조금 자체지침에 예산편성원칙으로 자부담비율을 제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용인시, 창원시, 울산광역시와 같이 자부담비율을 의무화하지는 않더라도 10%로 각 부서에 권고하는 지역도 나타났다. 이들 지역 또한 의무화 지역과 마찬가지로 신규사업부터

적용해나가고 있으며, 관련교육과 담당부서-보조단체 간 협의를 거쳐 자부담비율 확대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구체화

한편으로는 예산편성 및 지원단체 검토 평가를 위한 항목을 구체화하고 지원제외대상에 대하여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예산심의나 사업자선정 평가항목이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정성적이라는 한계는 있으나 용인시는 예산편성 시 운영비사업, 공모사업, 공모제외사업 간 지원단체 검토 평가 항목에 차이를 두고, 운영비 산출 및 조정 시에 타 자치단체의 유사사업 예산액 및 현황을 확인하여 지원규모 심의 시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객관적 기준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화성시는 예산편성 및 사업자 선정 심의 시 모든 평가항목별로 심사조서를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하여 판단근거를 세부적으로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성적 평가의 한계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지방보조사업 교부 검토 시에도 유사하게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작성요령이나 판단근거를 자체지침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3) 지방보조사업자 기본 자격기준 제도화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기본심사 등이 정성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체납자 등 부적격 사업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제한적이거나 시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나 성남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도록 지방보조금 조례 내 교부결정 관련 조항에 명시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자격요건을 제도적으로 제한하였다. 이들 지역은 지방보조금 교부대상 결정 시에 체납여부를 검토하고,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보조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사업지속성 검토대상 확대·강화 및 지원근거 재검토

지역의 특성과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적절한 지방보조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는 심의 시 활용될 성과평가 체계를 세분화하고 해당 결과가 환류될 수 있도록 삭감 및 지원 중단 원칙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업근거를 재검토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1) 성과평가 항목 세분화 및 평가체계 효율화

집중심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인시는 평가주체별 역할을 명확히 분류하여 평가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성남시는 외부전문가의 사전 성과평가를 고려하고 있다. 부천시도 성과평가 항목을 세분화하고 정량화된 평가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업의 유사중복을 확인하고 같은 부서 내 중복사업자가 있는 경우 감점하여 사업이 특정 유형에 편중되거나 한 사업자가 중복하여 보조금을 수령하지 않도록 하였다.

(2) 심층검토대상 확대

형식적인 성과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흡’ 이하 등급의 비중을 확보함으로써 심층검토대상을 확대하기도 하였다. 앞서 유사자치단체들의 성과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대부분의 지역이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보통’등급 이하 사업비중이 높지는 않았으나, 용인시는 상대평가를 통해 ‘미흡’등급 사업 비중을 일정비율 유지함으로써 대면심사를 거칠 심층검토대상을 확보하였다. 부산광역시도 ‘미흡’ 등급의 사업비율을 의무적으로 15%로 정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15% 이상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미흡’등급 사업의 비중을 기존보다 확대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성과평가시기를 기존보다 앞당겨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성과평가결과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모호한 표현을 지양하고 성과평가 등급 내에서도 적용대상을 세분화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안동시와 부산광역시는 ‘미흡’ 이하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하위사업 내에서도 심층검토와 원칙적 폐지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삭감 및 지원중단에 대한 원칙을 강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안동시는 연속으로 ‘미흡’등급으로 평가 받는 경우, 부산광역시는 부정수급 수준과 환수액, 횡수에 따라 사업의 폐지 또는 지원중단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3) 지방보조사업 근거규정 재검토

한편으로는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근거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사업근거 검토를 통해 과목편성이 잘못된 경우 경정조치하고 법령근거가 없는 단체운영비 예산을 삭감조치하였다. 근거규정이 없는 사업은 조례 제·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중단 조치하도록 하였다.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및 지원 기능 강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위원 확보와 분과위원회 기능 확대, 집중심사를 위한 사전심사대상 확대와 같은 다양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심의위원회 일정조정이나 회의준비에도 편의를 도모하여 보다 능률적이고 예측 가능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1) 분과위원회 확대 및 외부전문가 확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는 분과위원회의 확대를 모색함과 동시에 외부 전문위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외부전문가를 추가 위촉하고, 행정안전부에 위원 수 확대 법령개정을 건의하거나 분야별로 인력풀을 구성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심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이와 더불어 기존 분과위원회를 분야에 따라 보다 세분화하여 구성하고, 성과평가에 국한되어있는 분과위원회의 활동을 예산 심사에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2) 사전심사대상 확대

한편, 심의위원회가 주요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사전심사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부산광역시는 사전심사를 위한 수당 지급기준을 개선하여 외부전문가의 사전심사를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소규모 반복사업을 중심으로 서면심의대상을 확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평가체계를 2회로 나누어 1차 평가에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2차 평가 시 심층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예산심의를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 전까지 분과위원별로 사전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사업부서가 보완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전체심의가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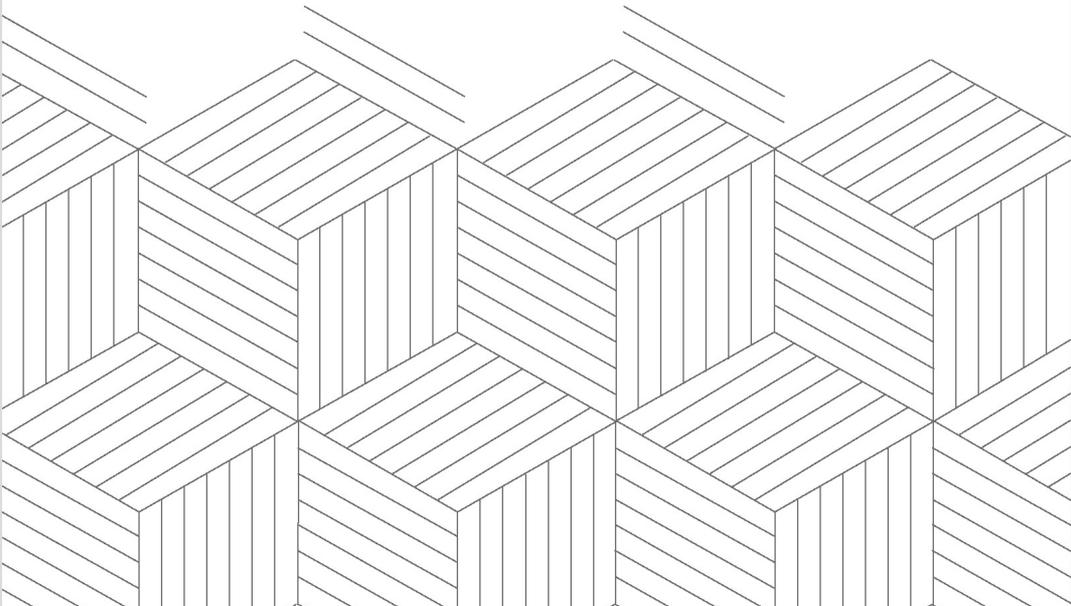
(3) 심의위원회 일정 및 개최횟수 유연화

심의일정을 유연성 있게 조정하고 사전 공지함으로써 심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원활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울산광역시는 예산안 결재일을 앞두고 심의위원회가 촉박하게 개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심의위원회 개최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심의일정을 사전예고하고 공개함으로써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심의건수와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가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전 공모를 독려하여 공모대상 사업이 예산편성 전·후에 심의되어 심의건수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원회 운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의 쟁점과 한계
제2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의 쟁점과 한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원시 지방보조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한편, 사업수는 감소하고 있어 사업 대비 지방보조금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보조금은 사회복지분야 보조사업이 사업수와 예산규모 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자부담비율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주민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오늘날, 지방보조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체 지방보조사업 비중과 비교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의 비중이 높아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에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수원시는 유사자치단체 대비 지방보조금 교부액의 규모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담당 공무원과 예산부서는 다수의 소규모사업을 모두 관리하기에 인력 및 자원의 한계에 당면해 있다. 심의위원회 또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역량과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고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복잡한 정산 및 집행과정에 의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의도하지 않게 정산을 누락하거나 환수규정을 어기는 등의 실수가 나타나기도 하며, 사업자 선정기준이 모호하거나 유사사업임에도 집행기준에 차이를 보여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지방보조금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와 실무적 요구에 비추어볼 때,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 선정과정과 관련된 주요 현안은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 적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제도 미흡

수원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선정 시 정성적 기준에 의존하고 있어, 활동실적평가나 자부담 비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다. 지방보조사업자의 특성 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아 수익사업이 별로 없고 영세한 단체로 이루어져 있어 사업자의 사업역량에 대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부여하기 어렵다는 실질적 문제점도 존재하였다.

지방보조사업은 지역 내 단체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경쟁률이 낮아 역량 있는 사업자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수원시 지방보조금의 평균 자부담비율은 감소추세에 있다. 특히 사업규모가 클수록 자부담비율이 낮아 지방보조금 규모의 증가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는 사업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수행의지를 가진 사업자가 공공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과 사업의지를 지닌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2. 지방보조사업 적정성 검토의 실효성 부족

수원시는 심층심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작은 규모의 사업이 많아 사업수가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사업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분야별로 심층검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난 3년 간 수원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보통’ 이하 등급을 받은 사업수와 사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사업의 90% 이상이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원시 지방보조금은 계속사업 위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성과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관행적인 보조금 지급에 대한 지적이 존재하였다. 수원시는 일몰제 적용 원칙에 따라 폐지된 사업도 현저하게 적게 나타났으며, 감액 및 지원중단 검토대상임에도 증액되기도 하여 성과평가 결과가 사업 지속성 검토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기존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일몰제 적용이 형식적으로 이루지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례나 지침보다 법령에 근거한 지방보조사업 비중이 높아 사업자 선정이나 집행정산 기준의 모호성이 높아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근거가 미흡한 사례가 존재하였다. 지방보조사업이 분야별 법령에만 의존하고 있어 사업자 기준에 대한 구체성이 미비하여 사업의 구체적인 취지가 사업근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에 있다. 유사사업 간 사업비의 차이가 존재하는 등 예산편성기준이 미비하고 사업목적과 내용의 타당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즉, 지방보조사업자가 단순히 행정사업의 대행에 불과하여 지방보조금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하고 정책목표를 실현하며 경제적·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사업의 검토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심의선정과정의 합리적 운영체계 및 지원환경 미비

수원시는 지방보조금 운영편람을 통해 세부적인 자체 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자 자격에 대한 정성적 기준의 구체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지원 측면에서 예산 편성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집중심의 및 검토가 용이하지 않고, 지방보조사업의 성과 평가 결과가 심의과정에 원칙에 따라 검토·반영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2개 분과위원회가 각각 여러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예산심의 시에만 분과위원회가 활용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심의안건수에 비해 심의위원수가 적고 심의시간이 촉박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검토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법적 제한에 따라 심의위원수를 추가로 위촉하는 데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며, 외부 전문위원이나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약하여 분과위원회 규모의 적정성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

한편, 심의시간이 촉박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시간이 부족하고 추가자료 보완이나 개선사항 반영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심의위원 간 일정조정에도 어려움이 있어 심의위원회를 적시에 개최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도 실무적인 어려움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한된 환경 하에서 심의위원회가 신속하면서도 내실 있는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운영체계를 효율화하고 합리적인 심의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절 수원시 지방보조금 심의선정과정 개선방안

1. 지방보조사업자 적격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1)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

(1)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 확보

수원시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적격성을 사업 담당자 및 예산부서가 기본심사 및 사업심사에서 '적정'·'부적정' 또는 '상'·'중'·'하'로 판단하여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선정기준에 각 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판단기준이 미흡하여 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에 어려운 경향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모호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무심사서에 의존하여 많은 안건을 검토해야하므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먼저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적정 자부담비율, 이전사업경험, 유사중복여부 등에 대한 정량적 기준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담당부서는 사업분야와 대상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기본 자격과 관련하여 가(감)점 기준을 결정하고, 총 평가배점과 각 비율구간별 배점 등에 대하여 보다 타당성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자부담비율이나 예산규모에 있어서 타 자치 단체의 유사사업과 비교분석하는 등 예산편성 시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지방보조사업이 지향하는 목표에 따라 사업의 유형과 시행방법이 다양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일괄적 기준에 의한 평가지표를 확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분야, 예산과목, 공모·비공모 등의 사업수행방식 등을 고려하여 선정 평가지표를 차별화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실적으로 평가지표 마련이 어려운 경우 적어도 예외규정에 구체성을 제고하여 임의로 예외단체를 선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정성적 지표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한편, 정성적 항목에 대해서는 담당자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제공하는 것이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수원시에서는 지방보조금 운영편람을 통해 비목 내 변경사용 등 일부 모호한 조례 항목이나 지침에 대하여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단계별 평가항목이나 검토 기준에 대한 판단근거에 대한 가이드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심사조서 작성과 교부검토 시 담당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작성요령과

체크리스트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할 항목이 누락되거나 동일한 계속사업에 대해 담당자에 따라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지방보조금운영편람 등을 통해 예산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교부검토 시 검토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담당자가 업무에 참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성적 항목에 대해 건수나 금액, 비중 등 정량화된 기준을 일정수준 제공하여 일관된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 기본자격요건에 대한 제도적 근거 확보

현재 부정수급이나 지방세 체납과 같이 지방보조금의 취지를 저해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의 요건을 발굴하고 조례 및 지침 등에 지원제외 혹은 교부제외대상으로 명시하여 선정심의과정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준하여 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편람에서는 기본 심사와 사업심사를 정성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이중 기본 심사항목은 사업필요성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자격요건 중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고 이 중 하나라도 저촉되는 경우 사업자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자격요건 항목에는 ‘지원신청 자격요건 해당유무’,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해당 유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기본심사항목 중 자격요건과 관련된 항목들을 대상으로 법제도화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검토해볼 수 있다. 특히 체납여부와 같은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과 관련하여 다른 유형의 보조금 조례를 참고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수원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방보조금 교부 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 항목을 추가하고 역량을 갖춘 지방보조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는 정보가 구축되어야 한다. 자기부담액의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과 이전사업경험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역량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부단계에서 사업계획서와 달리 자부담 능력 등 자금조달계획을 실질적으로 증빙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역량에 대한 재검토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사업신청서와 교부신청서 등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사업역량을 갖춘 지방보조사업자 확보

(1) 적정 자부담비율 권고 및 의무화

사업자 간 경쟁률이 높지 않은 여건 하에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의지와 예산집행역량을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자부담비율을 활용하고 있다. 자부담비율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부담능력의 편차가 크게 되면 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및 형평성 문제와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는 자부담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의무화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10% 수준의 자부담을 부여하고 있고 적게는 5%, 많게는 특정 사업분야에 한해 50%의 자부담을 부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자부담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0%인 경우도 있어 적정수준의 자부담에 대한 합의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행사사업보조를 중심으로 한 타 자치단체의 자부담 의무화 수준이 약 10~20% 정도이며, 수원시의 경우 평균 자부담비율이 각각 약 14%, 19% 정도이므로 10~20% 수준의 자부담비율 권고 또는 의무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자부담비율을 의무화하는 대신, 권고사항으로 하여 사업담당자와 지방보조사업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예산부서에서 먼저 자부담비율을 권고하고 이를 관리지침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함으로써 적정 자부담비율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보조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자부담비율을 결정하고 홍보와 교육을 통해 자부담비율을 정착시킬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부담비율 기준은 신규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적용하고, 자부담 집행, 정산 등과 관련된 교육을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적정 자부담비율 기준 및 예외기준 합의

적정 자부담비율의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규모, 예산과목, 사업분야를 고려하여 자부담비율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자부담 예외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등에 자부담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심의선정 시에 정량적 지표를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 이 때, 지방보조금 자부담비율은 경제적·사회적 환경에 따라 지역주민의 수요가 다양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성격에 차이가 있어 일괄적으로 부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의 특성에 맞도록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부담비율과 관련하여 전문가 및 실무자, 보조사업자의 자문결과, 공통적으로 모든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자부담비율 적용은 지방보조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의 민간부문 활성화 및 자치분권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세한 민간단체에게 과도한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민간부문 활성화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존재하였으며, 무리한 자부담비율 적용은 자부담액 확보를 위한 보조사업자들의 또 다른 편법과 불법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타났다. 대부분의 지방보조사업이 수익이 저조하거나 수익창출이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자부담비율 등 예산집행역량과 같은 일부 항목에 있어서는 정량 기준을 세분화하여 점수화하는 것보다 최소충족수준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었다. 이 때 사업 유형별자부담 여부, 자부담 권고 및 의무화 비율에 대한 결정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적정기준의 자부담비율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단체, 담당부서 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통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이 지역주민들에 필수불가결하고 민간이 부담하게 할 때 사실상 수행되기 어려운 사업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규모가 영세하고 수익이 없는 경우가 많아 지방보조사업자가 영세한 개인 예술인이나 단체인 경우 자부담비율이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된 자부담비율 의무화 예외 단체 및 사업유형을 바탕으로 예외규정을 명확화하여 무리한 규정적용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반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실무경험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예외규정 남발로 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또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규정되어야 한다.

3)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교육 및 모니터링 강화

(1) 지방보조금 제도 및 지원규정에 관한 교육 강화

지방보조사업자 및 전문가 자문 인터뷰결과, 현재 제공되고 있는 예산편성 및 운영상 가이드라인을 보다 상세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수원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자부담 지출항목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방보조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예산계획 수립 시 지출항목에 보다 자율성이 부여되고 사후 증빙자료가 보다 간소화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지방보조금운영편람 및 각 부서의 사업안내를 통해 자부담 등에 대한 예산편성, 집행, 회계처리, 정산 및 반납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며, 제도 운영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사전 교육도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자부담비율 등 예산편성, 정산 및 반납 절차에 대한 실무지침과 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교육 참석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이와 같은 교육은 효율적인 집행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지방보조사업자의 기초적인 역량을 배양하여 사업역량이 확보된 지방보조사업자를 양성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사업의 특성에 적합한 개인 및 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즉, 교육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명확하고 세부적인 규정과 지원대상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등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지원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지원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기본적인 책임성도 확보할 수 있다.

(2) 지역사회 모니터링을 통한 지방보조사업자 정보 축적

한편, 지방보조사업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모니터링체계가 필요하다. 집행과정에서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고 이러한 성과는 예산편성과 보조사업자 심의선정 시에 반영되므로 선순환구조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모니터링은 사업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크게 자체 모니터링과 외부 모니터링으로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인력과 비용이 수반되어 구축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특히 지방보조사업은 소규모 사업이 다수로 진행되고 있어 모니터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행정안전부는 부정수급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각 자치단체들은 이에 대응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과 같은 지역단체들과 협력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운영과정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과정에 있다. 또한 신고포상금 제도와 보조금 표지판 조례 등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시 또한 좋은시정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 기구 및 지역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모니터링하고,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의 모니터링 방법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고 모니터링의 필요성 및 제보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 요구된다. 모니터링 결과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성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결과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궁극적으로 사업자 선정심의 시 활용되어 사전에 적절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방보조사업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사업지속에 대한 재검토 체계 강화

(1) 사업지속성 집중검토 실시

현재 수원시 성과평가는 정량적 지표가 구축되어 있고,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보통’ 이하의 감액이나 중단검토가 필요한 사업이 감소하고 있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 점수, 사업기간,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집중검토대상을 선정하여 해당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집중검토 대상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원시 지방보조금은 감액 또는 폐지 대상이 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뿐만 아니라 이후 감액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폐지나 감액에 대해 원칙을 세우고 엄격한 검토를 통해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미흡’등급 이하의 사업을 현실성 있게 세분화하여 기존의 ‘검토’ 권고보다 ‘감액·중단원칙’ 준수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또한 상대평가를 통해 ‘미흡’등급 이하 사업의 비율을 확대하여 집중검토 대상이 되는 사업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사회복지분야 및 운영비와 관련 사업에서는 ‘미흡’이하 사업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등 심층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원이 지속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관행적 지급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하위사업에 대해서 사업지속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상대평가 기준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년 특정분야를 선정하여 주기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체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집중검토를 진행하는 방안이 전문가 의견으로 제시되었다. 현재 지방보조금 제도 하에서는 인력과 자원의 한계가 있어 모든 계속사업을 매년 심층적으로 검토·평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업의 분야, 특징, 주관부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테마나 기준을 설정하고 일정주기가 돌아오면 해당 유형의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2) 성과평가 강화 및 평가의 타당성 확보

지방보조사업의 평가조직은 내부통제기제의 강화와 더불어 정책환류기능의 내실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수원시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대체로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검토가 일시에 간략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총괄부서인 예산부서에서는 단순 확인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평가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총괄부서인 예산부서의 별도 평가항목을 제시하거나, 용인시와 같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각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의 체계 개선을 통해 평가체계를 효율화하는 한편으로는 내부 조직이 자치단체장의 의사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외부조직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의 인력과 심의시간 부족을 감안할 때 모든 평가를 심의위원회에서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평가위원회나 평가전담조직을 별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성과평가 시 외부조직을 활용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신뢰를 담보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에 용이하다. 외부 평가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방안으로는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하거나 외부평가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외부평가기관이나 전문가 위촉과 관련하여 조례 등으로 지정하여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외부 인력이나 조직 확보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은 경우 주기적으로 외부기관의 전문 평가용역을 시행하여 재정비하는 방안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성과평가 환류원칙 준수

(1)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성과평가 환류방안 명확화

지방보조사업은 성과평가가 관행적이고 형식적으로 수행되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자 선정 단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미흡’ 이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되기도 하는 등 일몰제 적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즉, 제도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의 평가결과는 차년도 사업 추진에 환류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는 일정기준만 충족하는 경우 계속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적정수준의 자부담 의무화 기준이나 성과평가기준을 합의하여 정립한다 해도 기준만 존재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사업자 선정 및 사후 환류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면 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론화 과정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타당성 있는 환류 기준과 방안을 마련하고 원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원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사업자 선정 심의조서에는 ‘이전 사업성과 및 성과평가’ 항목에 이전년도 성과평가를 기입하도록 되어있지 않아 담당부서별로 성과평가결과 기입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또한 담당자가 성과평가와 별개로 심의조서 작성을 위한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어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고, 단순히 건수나 집행금액만을 실적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 따라서 성과평가의 정량적 수준에 따라 사업자 선정 심의 시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하거나 일정수준 이상의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예산심의 및 보조사업자 선정 시 성과평가 반영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점수 및 등급에 따른 적정수준의 가(감)점 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정심사 시 그 배점이 지나치게 작은 경우에는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할 유인이 감소하므로 성과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보조사업자가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기보다 관행적인 보조금지급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관계자 간 합의를 통해 배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예산심의 일정을 고려한 성과평가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평가검토 안전에 대해 심층적으로 심의하고 이러한 결과가 차년도 예산편성과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격적인 예산심의 일정에 맞추어 성과평가를 완료함으로써 심의과정에 성과평가결과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어야 한다.

수원시에서는 일부 비공모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가 완료되지 않고 예산편성이 진행되는 바 예산편성 심의 이전 성과평가가 완료되지 않는 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례와 같이 성과평가를 상반기에 완료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 집행과정 상 성과평가를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전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판단근거를 제시하거나 사업 집행을 등 현재의 집행상황을 성과평가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구체적 사업근거 확보

(1) 법령근거 주기적 재검토 및 구체화

수원시의 지방보조사업은 대부분 법령에 근거하여 지원되고 있어 사업자 선정 및 집행정산 기준이 모호한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지역 내 환경에 따라 지역사회의 역량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의 취지를 달성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보조사업의 사업근거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법령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체계가 요구된다.

이에 타 자치단체에서는 구체적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다음 사업 규모 결정 시 감액 또는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지방보조사업들의 사업근거를 재검토하고 지나치게 광범위한 법령에 의해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조례 또는 지침 등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향후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구체적 조례나 지침에 근거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조서에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업무 편람이나 매뉴얼 등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지방보조사업 내용 및 과업의 구체적 제시

지방보조사업자 인터뷰 결과, 수원시 지방보조사업은 공모 시 사업자 선정기준이 모호하거나 유사사업임에도 집행기준에 차이를 보여 혼란과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었다. 또한 민간단체와 자치단체 간 자발적 협력 도모에 따른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지방보조금 제도 본연의 목표와 달리 행정업무의 대행인 사업에 관행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 목적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담당부서는 사업의 내용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역량에 맞는 적합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교부조건과 수익금액에 대한 처리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례를 참고하여 상대적으로 적정수준의 예산규모와 자부담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하도록 하여 객관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를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작성할 수 있어야 하며, 담당 부서에서는 체크리스트 등을 바탕으로 하여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지방보조금의 합리적 심의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

1) 집중심사를 위한 심의 전 사전심사제도 강화

(1) 사전심사제도의 활성화

지방보조금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제도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통제기제들이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기대하기에 인력과 심의시간 측면에서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이전 단계라 할 수 있는 사업담당부서와 예산부서의 내부 심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심의과정별로 지방보조사업 담당부서, 예산부서,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화하고 평가인력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이 요구된다. 먼저 지방보조사업의 사업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주관부서에서 사업의 중복여부 등을 검증하고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의 심의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자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층심사가 요구되는 사업을 선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시에는 이들 사업이 집중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전에 지방보조사업의 담당 공무원만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사전심사가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인사 및 내부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내실 있는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승희 외, 2016). 따라서 사전심사 시에는 외부전문가의 참여를 함께 독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사전심사 범위, 주체, 수당지급 등과 관련하여 근거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서면심사 및 사전심사대상 확대

심의를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심층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서면심사, 사전심사를 확대함으로써 사전심사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집중심사를 하여 1인당 심사안건 수를 축소하고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현재 수원시에서는 보조금 예산편성 시 국·도비 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따라 서면심의로 대체가능하나 대부분 심의위원회 일괄심사를 거치고 있다. 따라서 서면심사의 대상기준을 최소사업금액, 사업유형 등을 고려하여 추가확대하고, 행사성 사업 등에 대한 사전심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체계 개선

(1)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확대 및 관련 제도 정비

지방보조금을 둘러싼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인력의 부족, 이에 따른 과다한 심의안건 수에 따른 심의의 비효율이 대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중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지방재정법과 수원시 지방보조금 조례에서 15인 이하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다수의 지방보조사업을 심의하기에 적은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왔다. 따라서 전문성 부족의 보완과 객관적 평가 확보를 위한 위원회 구성의 개선이 필요하다.

심의위원수를 확충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법적 제한, 예산제약, 일정조정 등의 문제가 존재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을 구성하고 자문제도를 활성화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 내 심의위원 위촉뿐만 아니라 지역 내외 인사를 초빙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분야별 전문성을 확보하고 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전문가 위촉에 대한 법적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자문제도, 운영방식,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 하는 방안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 있어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중시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조례 제8조(회의 등)에서 심의위원 자격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위해 제시된 기준보다 구체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위원의 추천, 선정기준, 관련 절차에 대한 조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2) 분과위원회 권한 및 기능 확대

타 자치단체에서 분야별 분과위원회 수를 확대하여 각 사업분야별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분과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바 수원시 분과위원회 수와 개최횟수를 확대하고 위원수를 추가확대하기 위한 법제도적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수원시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는 각 6명으로 구성된 2개 분과위원회로 이루어져 있어 검토안건 수에 부담을 지니고 있고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토해야할 안건 수에 대응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의 규모를 고려하여 전문성의 부족을 보완하고 거시적,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인원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유형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기존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보조금 지원규모 결정 시에만 한시적으로 분과위원회를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과평가나 사전심사 등에 심의범위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총괄적으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방보조금 운영의 방향성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관련 담당자의 참여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심의기간 확보 및 지원기능 강화를 통한 심의환경 편의성 제고

(1) 유연성 있는 심의위원회 개최

수원시는 심의위원회 일정과 시간이 촉박하고, 심의일자로부터 사업시행시기까지 기한이 짧아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 엄격한 심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업 준비기간이 매우 짧아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지방보조금 집행과 정산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 어려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심의를 진행하기에 한계가 존재하고, 심의일정에 압박하여 주관부서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지방보조사업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개선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고, 정책목표가 지향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지 못하여 지방보조금 제도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따라서 최종예산안 확정시기 또는 사업시행시기를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건수와 심의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유동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1회당 심의안건이 많은 경우 사업분야나 신청한 지방보조사업자 수, 사업집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나누어 진행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개선·보완 사항이나 추가심의를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최소 인원을 고려하여 추가개최하거나 서면 등을 통한 추가심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사전 심의일정 공유 및 심의자료 조기 배포

현실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부 심의위원들의 일정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연간 다수의 지방보조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여유있는 심의일정을 확보하기에 실질적으로 여의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촉박한 심의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가능한 한 연간 심의위원회 일정을 공개하고 사전에 공유하여 심의일정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심의위원회 개최 시 심의일정을 사전에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참여율을 제고하고 심의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한편, 심의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일 전에 심의자료를 조기에 배포하여 심의위원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강태구(200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법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7권 제2호, pp.433-459
- 고승희·이삼주·박우선·이원희(2016), 지방자치단체 민간보조금 실태와 개선과제, 충남연구원
- 고승희·주운현(2017), 기초자치단체 민간보조금의 전략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보조금 운영 담당자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제12권 제4호, pp.83-112
- 구균철(2018), 재정분권의 정치경제학적 효과 분석: 정부책임성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 권순만·김난도(1995), 행정의 조직경제학적 접근: 대리인 이론의 행정학적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 행정학보, 제29권 제1호, pp.77-95
- 김상현(2012), 지방자치단체 세출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성주·윤태섭(2018a),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성주·윤태섭·홍근석·이지은·김미나(2018b),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김시형·남창우(2014), 지방정부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에 대한 공무원과 사회단체의 인식 비교분석. 도시행정학보, 제27권 제4호, pp.223-246
- 김애진(2018), 예산낭비와 부패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경비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제22권 제4호, pp.147-177
- 김종순(2006), 지방재정학, 제2판, 서울: 삼영사
- 김지영(2013), 지방보조금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법제연구
- 남황우(2015), 장(長) 특집 : 지방보조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언. 지방재정, 2015권 6호, pp.12-29
- 문광민(2011), 중앙정부보조금과 지방정부 효율성: 패널문턱모형에 의한 비단조적 관계 분석. 한국 행정학보, 제45권 제4호, pp.85-116
- 박형준·김춘순(2013), 예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재정거버넌스제도 고찰: 국회 기능강화의 관점에서. 예산정책연구, 제2권 제1호, pp.43-69
- 손희준(2012), 이명박정부 지방재정 확충정책의 성과평가. 지방재정, 2012년 6호, pp.6-33
- 서정섭·이효(2015), 지방세외수입 및 지방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성태규(2016), 지방보조금의 운영실태와 개선전략, 충남연구원
- 신가희·하연섭(2015), 예산심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정치적 수용성에 관한 연구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2호, pp.527-563

- 신봉호·김제국(2016), 지방재정구조의 정치적 결정요인: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 및 갈등 구조.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1권 제3호, pp.213-246
- 안국찬·전영옥(2008),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전라북도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제32권 제2호, pp.163-193
- 안영환(2005),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지출의 영향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5권 제4호, pp.147-172
- 오윤섭·홍수완(2015), 국고보조사업의 관리위험과 관리통제 개선방안연구, 감사원 감사연구원
- 윤태섭(2017), 지방보조금 규모 관련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7권 제2호, pp.49-74
- 윤태섭·이삼주·김성주(2016), 지방보조금 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 지방정부연구 제20권 제1호, pp.161-187
- 이삼주·윤태섭(2016), 지방보조금 평가 및 관리체계 개선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상용(2010), 특집 :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책임성 및 투자 효율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의 선심성·전시성 예산의 통제방안. 지방재정과 지방세, 제26권, pp.17-34
- 이용식(2012),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운영개선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 이재원(2012), 지방재정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 자료집, pp.1-27
- 이지은(2018), 지방보조금 운영의 책임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은(2019a), 지방보조금 운영의 책임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3권 제1호(통권 116호), pp.63-90
- 이지은(2019b), 지방보조금 지출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29권 제1호, pp.235-259
- 전영옥(2009), 지방자치단체 민간이전지출의 영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성호(2015), 지방보조금 사업평가 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제2015년 동계학술발표 논문집, pp.558-581
- 조기현(2011),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pp.25-45
- 조민경·김렬(2007),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기준. 대한정치학회보, 제15권 제1호, pp.195-218
- 조주복·하재룡(2017), 지방보조금 담당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연구: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제16권 제2호, pp.149-169
- 최정열(2014), 분권화와 부패: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4호, pp.239-259
- 하연섭(2014),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제2판. 서울: 다산출판사.

- 홍종현(2015), 지방보조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2015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pp.135-168
- 홍종현(2018), 지방보조금의 관리체계에 대한 공법적 검토. 지방자치법연구, 제18권 제2호, pp.161-205
- 황소하(2016),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수원시 지방보조금 운영을 중심으로-, 수원시정연구원

〈영문 자료〉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and Row.
- Jensen, M. C. & Meckling, W. H. (1976).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Vol. 3, No. 4, pp. 305-360.
- Von Hagen, J. (2007). Budgeting Institutions for Better Fiscal Performance, In A. Shah (Eds.), *Budgeting and Budgetary Institutions*. (pp. 27-51). Washington, DC: World Bank.
- Mayhew R. D. (1974). Congressional Elections: The Case of the Vanishing Marginals, *Polity*, Vol. 6, No. 3, pp. 295-317.

〈기타 자료〉

- 고양시, 2018년 고양시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
- 고양시, 2018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실시계획
- 부천시, 2018년 지방보조사업 자체 성과평가 보고서식
- 성남시, 2019년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계획
- 성남시, 2019년 성남시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 지침
- 안동시, 2017년 제1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 안동시, 2018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계획
- 용인시, 2020년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매뉴얼
- 용인시, 2018년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평가 계획
- 원주시, 2019년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 전라북도, 2018년도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계획
- 청주시, 2019년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 화성시, 2019년 화성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계획(안)

화성시, 2019년 화성시 지방보조금 관리지침

부산광역시, 2019, 지방보조금 관리개선계획

서울특별시, 2018, 지방보조금 운영개선계획안

울산광역시, 2019, 미래비전위 행정혁신분과 제안사항-지방보조금 관리개선 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19, 지방보조금 제도개선계획

행정안전부, 2015-2019 통합지방재정공시

행정안전부, 2017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행정안전부, 2019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안동, 들쭉날쭉 보조사업 자부담률 바로 세운다, 2019.11.04. 안동시 보도자료

안동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2019.06.10. 안동시 보도자료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입체적 감시를 통해 근절-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

발표 -, 2018.02.14.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Abstract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Local Grant Deliberative System in Suwon City

Local grants are allocated to individuals or organizations by the local government with the objective of facilitating specific activities. Local grants can efficiently improve public services by establishing autonomous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the private sectors. However, they have been criticized as a waste of local finances due to arbitrary budgeting.

Local grants have been increasing continuously for the past five years. In addition, the recent increase in national grant-in-aid programs has affected local grants, which are mostly composed of them. However, local grant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because a plan for the transfer of national subsidies to local governments is under discussion.

Considering the trend of increasing local grants, the local governments' finances face a threat in the long term if local grant management is not systematic. However, local grants began to be discussed systematically only after the Local Finance Act was revised in 2015. In the past, only a few grants such as private transfer expenses and social welfare grants, have been discussed limitedly. Also, the deliberative process for local grants has been neglected in contrast to the review of the legal and the evaluation systems despite its importance that it is a starting point for rationally distributing local government resources.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e of and problems with the deliberative process for local grants by focusing on the case study of the city of Suwon and suggesting improvements for a more effective local grant deliberative system. At first, the characteristics and status of local subsidies were reviewed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and then inefficient operations of

local grants in the deliberative process were examined. Next, implications for a system that could enable further effective local grant deliberation were discussed based on the review of cases in other local governments.

Local grants are recognized as one of the financial resources to realize decentralization, enabling local governments to efficiently supply public services to meet social needs in the region by utilizing private capacity. Local grants improve program performances and reduce inefficiencies of government activities by leveraging the ingenuity of the private sector. Additionally, they promote governance within the region by establishing autonomous cooperation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governments. However, they are still viewed as a major waste of local finances, and pressure is mounting to restructure local grants system because of their rigid and political characteristics. Contrary to popular belief, local grants are unfair and ineffective due to the discordance between the government's expectations and the actual process of selecting operators of grants.

In order to select qualified grantees, scholars hav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n environment for competition, concrete qualification requirements and a monitoring system for keeping track of their performance.

Many public officers have trouble selecting grantees because of the lack of objective criteria, manpower and resources, especially considering the diversity and complexity of the process for funding local grants.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uniformly provide a standard for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grantees because most of them do not have a profitable business. Despite the Local Grants Review Committee being in operation, it is difficult to conduct an effective evaluation due to lack of qualified committee members and deliberation time.

Grantees have trouble executing their businesses due to the extensive paperwork and the complex process of balancing accounts. They have demanded a simplification of the system and training as well as manuals and detailed management guidelines. Additionally, the purpose and requirements of programs for local grants should be clarified to prevent political and customary distribution.

Based on literature reviews and interviews, the main arguments about the deliberative process can be summarized in three aspects. First, grantees with the

willingness and competence to take on the program should be selected. Second, public service that can achieve the policy goals of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be provided. Finally, an efficient deliberative system to accurately review the statements of local grants is also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agenda of the local grant system and analyzes improvements to it from the viewpoint of the competence of grantees, adequacy of local grant programs, and efficiency of the deliberative process.

Suwon City has a high ratio of local grant amounts to local annual expenditure when compared to that of other similar local government. Due to the low proportion of self-financing programs, Suwon's local grants have a high possibility of being affected by the national grants. Because the competition rate among the grantees is low, most applicants receive local grants. In addition, although the program is huge, the self-funded ratio of the grantees is low and criteria are not clear. Most programs are based on national laws rather than the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programs reflecting the originality of the region are not being carried out. It is also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the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are properly reflected because many programs are excluded from the sunset provision. In the deliberative process, it is difficult to perform an in-depth review of the settlements for the programs and the applicants because of having to deal with the sheer number of deliberation agendas in a short time. Moreover, because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grantees are qualitative and ambiguous, it is difficult to efficiently review many agendas.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grants of other similar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in Gyeonggi, Suwon, revealed the high expenditure on local grants. Seongnam, Bucheon, and Hwaseong continue to show a lower local grant ratio than Suwon. The ratio of local grants in Yongin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in expenditure on local grants, especially related to social welfare institutions. The average self-funded ratio in Yongin was 16.6%, higher than that of Suwon (14.9%), while that of Hwaseong was 14.0%, which is similar to that of Suwon. In other local governments, the average self-funded ratio was lower than that of Suwon, and it was found that most local governments face difficulties in

strengthening the self-funded ratio for the local grants.

Recently, many local governments have proposed improvement plans for efficient management of local grants. First, to ensure the eligibility of the grantees, they reinforce the self-funded ratio and clarify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While Busan, Jeollabuk-do, Andong, Cheongju, and Wonju have mandatory 10% to 20% self-funded ratios, a 10% self-funded ratio is recommended in Yongin, Changwon, and Ulsan. The self-funded ratios are being implemented gradually for new programs, and the guidelines governing local grants present the ratios as budgeting principles. In Jeju and Seongnam, the ordinances specify ineligible grantees such as tax delinquents.

Second, in order to select the appropriate programs, local governments have strengthen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o be used at deliberation and to feedback the result to the programs. Yongin tried to utilize manpower effectively by clearly classifying the roles of the assessment members, and Seongnam is considering prior evaluation by external experts. Bucheon ensured objectivity by subdivid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items and presenting quantitative criteria. Regarding the performance evaluation feedback, Andong and Busan further subdivided the sub-grade ratings to strengthen the principles of reduction and suspension of low performance programs. Seoul increased the ratio of programs that required in-depth review to reinforce monitoring, and advanced the performance evaluation schedule so that the result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could be reflected in the budgeting. In addition, Busan and Ulsan are reviewing the legal evidence of grants and urging a reduction in the budget or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basis for the program if there is none.

Third, in order to operate the deliberation committee in a rational and efficient manner, the subcommittee has been expanded and the preliminary screening has been strengthened to create an intensive screening environment. Busan, Ulsan, and Seoul have proposed to expand the size of sub-committees and to operate flexibly with the help of external experts. Busan improved the allowance payment standard for preliminary screening, and Jeju expanded the scope of the written review for the Local Grants Review Committee to concentrate on major programs.

Seoul has divided the evaluation system into two stages so that in-depth review of programs selected in the first evaluation is possible. In addition, Ulsan is careful not to hold the deliberation council shortly before the approval date of the budgeting and is considering holding it twice before the annual budget. Jeju preliminarily announces the schedule of the deliberations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the council schedules and allows for additional councils based on the number of agendas for deliberation.

In conclusion, the following improvements related to the deliberative system in Suwon may be considered.

First, in order to secure the competence of the grante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ncrete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selecting the grantees and to establish appropriate self-funded ratio criteria of the grante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ccumulate and utilize information on the grantees by strengthening the monitoring of them.

Second, in order to select appropriate programs that meet the policy goals of the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the review system for program continuity.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the grades of lower performance programs and strictly apply the principles of reduction and/or discontinuance to them. Additionally, the ratio of lower performance programs should be expanded, or programs should be periodically reviewed based on their fields intensively. It is also necessary to adjust the timing of completion of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to quantify and materialize the evaluation criteria to reinforce the performance evaluation feedback system.

Finally, in order to review local grants efficiently,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for intensive review system and to invigorate preliminary screenings and written review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xpertise and authority for the Local Grants Review Committee by securing external experts and setting tasks for them. Sub-committees should be set up for performance evaluations and preliminary screenings by expanding the number of sub-committee members and councils held.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council support system to secure reasonable review times. Timely council meetings should be held in

consideration of budgeting and starting a program. In addition, supporting activities such as early distribution of documents for the reviews and advance announcements of the review schedule, should be strengthened.

Keyword : Local Grants, Deliberative Process of Grants, Performance Evaluation, Sunset Law, Local Grants Review Committee

| 저자 약력 |

황소하

행정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E-mail : hsoha@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 「보통교부세의 재정형평화 효과와 재정력 역전」 (2017, 예산정책연구 6(2): 83-116)
- 「지방교부세제도의 재정형평화 효과분석」 (2017, 수원시정연구원)

강혜연

행정학 박사수료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E-mail : hykang22@yonsei.ac.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 「지방세외수입의 확충 및 효율적 관리방안-수원시를 중심으로-」 (2017, 수원시정연구원)

이현경

경영학박사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위촉연구원

E-mail : hkleee@suwon.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 「버스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인식 조사 연구」 (2019, 수원시정연구원)